

CONTENTS

권두칼럼

국가혁신의 과제: 복지국가와 보장국가 · 옥동석 02

현안분석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 부가가치세 과세동향과 시사점 · 박명호 · 08

물공급 재정효율성 개선방향 · 김현아 25

공공정책포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45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 외 52

정책흐름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7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88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 95

이슈&포커스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올바른 방향” 외 106



국가혁신의 과제: 복지국가와 보장국가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많은 학자들은 국가에 요구되는 임무의 성격을 구분하며 그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용어를 만들어내고 있다. 국가의 임무를 국방, 외교, 치안 등 최소한의 활동에 한정하는 야경(nightwatch)국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시장실패의 보완과 케인스식 경제안정화 기능을 강조하는 적극(positive)국가, 국민 전체의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연대적인 사회보험과 평등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조하는 복지(welfare)국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야경, 적극, 복지 등 기능적 측면에서 국가의 임무를 조명하는 것은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습관이다. 법학자들은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의 성격을 감안하여 국가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한다. 특히 독일법계의 학문적 전통에 익숙한 학자들은 공권력의 행사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형태를 벗어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헌국가, 법치국가, 협력국가의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하고자 한다.

다양한 국가 개념의 구분

우선 관헌(obrigkeit; authorities)국가에서는 공과 사의 영역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고 개인은 신민(臣民; untertan; subjects)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명령을 신민이 복종하는 형태로 행정이 이루어진다. 국가와 개인의 수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임명하는 관헌들은 하향식 명령의 집행자로서 신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전제 왕권의 전통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에 최고 권력자의 의사 표명이 행정의 가장 중요한 행위형식이 되며, 국민들은 권리를 누리기보다 일방적인 복종의 의무를 부담한다.

두 번째 형태의 국가 개념으로 등장하는 법치국가에서는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면서 공무를 담당하는 대규모 관료집단이 등장하고 국가의 행정조직이 정비된다. 권력자와 관헌들의 자의적인 명령을 대신하여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행정으로서 제반 법규와 문서가 등장한다. 개인은 복종의 의무를 부담하는 '신민'이 아니라 국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국가의 일방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자유권과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협력국가에서는 국민을 협력의 상대방으로 간주하여 국가 공권력을 국민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합법성을 견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국민들의 수용성, 친화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국가에서는 개인들이 행정에 참여하는 주체적 지위를 누리기에 행정의 수행자가 반드시 공무원으로 한정될 필요는 없어 민간이 참여하는 위원회, 협의회가 다수 등장한다.

근대국가를 관헌국가, 법치국가, 협력국가로 구분하는 것은 국가에 요구되는 기능이 아니라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을 행정의 행위형식이라 하는데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약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협력국가의 특징을 이 세 가지 행위형식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선 시행령, 규칙 등 행정입법의 과정에서 국가는 개인과의 협력적 방법을 많이 동원하며, 행정행위에서는 면제·금지·확인·결정 등 직권에 의한 행정보다 허가·인가 등 신청에 의한 행정을 많이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개인이 거의 대등한 관계에서 협의하는 행정계약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적 행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행정계약을 중시하는 협력국가의 개념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며 더욱 각광을 받아왔다. 신공공관리론의 내용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행정의 행위형식을 행정계약(더 나아가서는 민사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사실상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방적인 명령과 지시에 근거하여 수행하던 전통적인 행정을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specification) 민간과의 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영의 개념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공공경영론’의 등장과 확산

‘신공공경영론’¹⁾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모두 계약을 근거로 한다. 공공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기관들을 민영화하는 경우 국가(또는 정부)는 완전히 손을 놓는 경우도 있고 법령을 통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더 많은 기관들을 민영화 또는 민간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기제를 가져야 하는데,

.....
‘신공공경영론’에서 강조하는 대부분의 정책들은 모두 계약을 근거로 한다.

1) 우리나라에서는 New Public Management를 신공공관리론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의 진정한 의미를 감안한다면 ‘신공공경영론’ 또는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같이 행정경영론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
보장국가란
국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부담을 지지만,
국가가 반드시
이들을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바로 계약을 통하는 것이다. '신공공경영론'에 의하면, 가능한 한 많은 공공서비스를 계약으로 전환하여 민간에 이전한다면 '큰 시장, 작은 정부'가 실현되어 경제의 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신공공경영론'은 1980년대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등 영미권 국가에서 주로 채택되었지만 이후 독일, 네델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로 크게 확산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와 '신공공경영론'에 대한 교조적인 믿음은 다소 퇴색하였지만, 실용적인 접근으로 여전히 유용한 정부혁신의 이념으로 채택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계약화(contractorization), 그리고 이 계약을 근거로 민관이 동일선상에서(equal footing) 경쟁하면 경제성과 효율성은 크게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공공경영론'의 이념을 적극 수용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법학계는 협력국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간 보장(gewährleistung; guarantee)국가 개념을 제시하였다. 보장국가란 국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부담을 지지만, 국가가 반드시 이들을 직접 수행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신공공경영론이 등장하며 국가가 직접 생산(production)하던 공공서비스에 대해 국가는 제공(provision)하는 임무만을 부담하였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보장국가는 공공서비스를 보장(guarantee)할 뿐 구체적인 보장행정은 개별 사안마다 신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의무를 신축적으로 판단하는 보장국가론의 중요성

보장국가론에서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국가의 보편적 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의 임무는 정치적으로 또 입법적으로 결정될 수 있기에, 어떤 일관된 기준이 있어 국가의 임무와 민간의 임무를 항구불변하게 재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기능을 반드시 국가의 임무로 규정하거나, 또는 국가의 기능 전체를 포괄적으로 민간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국가의 임무는 신축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을 독일에서는 '개방적 임무설정(offene zielsetzung)'이라 한다.

또한 보장국가론에서는 국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느 정도로 민간화하여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유로운 형식선택(formenwahlfreiheit)'이라고 한다. 국가는 사회적 선(optimum)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가 그 선을 달성하는 배타적이고도 유일한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임무는 민관협력력을 위한 행정계약, 민간의 자율적 규제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화를 통해 적절히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비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임무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 ‘국민행복’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소위 ‘한국형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표현한 것이다. ‘복지국가’는 국가에 요구되는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비전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다. 서구의 근대국가 발전과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국가혁신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를 달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과 함께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보장국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²⁾ KIPF

.....

국가혁신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를
달성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과 함께
국가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보장국가’를 동시에
달성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

2) 필자에게 보장국가의 개념을 소개해주신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해룡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두 칼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 두 편의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다. 김현준, 「행정개혁의 공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2012년 12월; 계인국, 「보장행정의 작용형식으로서 규제」, 『공법연구』, 제41집 제4호, 2013년 6월.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Planning	Mid	Ch
	6.1293		
	1.2386		
	0.4823		
	8.8393		
	2.6432		
	1.2827		
	618.813		
	7.9738		
	0.0082		
	0.007		
	0.005		
	3.770		
	6.9100		
	2.0663		
	1.0028		
	483.750		
	-0.0029		
	-0.0004		
	-1.3000		
	0.0082		



| 현안분석 |

■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 부가가치세 과세동향과 시사점

박명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물공급 재정효율성 개선방향

김현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 부가가치세 과세동향과 시사점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소재의 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국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전자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이는 국제 전자상거래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제 상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공급자와 국외 공급자 간의 과세형평성 훼손 및 세수손실 문제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8월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방침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로 하여금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도록 부가가치세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국세행정을 통한 집행방안 등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국제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1990년대 말부터 EU 및 OECD에서는 주요 논의안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EU에서는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과세체계의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정립하고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몇 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 EU에서는 EU 역의 사업자가 역내 소비자(비사업자)에 전자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B2C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거주지에서 과세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을 적용 중이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공급지국 과세원칙(origin principle)이 적용되고 있는 역내 회원국 간 B2C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지국에서 과세할 예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앱(App)과 같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박명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ecpmh@kipf.re.kr)

대한 논의 및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EU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과세방침은 설정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집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U의 사례에 초점을 둔 이유는 첫째 부가가치세를 운영 중인 최대 경제권이 EU이고 미국 등 역외 사업자로부터 공급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일찍부터 고민해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의 소비자가 앱을 구매하는 주요 해외 오픈마켓인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스토어의 소재지가 바로 EU 역내이기 때문이다.¹⁾ 따라서 EU 역내 B2C 거래에 대하여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스토어를 공급자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 중개자(disclosed agents)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EU의 방침은 동 오픈마켓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U 역내 B2C 거래에 대해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스토어가 소비자 과세원칙 아래에서 공급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소비자 과세원칙 적용에 따른 공급자 역할 부여에도 동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아래의 제Ⅱ장에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침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그리고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앞서의 논의를 요약하며 글을 마치고 있다.

“
**EU 역내 B2C 거래에 대하여
 구글 플레이 및 애플 스토어를 공급자로
 간주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 중개자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EU의 방침은 동 오픈마켓을 통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과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II.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추이

본 장에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EU의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이 공급지국 과세원칙에서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시기별로 구별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U에서는 역내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 및 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방식을 개정해 오고 있는 상태이다. 부가가치세를 운영 중인 최대 경제권이 EU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과세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국제적인 관행과 조화를 이루려는 우리나라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1. 2003년 이전의 과세방식: 소비지국 과세의 필요성 인식 시기

전자상거래가 발달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용역이 ‘국부적으로(locally)’ 공급되었고 국경을 넘나드는 원거리 공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EU에서는 B2B 및

1) 구글 플레이의 서버 소재지는 아일랜드이고, 애플 스토어의 서버 소재지는 룩셈부르크이다.

“
**이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1997년 4월 「전자상거래에서의
 유럽 이니셔티브」라는 문서를 통해
 유럽에서 전자상거래의 도약을 위한
 일련의 실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

B2C 용역 거래에 대하여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일반 규칙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컴퓨터의 보급 및 통신망의 발달은 물리적인 이동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전통적인 상거래와는 달리 인터넷상에서 시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는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키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였다. 이런 경제 환경 아래에서 1990년대 초반 단일시장 출범 및 유로화의 도입 등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었던 EU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을 하나의 기회이자 도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부문인 전자상거래 부문은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의 경쟁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특히 유럽의 주된 경쟁자인 미국이 벌써 전자상거래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유럽 내에서 전자상거래를 왕성하게 성장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에서는 1997년 4월 「전자상거래에서의 유럽 이니셔티브(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라는 문서를 통해 유럽에서 전자상거래의 도약을 위한 일련의 실행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문서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정치적 논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며, 다음 3가지 영역에서의 포괄적인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실행안과 일정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전자상거래 관련 글로벌 시장으로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

는 인프라·기술·서비스 구축 영역이며, 두 번째는 전자상거래에 우호적인 법령·규제의 구축 영역, 세 번째는 전자상거래에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영역이다.

이상의 3가지 영역 중 두 번째 영역인 전자상거래에 우호적인 법령·규제 구축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제도의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방향은 전자상거래 발달을 위한 법적 안정성 및 조세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세체계의 구축이다. 여기서 법적 안정성이란 납세의무가 명확하고, 투명하며, 예측이 가능해야 함을 말하며, 조세 중립성이란 전통적인 상거래와 비교하여 전자상거래에 추가적인 세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한다. 두 번째 방향은 새로운 거래방식인 전자상거래의 익명성, 추적 곤란이라는 특성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 및 탈세를 차단할 대책의 수립이다. 조세회피나 탈세는 정부의 세수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시장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회피나 탈세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 방향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테두리 내에서 과세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가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²⁾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조세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제도 개선 시 소규모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조세정책 방향 아래에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1998년 6월 「전자상거래와 간접세(Electronic Commerce and Indirect taxation)」라는 문서를 통해 전자상거래에 관한 EU 부가가치세제의 개정 방향에

2) 여기서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이라 함은 1977년 5월 17일에 승인된 Council Directive 77/388/ECC 제9조를 의미한다.

대한 6가지 일반지침을 발표하였다.³⁾

- 지침 1: 전자상거래에 과세하기 위해 새로운 세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세목인 부가가치세를 조정하여 과세
- 지침 2: 전자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수령자에게 전달되어 사용되는 상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목적상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
- 지침 3: 조세체계의 중립성 확보
- 지침 4: 납세순응의 용이성 제고
- 지침 5: 전자상거래를 통해 기업이나 최종소비자가 EU 역내에서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조세체계 및 그 통제수단이 작동해야 함
- 지침 6: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인정 등과 같은 조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는 노력 전개

당시의 EU 부가가치세는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지 과세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의 경우 조세의 중립성이 유지되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그 결과 EU 역외 공급자(사업자)가 EU 역내 소비자(비사업자)에게 전자적으로 공급하는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다. 그러나 EU 역내 공급자(사업자)가 역내 소비자(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다. 또한 EU 역내 공급자(사업자)가 역외 소비자(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
 EU에서는 2003년 7월부터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
 EU 역외 사업자가
 EU 역내 소비자(비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
 ”

되었다.

이러한 역외 공급자와 역내 공급자 간의 조세 적용상 차이는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며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에서는 두 가지 과세방침을 정하였다. 첫째, 전자적으로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는 그 공급지에 상관없이 EU 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EU 내에서 과세되어야 한다. 둘째, EU 밖에서의 소비를 위해 EU 역내 사업자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매출과세 없고 매입공제 허용)한다. 이에 덧붙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화나 팩스 등의 전통적인 방식을 통해 EU 역외에서 EU 역내의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EU에서는 2003년 7월부터 새로운 부가가치세 규정(Council Directive 2002/38/EC)을 적용하여 EU 역외 사업자가 EU 역내 소비자(비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하게 되었다.

3) 1998년 10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OECD 회의에 대한 EU 차원의 준비 자료라는 특징이 존재한다.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서 공급장소에 대한
 규정은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2003~2009년의 과세방식

동 시기는 특례 규정을 통해 EU 역내에 위치한 소비자가 소비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처음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특히 전자적 용역을 역내 비사업자(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순응비용을 감축시키기 위한 ‘간편등록신고납부제도’라는 특례제도(special scheme)를 도입한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에서 공급장소(place of supply)에 대한 규정은 과세권이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라는 의미가 존재한다. 1977년 승인된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장소를 공급지로 규정, 즉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였다. 그리고 예외적인 용역 목록을 열거한 후 동 용역들에 대해서는 공급장소를 소비지국으로 설정하여 소비자가 위치한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였다. 당초의 예외 용역 목록에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전자적 용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2002년 5월 7일 승인된 새로운 부가가치세 지침인 Council Directive 2002/38/EC에서

는 한시적으로 라디오 및 TV 방송 서비스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권을 소비지국에 귀속시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한시적 규정에 따르면, 라디오 및 TV 방송 서비스와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해 EU 역내에 설립된 소비자가 소비하는 경우 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서비스가 EU 역외에서 소비되는 경우 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런 규정을 통해 EU는 역내에서 소비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비판 및 동 서비스 부문에서 역내의 기업 간에 경쟁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도 EU에서는 역외 사업자가 역내 최종소비자(비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이등록 및 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EU에서는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승인을 통해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게 되었다.⁴⁾ 따라서 아래의 <표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역내 공급자가 전자적 용역을 역외 소비자(비사업자 포함) 또는 다른 회원국의 역내 사업자(taxable persons)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기업을 설립한 장소나 서비스가 전달된 고정사업장이 있는 장소, 이런 장소가 없을 때에는 소비자의 고정주소(permanent address) 또는 통상의 거주지가 용역의 공급장소로 간주되었다.⁵⁾ 반면 역외 사업자·거주자가 역내 비사업자(non-taxable persons)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비자인 역내 비사업자가 설립된 장소, 또는 고정주소나 통상의 거주지가 용역의 공급장소로 여겨지게 되었다.⁶⁾ 다만, 동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고 즐

4) 전자적 용역뿐만 아니라 라디오 및 TV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한다.

5)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9조 제2항(e) (Article 9, paragraph (2) (e))에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승인으로 새롭게 추가된 사항

〈표 1〉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과거 EU VAT 지침

구분		용역의 공급장소	
공급자(supplier)	소비자(consumer)	신규 지침 ¹⁾	기존 지침 ²⁾
역내 사업자	다른 회원국 사업자	소비자의 위치 ³⁾	공급자의 위치
	역외 소비자(비사업자 포함)	소비자의 위치 ⁴⁾	
역외 사업자	역내 비사업자	소비자의 위치	
역내 사업자	역내 비사업자	해당사항 없음(기존 지침 적용)	
	동일 회원국 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³⁾ (기존 지침 적용)	
역외 사업자	역내 사업자	해당사항 없음(기존 지침 적용)	역내 사업자 ⁵⁾

주: 1) 신규 지침이란 Council Directive 2002/38/EC 및 동 지침의 적용기한을 연장한 지침들을 말한다.
 2) 기존 지침이란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승인 전 지침들로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이다.
 3) 역내 사업자가 전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동 서비스가 EU 역외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즐겨진다면 EU 부가가치세 과세권에서 배제된다.
 4) 전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과세사업자가 역외에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서비스가 EU 역내의 한 회원국에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즐겨진다면 동 회원국에서 과세한다.
 5) 용역을 수입하는 역내 사업자가 기존의 자진신고제도(self-assessment arrangements)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vat/how_vat_works/e-services/article_1610_en.htm)

기는 장소가 특정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정 회원국이 용역의 공급장소에 해당되도록 하였다.⁷⁾

이런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 회원국의 사업자가 다른 회원국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내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은 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징수·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역외 공급자가 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서비스를 수입하는 역내 사업자가 자진신고제도(self-assessment arrangements)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한다. 만일 역내 사업자가 역외 사업자 또는 역외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역내 사업자(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징수·신

고·납부 의무가 없다. 반면 역외 공급자가 역내 사업자(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역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의 징수·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편 EU는 전자적 용역을 역내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역외 공급자가 새롭게 부가가치세 징수·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순응비용 감축을 통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하여 ‘간편등록 신고납부제도’라는 특례제도(special scheme)를 마련하였다. 동 제도의 대상은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역내에서 설립(established)되지도 않았고, 조세 목적상 역내에서 고유번호(individual number)를 부여받을 의무도 없는 사업자(non-established operators, 이하 ‘비설립 사업자’로 부름)이다. 동 제도를 적용받는 비설립 사업자에게

6)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승인으로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9조 제2항 (f) (Article 9, paragraph (2) (f))가 신설된 사항
 7)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승인으로 제6차 부가가치세 지침 제9조 제3항과 제4항 (Article 9, paragraph (3)과 (4))이 수정된 사항

“
**EU에서는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비설립 사업자에게
 특례제도의 허용 전제조건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거래 기록을 거래가 발생한 해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여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는 역내의 다양한 회원국에 거주하는 비사업자(non-taxable persons)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모든 회원국이 아닌 특정 회원국 한 곳에서만 등록(identification)⁸⁾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한 동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비설립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statements)와 납부할 세액을 신고 및 납부기일에 맞추어 전자적으로 제출·납부해야 한다. 등록을 받은 회원국(member state of identification)은 이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개별소비자가 속한 회원국에 비설립 사업자로부터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배분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비설립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고유번호,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사업자가 거주하는 회원국별 매출액, 매출세액, 적용 부가가치세율, 납부할 부가가치세 등의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EU에서는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기 원하는 비설립 사업자에게 특례제도의 허용 전제조건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특례제도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거

래에 대한 기록을 거래가 발생한 해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여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만일 특례제도를 적용받는 비설립 사업자가 신고·납부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받은 회원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설립 사업자를 특례제도의 적용에서 배제⁹⁾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상과 같이 용역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과세원칙이 다르기 때문에 EU에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유형 및 그 유형별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부칙(ANNEX L)에서는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5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¹⁰⁾ 동 규정에서는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전자메일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표 2〉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 서비스 유형 목록

1. 웹사이트 공급, 웹호스팅, 프로그램·장비의 원격 관리
2. 소프트웨어의 공급 및 업데이트
3. 이미지, 텍스트, 정보의 공급 및 데이터베이스 작업
4. 음악, 영화, 게임(운에 좌우되는 게임, 도박 게임 포함)의 공급 및 정치·문화·예술·스포츠·과학·오락적 방송과 이벤트
5. 원격 수업의 공급

자료: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부칙(ANNEX L)

또한 EU에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경감세율, 면세나 영세율의 적용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표준세율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도서,

8) 사업자 등록을 받은 회원국(member state of identification)은 비설립 사업자에게 고유번호(identification number or individual number)를 발급하여 전자적으로 비설립 사업자에게 통보한다.
 9) 등록을 받은 회원국은 비설립 사업자가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통보하거나, 더 이상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비설립 사업자가 특례제도의 허용 전제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특례제도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고유번호 등록을 취소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이 취소된 비설립 사업자는 특례제도 적용에서 배제한다.
 10) 2005년 10월 17일 승인된 Council Regulation (EC) 1777/2005에서는 ‘전자적 용역’에 포함되는 서비스 항목들과 그렇지 않은 서비스 항목들을 더욱 구체화하는 규정을 부칙(Annex)에 기술하고 있다.

신문, 정기간행물 등의 재화에 대해서는 회원국들이 경감세율,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전자적 용역은 기본적으로 다른 상품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화와 동일하게 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따라서 EU에서는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위의 <표 2>의 유형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열거하며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개정 내용은 2003년 7월 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사이에 EU 각료이사회로 하여금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집행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한 시적으로 적용되는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EU 각료이사회는 다음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첫 번째 대안은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에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신고하고, 징수하고, 세수를 분배하는 기준으로 적절한 전자적인 메커니즘(electronic mechanism)을 도입하는 안이며 두 번째 대안은 준비상항을 감안하여 2006년 6월 30일인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이다.¹¹⁾

3. 2010~2014년 과세방식: 현행 과세방식

현재 EU에서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규정은 Council Directive 2008/8/EC에서 규정된 것으로 이를 중심으로 현행 과세방식을 본 소절에서 소개한다. Council Directive 2008/8/EC는 2007년 12월 4일 회원국 간에 정치적으로 합의된 소위 ‘부가가

“
Council Directive 2008/8/EC는
2007년 12월 4일
회원국 간에 정치적으로 합의된
소위 ‘부가가치세 패키지’를 법률화한 것으로,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새로운 규칙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치세 패키지(VAT package)¹²⁾를 법률화한 것으로,¹³⁾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새로운 규칙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새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규칙과 더불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규칙을 함께 담고 있다.

우선,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담고 있는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승인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EU는 용역의 거래량과 거래방식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는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 즉 EU 단일시장 실현, 국제화, 규제완화, 기술변화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다수의 용역들에 대하여 소비지가 아닌 원거리에서 전자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고, 사실상 상당수의 용역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처럼 과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의 일반규칙(general rule)에서는 용역의 공급장소를

11) 실제로 EU 각료이사회는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하여 Council Directive 2002/38/EC의 개정 내용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하는 지침 개정을 3차례 더 승인하게 된다.

12) 부가가치세 패키지 안에는 ①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지침, ② 통신서비스, 방송서비스, 전자적 용역 관련 mini one stop shop(MOSS) 체계 구축, ③ 모든 회원국에 등록하지 않은 역내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은 회원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에 관한 지침, ④ 새로운 규정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회원국 간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regulation)이 포함

13) EU Commission, IP/08/208, 2008.2.12.

“
**모든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과세장소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 즉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일반규칙으로 적용하고,
 행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런 일반규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

여전히 공급자가 설립된 장소, 즉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다만, 이런 한계를 임시방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특례조항(particular provisions)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처럼 부가가치세 지침에 열거된 용역들에 한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급지국 과세원칙이 일반규칙으로 적용되는 기존 지침 아래에서 원거리에서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EU 역내 기업들은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회원국에 위치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 결과, 타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세율을 부과하는 회원국에서는 세원이 잠식됨에 따라 EU 내부시장에서도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EU 공통의 부가가치세 체계의 운영을 현대화하고 단순화하려는 EU 집행위원회의 전략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EU에서는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승인을 통해 용역의 소비가 일어나는 회원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으

로 부가가치세 규정을 개정하는 일정을 공식화하였다. 따라서 모든 용역의 공급에 관한 과세장소는 원칙적으로 실제 소비가 일어나는 장소, 즉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일반규칙으로 적용하고, 행정적·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이런 일반규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현재 적용되는 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일반규칙(general rule)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신분(사업자, 비사업자)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용역의 B2B 거래의 경우 공급장소는 소비자¹⁴⁾(용역을 공급받는 과세사업자)가 위치한 곳이며,¹⁵⁾ 용역의 B2C 거래에서의 공급장소는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공급자가 위치한 곳이다.¹⁶⁾

〈표 3〉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일반규칙:
 현행 EU 규정

구분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일반규칙	
	현행 지침 ¹⁾	종전 지침 ²⁾
과세사업자가 공급받는 경우(B2B 거래)	소비자(공급받는 과세사업자)의 위치	공급자의 위치
비사업자가 공급받는 경우(B2C 거래)	공급자(공급하는 과세사업자)의 위치	

주: 1) 현행 지침이란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Article 2를 의미한다.
 2) 종전 지침이란 Council Directive 2006/112/EC를 기준으로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시행 전에 적용되는 지침을 의미한다.

한편,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현행 지침의 제2조(Council Directive 2008/8/EC Article 2)¹⁷⁾에서는 특례조항(particular provisions)을 설치하여 행정적·정책적 이유로 인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규칙(general rule)이 적용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14) 영어로는 consumers or recipients로 표현된다.
 15) Council Directive 2008/117/EC of 16 December 2008의 Article 44
 16) Council Directive 2008/117/EC of 16 December 2008의 Article 45
 17) 2015년부터는 Article 2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Article 5가 적용될 예정

〈표 4〉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현행 EU 규정¹⁾

구분			용역의 공급장소	
거래 유형	공급자(supplier)	소비자(consumer)	특례규정	일반규칙
B2B 거래	역내 사업자	역외 사업자	없음	소비자의 위치
		역내 사업자		
	역외 공급자	역내 사업자		
B2C 거래	역내 사업자	역내 비사업자	없음(일반규칙 적용)	공급자의 위치
		역외 비사업자	소비자의 위치 ²⁾	
	역외 공급자	역내 비사업자	소비자의 위치 ³⁾	

주: 1) 현행 EU 규정이란 Council Directive 2006/112/EC를 기준으로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Article 2의 시행(2010.1.1.) 이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을 의미한다.
 2)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Article 2에 의해 개정된 Council Directive 2006/112/EC의 Article 58
 3)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Article 2에 의해 개정된 Council Directive 2006/112/EC의 Article 59

제시하며, 일반규칙보다 특례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례조항에 속하는 용역들에 대한 공급장소는 특정 거래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¹⁸⁾ 이런 특례조항에서는 EU 역외 공급자가 역내 비사업자에게 전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소비자인 비사업자가 EU 역내에서 위치한 곳을 공급장소로 규정하고 있다.¹⁹⁾ 한편 EU 역외 비사업자에게 전자적으로 제공된 서비스도 특례조항에 포함되며, 동 경우에는 소비자인 비사업자가 EU 역외에서 위치한 곳을 공급장소로 간주하고 있다.²⁰⁾

4. 2015년 이후의 과세방식

2015년 1월 1일부터 EU에서는 Council Directive 2006/112/EC의 Article 58에 의거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B2C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의 신분(역외 공급자, 역내 공급자)에 상관없이 소비지 과세라는 특례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는 지침에서는 EU의 한 회원국의 과세사업자가 다른 회원국의 비사업자에게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사업자의 위치가 공급장소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어 최종소비자인 비사업자가 거주하는 회원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공급자인 과세사업자는 소비자인 비사업자가 속한 회원국을 식별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소비자인 비사업자가 속한 회원국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

18) EU 집행위원회, IP/08/208, 2008.2.12.
 19)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Article 2로 개정된 Directive 2006/112/EC Article 58
 20)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Article 2로 개정된 Directive 2006/112/EC Article 58 및 Article 59 (k)

〈표 5〉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향후 EU VAT 지침¹⁾

구분			용역의 공급장소	
거래 유형	공급자(supplier)	소비자(consumer)	특례규정	일반규칙
B2B 거래	역내 사업자	역외 사업자	해당사항 없음	소비자의 위치
		역내 사업자		
	역외 공급자	역내 사업자		
B2C 거래	역내 사업자	역내 비사업자	소비자의 위치 ²⁾	공급자의 위치
		역외 비사업자		
	역외 공급자	역내 비사업자		

주: 1) 향후 EU VAT 지침이란 Council Directive 2006/112/EC를 기준으로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Article 5의 시행(2015.1.1.)부터 적용될 지침을 의미한다.
 2) Council Directive 2008/8/EC의 Article 5에 의해 개정된 Council Directive 2006/112/EC의 Article 58. 한편 동 규정은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외에도 통신서비스 및 방송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한다.

또한 EU에서는 2015년부터 전자적 용역의 B2C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개자(intermediary)를 동 전자적 용역의 공급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중개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만일 역내 사업자가 온라인 포털, 게이트웨이(gateway), 또는 장터(marketplace)를 통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포털·게이트웨이(gateway)·장터(marketplace) 등 플랫폼 운영자가 그 자신의 이름으로 활동한다면, 플랫폼 운영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로 간주되어 납세의무자가 된다.²¹⁾ 이러한 경우 역내 공급자는 온라인 포털이나 게이트웨이에 서비스를 공급한 것이 되어 B2B 거래로 분류됨에 따라 B2C 거래에 대한 규정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을 받는 고객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고객이 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EU에서는 고객이 부가가치세 등록번호(VAT Registration Number, VRN)를 제시하지 않고, 고객이 사업을 영

위하며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보여주는 기타 정보가 없는 경우 그 고객에게 제공되는 거래는 B2C 거래로 간주할 예정이다. 또한 역내 사업자는 고객이 위치한 장소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U에서는 고객의 위치를 사업자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고객 위치에 대한 5가지 사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만일 서비스가 전화 박스, 전화 키오스크, 와이파이 핫스팟, 인터넷 카페, 음식점, 호텔 로비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제공된 장소, 서비스가 배·기차 등을 통해 회원국 간 이동하는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탑승한 장소(출발지), 서비스가 개별 소비자의 유선전화기(telephone landline)를 통해 제공된 경우에는 유선전화기가 위치한 장소, 서비스가 휴대폰(mobile phone)을 통해 제공된 경우 심(SIM) 카드의 국가코드, 방송 서비스가 전자시그널 해독기(decoder)를 통해 제공된 경우에는 전자시그널 해독기(decoder)가 전달·설치된 우편주소를 고객의 위치로 제시하고 있다.

EU에서는 새로운 규칙에 따른 역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VAT Mini One Stop

21) 아일랜드에 서버가 있는 구글의 경우 2015년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판매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Shop(VAT MOSS)이라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역내 사업자 및 기존 역외 사업자에게 동 서비스 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VAT MOSS 온라인 서비스 체계는 사업자가 거래하는 고객이 위치한 모든 회원국에 등록·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중 한 곳에만 등록·신고·납부하면 EU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완성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역내 사업자가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는 ‘Union’ VAT MOSS라고 불린다. EU 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역외 사업자는 ‘Union’ VAT MOSS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VAT MOSS 시스템을 이용하는 역내 사업자의 등록 및 신고·납부를 받은 회원국은 그 사업자를 대신하여 관련 회원국들에 그 사업자의 VAT MOSS 신고서 중 해당 부분의 전자사본과 관련된 세금을 전달할 의무가 부여된다. 그리고 공급자는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시점에서 고객이 위치한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고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EU 역외 과세사업자는 ‘Non-Union’ VAT MOSS 온라인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허용된다. ‘Non-Union’ VAT MOSS 온라인 서비스는 기존의 특례규정(special scheme)에 의해 단순화된 등록·신고·납부체계와 거의 동일한 시스템이다. 즉, ‘Non-Union’ VAT MOSS 시스템은 현행 EU VAT on E-Service(VoES) 체계를 모든 디지털 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약간 조정한 온라인 서비스 체계이다.

“
 EU에서는 새로운 규칙에 따른
 역내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VAT Mini One Stop Shop이라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역내 사업자 및 기존 역외 사업자에게
 동 서비스 체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

III. 우리나라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시사점

1. 과세 현황

우리나라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현황을 보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국외 사업자 및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한 서버를 통해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 전자적 용역을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가 동 용역의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즉,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는 중개자인 오픈마켓의 서버 소재지에 상관없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공급자와 해외에 소재한 서버를 이용하는 국외 공급자 간에 과세의 공정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는 중개자인 오픈마켓의 서버 소재지에 상관없이 국내 소비자가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를 징수·신고·납부하고 있다. ”

〈표 6〉 우리나라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현황

구분		과세 여부
공급자의 소재지	중개인 등 소재지 ¹⁾	
국내 공급자	국내	과세
	해외	
	(직접공급)	
국외사업자·비거주자 ²⁾	국내	과세되고 있지 않음
	해외	
	(직접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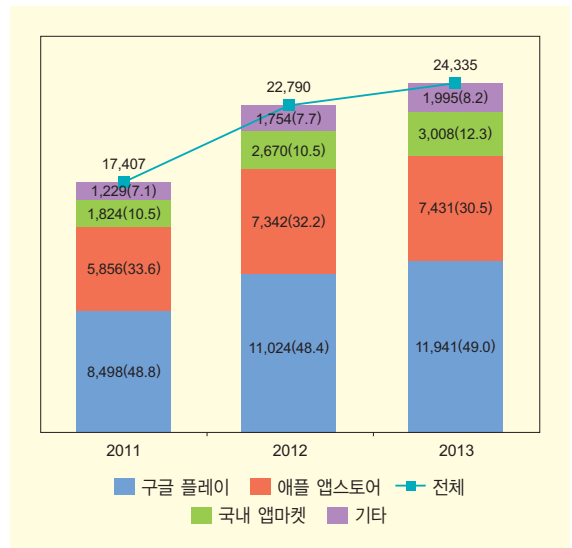
주: 1) 중개인이란 구글, 애플, T스토어 등 오픈마켓 사업자를 말하며 중개인의 소재지가 해외라 함은 국내에 서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사업자 및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4)가 제공하는 오픈마켓별 국내 콘텐츠 시장의 매출 자료를 보면, 2013년 잠정 기준 구글 플레이는 전체 국내 콘텐츠 시장의 매출 중 49.1%(1조 1,941억원), 애플의 앱스토어는 30.5%(7,431억원), T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이 12.4%(3,008억원), 기타가 8.0%(1,955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이 국내 앱시장의 약 5분의 4를 차지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높지만, 그 비중은 최근 조금씩

하락하는 추세('11년 82.5% → '12년 80.6% → '13년 79.6%)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 잠정 기준 무선인터넷 콘텐츠의 국내 매출 중 해외 오픈마켓의 비중이 87.7%(2조 1,367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해외 오픈마켓의 매출액 중 20% 정도를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약 427억원 정도의 세수가 과세되고 있지 못한 상태로 판단된다.²²⁾

[그림 1] 오픈마켓별 콘텐츠 매출 규모 추이

(단위: 억원 %)



주: 1. 2013년은 추정치
 2. ()안은 비중

자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4), 그림 9, p. 17.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4)의 향후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2010~2016년 동안 연평균 22.7%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디지털 콘텐츠 중 게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인데, e-book이나 멀티미디어는 다른 콘텐츠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22) 현실적으로 면세되는 이북(e-book) 등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어서 세수손실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

전망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은 급성장할 것이기에 국내외 사업자 간 보다 공정한 과세체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정비 방안

200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적 용역의 국제거래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충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부가

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용역의 수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세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규정에서 ‘용역의 수입’은 빠져 있는 상태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52조의 대리납부 규정을 마련하여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리납부 규정은 용역공급자가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나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표 7〉 연도별 콘텐츠 산업 부문 중분류별 시장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e]	2014[e]	2015[e]	2016[e]	연평균 성장률	
전체	9,966	17,407	22,790	24,335	31,860	32,341	34,049	22.7	
게임	시장규모	3,413	3,752	5,937	6,573	7,896	8,024	8,857	17.2
	비중	33.0	21.6	26.1	27.0	24.8	24.8	26.0	
멀티 미디어	시장규모	1,971	3,693	4,322	4,380	6,278	6,570	6,716	22.7
	비중	19.0	21.2	19.0	18.0	19.7	20.3	19.7	
커뮤니케이션	시장규모	2,056	2,197	2,420	2,638	3,298	3,363	3,429	8.9
	비중	19.9	12.6	10.6	10.8	10.4	10.4	10.1	
e-book	시장규모	594	1,642	2,934	3,027	4,515	4,629	4,861	42.0
	비중	5.7	9.4	12.9	12.4	14.2	14.3	14.3	
지식정보	시장규모	773	1,548	1,679	1,811	2,445	2,455	2,476	21.4
	비중	7.5	8.9	7.4	7.4	7.7	7.6	7.3	
엔터테인먼트	시장규모	557	648	769	814	963	992	1,014	10.5
	비중	5.4	3.7	3.4	3.3	3.0	3.1	3.0	
교육	시장규모	602	1,332	1,443	1,698	1,945	1,976	2,007	22.2
	비중	5.8	7.7	6.3	7.0	6.1	6.1	5.9	
모바일 상거래	시장규모	-	1,828	2,439	2,518	3,315	3,106	3,441	13.5
	비중	-	10.5	10.7	10.3	10.4	9.6	10.1	
기타 콘텐츠	시장규모	-	767	847	876	1,205	1,226	1,248	10.2
	비중	-	4.4	3.7	3.6	3.8	3.8	3.7	

주: 연평균 성장률은 2010~2016년까지의 연간 복리 평균 성장률(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을 의미하며,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4)의 표 4와 상이하다.

자료: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2014), 표 4, p.15.

“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아닌
 ‘역무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

해당)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공급받는 용역이 과세용역이어야 하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아야만 한다. 또한 제공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고 면세사업에 제공하거나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리납부가 허용된다.

둘째, EU 및 그 회원국의 사례처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범위에 전자적 용역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에서는 특정 업종들을 열거하며 동 업종들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용역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전자적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²³⁾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과세되고 있는 상태이다. 전자상거래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세제도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여 납세순응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전자적 용역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적 용역의 면세범위를 EU나 다른 국가에 비해 넓지 않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아닌 ‘역무가 사용되는 장소’로 규정하여 소비지국 과

세원칙에 맞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²⁴⁾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로 규정하면 외국에서 제공되지만 국내에서 사용되는 용역에 대한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해외사업자와 국내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부터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나 그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업자는 국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수행하지만 국내사업자는 사업자 본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수행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 축소를 위해 전자적 용역 제공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사업자등록을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간이등록신고납부시스템을 구축할 때, EU의 Non-Union VAT MOSS 체계를 벤치마크하여 해외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결정·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제시된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관련 정비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표적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24) 전통적인 용역의 거래방식에서는 공급지와 소비지가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장소를 제공지나 사용지로 규정해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공급지와 소비지가 점점 명확하게 구분되므로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공급장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 VAT 운영 경제권인 EU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또한 동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전자적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하였다.

EU에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전자상거래를 육성하는 가운데 조세의 중립성 또는 공평성을 훼손하지 않고 납세순응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자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진화시켜 온 특징이 발견되었다.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3년 7월 이전 EU에서는 다수의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EU 역내에서 소비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가 충분하지 못하고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역내외 기업 간에 경쟁의 왜곡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3년 7월부터 EU 역외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EU 역내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내 비사업자가 설립 또는 위치한 장소를 공급장소로 인정함으로써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역외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징수·신고·납부 의무를 새롭게 부담함에 따라 역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간이등록신고납부제’를 마련·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 및 규모가 크게 증가함에도 수년 동안 관련 규정을 단편적으로 개정해 왔고, 사실상 상당수의 용역이 소비지 과세원칙을 기준으로 현재 과세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일반규칙이 아닌 특례조항에서 허용하는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공급지 과세원칙이 일반규칙으로 적용되는 기존 지침 아래에서 원거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EU 역내 기업들은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회원국에 위치하려는 유인이 작동함에 따라 EU 내부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10년부터 용역의 B2B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일반규칙으로 규정하였다. 그리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용역의 수입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고 용역의 B2C 거래에 대해서는 과도기적으로 공급지 과세를 일반규칙으로 하고, 기존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었던 EU 역외 공급자가 역내 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두어 계속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한편 2015년부터는 전자적 용역을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모든 B2C 거래에 대하여 소비지 과세라는 특례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동 특례규칙에 따라 공급자의 소재지가 역외인지 아니면 역내인지를 불문하고 전자적 용역의 경우 비사업자인 소비자가 위치한 곳에서 과세권이 행사되고 있다. 이에 공급자인 과세사업자는 비사업자인 소비자가 속한 회원국을 식별하고,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속한 모든 회원국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소비자인 비사업자가 속한 회원국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EU에서는 납세편의를 도모하여 납세순응을 높이기 위해 역내 공급자에게도 ‘간이등록신고납부제(Union MOSS)’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포털, 장터 등 중개자를 통해 전자적 용역이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래의 경우 중개자가 전자적 용역의 제공자를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거래에 핵심적으로 참여하면 중개자를 공급자로 간주함으로써 조세운영비용을 낮추고 있다.

이상과 같은 EU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고에서는 전자적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용역의 수입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

세대상 용역의 범위에 전자적 용역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볼 때 면세를 허용하지 않고 정상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용역의 공급장소를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가 아닌 '역무가 사용되는 장소'로 변경하여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거주지를 불문하고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여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_____, "Explanatory notes on the EU VAT changes to the place of supply of 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electronic services that enter into force in 2015," 2014.

HMRC, "Place of supply of digital services and VAT Mini One Stop Shop(MOSS) guidance," 2014.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4년 세법개정안」, 2104. 8.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2013 대한민국 무선인터넷산업현황』, 2014. 2.

EU Commission, Council Directive 77/388/ECC, 1977.
_____, "A European Initiative in Electronic Commerce," 1997.
_____, "Electronic Commerce and Indirect Taxation," 1998.
_____, Council Directive 2002/38/EC, 2002.
_____, Council Directive 2006/112/EC, 2006.
_____, Council Directive 2008/117/EC, 2008.
_____, Council Directive 2008/8/EC, 2008.
_____, IP/08/208, 2008.2.12.
_____, Council Implementing Regulation (EU) No 1042/2013, 2013.
_____, "Guide to the VAT mini One Stop Shop," 2013.

물공급 재정효율성 개선방향¹⁾

I. 서론 및 문제제기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hyuna@kipf.re.kr)

국가는 다양한 종류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상하수도 관련 공공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대표적인 인프라 사업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하수도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상하수도 배관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상하수도 사업의 특성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물공급의 최종적인 서비스 형태는 상하수도 공공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지만, 취수·정수 단계인 댐 유역관리, 수질관리와 같이 전체적인 물공급의 공공서비스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나아가, 민간영역인 물산업 분야까지 포함할 경우 물 관련 서비스의 내용은 복잡해진 현대 인류의 생활상이 투영된 전 분야에 걸쳐 방대하다.

물공급과 관련하여 기후변화와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물자원 확보, 수질개선 요구 증가,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요구 등 관련 산업분야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계에서는 물공급 분야가 ‘돈 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재정투자는 복지수요 증가로 인하여 물공급 관련 상하수도에 대한 재정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재원의 성격상 장기투자 비중이 높은 상하수도 공공서비스는 단기성과가 불투명하여 구체적인 현금지원 성격인 복지재원에 비하여 정치적인 가시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상하수도는 개별 자치단체가 영세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재정누수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고, 이른바 ‘돈 새는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하여 기존 논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상하수도 재정효율화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

1) 본 원고는 2015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인 「지방자치단체 물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발간예정)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물공급 관련
 국고지원 부담이 비교적 높은 국가이고,
 물공급과 관련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원투입의 필요성 및 가능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되었고, 정책개선이 진행 중에 있으나 근본적인 개편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우려와 이로 인한 재정투자 삭감, 주민 부담 증가 논의와 맞물려 기존 사업의 재정효율화 방안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물공급 관련 국고지원 부담이 비교적 높은 국가이고, 물공급과 관련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원투입의 필요성 및 가능성 여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최근 운영의 독점권이 지방공기업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만의 상수도 운영, 관리주체 분산에 따른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과 같이 물공급과 관련한 오래된 논쟁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함을 주지하고자 한다. 나아가 물공급 공공서비스는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분야이기에 정책 현안으로서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분석에서는 상수도 관련 물공급 재정효율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물공급 관

련 부처의 재정규모와 사업내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재정규모도 같이 파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물공급 관련 현황 및 관련 기관과 같은 거버넌스 체계를 살펴본 후, 3장에서는 물공급 관련 재정규모를 관련 국고보조금과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한 환경부와 지방공기업의 재무 현황을 파악한다. 이후 4장에서는 물공급 관련 내용 중 상하수도를 중심으로 한 쟁점사항과 개편과정을 정리하고, 5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된 기존의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물공급 관련 현황 및 관련기관

1. 상수도 공급 및 운영 현황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2012년 기준 약 95.1% 수준이다.²⁾ 2003년 당시 평균 89%였으나 2004년 이후 95%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상수도 보급률은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시가 100%인 반면, 충남이 71.4%로 최저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특·광역시시는 99% 수준을 보인 반면, 읍 지역은 88.8%, 면지역은 51% 정도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상수도 보급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 1일당 급수량은 2004년 353리터에서 2011년 기준 335리터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³⁾

한편,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강수량 규모 기준이며 상대적으로 인구규모와 취수여건을 살펴보면 반

2)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이용인구」를 제외한 보급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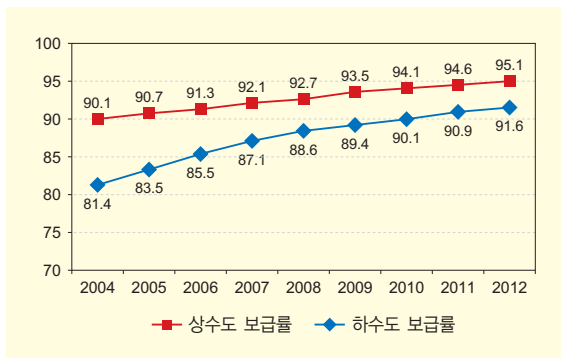
3) 문현주·정아영(2013)에서는 '1인 1일당 급수량'의 감소는 상수도 서비스의 우수율이 높아지고 누수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수요관리로 인한 물 사용량 감소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pp. 8~9).

드시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7mm로 세계 평균(807mm)의 1.6배이지만, 1인당 연강수 총량은 2,629톤으로 세계 평균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상 1인당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별, 연도별로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홍수기에 강수량이 편중(74%)하여 물 이용 및 치수 측면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⁴⁾

2012년 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전국평균 91.6%이며, 서울은 100%, 충남이 63.5%, 경북이 71.9%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1991년 당시만 해도 40%에 못 미치는 하수도 보급률을 보였으나 199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대 이후 70%, 2004년 이후 80%대 이상의 보급률로 확대되었다. 하수도의 경우, 164개 지방자치단체 중 75개는 지방공기업, 나머지는 일반회계 중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2004~2012 상·하수도 보급률

(단위: %)



<표 2> 하수도 보급률 변화

(단위: 천명, %, 개소)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처리인구	39,924	42,450	44,631	45,263	46,358	47,034	47,538
보급률	81.4	85.5	88.6	89.4	90.1	90.9	91.6
처리시설	268 (1,153)	344 (1,681)	403 (1,991)	438 (2,332)	470 (2,594)	505 (2,858)	546 (3,067)
시설용량 (천톤/일)	21,617	23,273	24,568	24,925	25,118	25,228	25,297

주: () 안의 숫자는 500톤/일 미만 시설 수
자료: 환경부, 「하수도 통계 2012」

<표 1> 상수도 보급률 변화

(단위: 천명, %, 0)

	2004	2006	2008	2009	2010	2011	2012
급수인구	44,187	45,270	46,733	47,336	50,264	50,638	50,905
보급률	95.1 (90.1)	95.9 (91.3)	96.8 (92.7)	97.4 (93.5)	97.7 (94.1)	97.9 (94.6)	98.1 (95.1)
1인1일 급수량	353	346	337	332	333	335	332

주: 1) () 안의 숫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인구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
자료: 환경부, 「상수도 통계 2012」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사업으로 직접 운영하거나 직영기업인 ‘지방공기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 2013년 기준 116개의 지방공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 및 공단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간접경영방식, 민간에 이양·위탁하는 민영화 방식을 시도 중에 있다. 반면, 하수도의 경우,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민간업자 참여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어 상수도와 하수도의 운영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전입금을 통하여 지방공기업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지자체의 일반회계 사업일 경우 자치단체 재정을 잠식할 우

4)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에 대한 주요국과의 비교는 부록 참고(「수자원장기종합계획 2011~2020」, 국토해양부, 2011)

“
**전체 인구 규모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상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 수와 근로자 수를 비교해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프랑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

려가 있기에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2013년 기준분야별 지방공기업 수는 상수도가 116개, 하수도가 87개로 전체 394개 중 절반가량 차지한다. 참고로 상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 숫자는 해당 국가공기업과의 지배력 배분 및 민영화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인구 규모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상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 수와 근로자 수를 비교해 보면, 독일과 이탈리아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고 프랑스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다.

〈표 3〉 주요국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규모(2012년 기준)

(단위: 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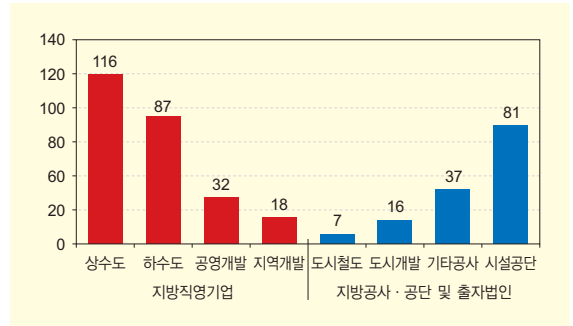
	공기업 수	직원	인구
독일	1,336	105,000여명	81백만
이탈리아	512	7만여명	61백만
프랑스	129	9,800여명	66백만
한국	200	14,562명	49백만

자료: 1. 김현아·김지영, 『지방정부 재정활동에 관한 연구』, 2013, p. 140, 〈표 IV-10〉 인용

2. The 14th CEEP Annual conference of local enterprises 발표자료 재인용

[그림 2] 2013년 지방공기업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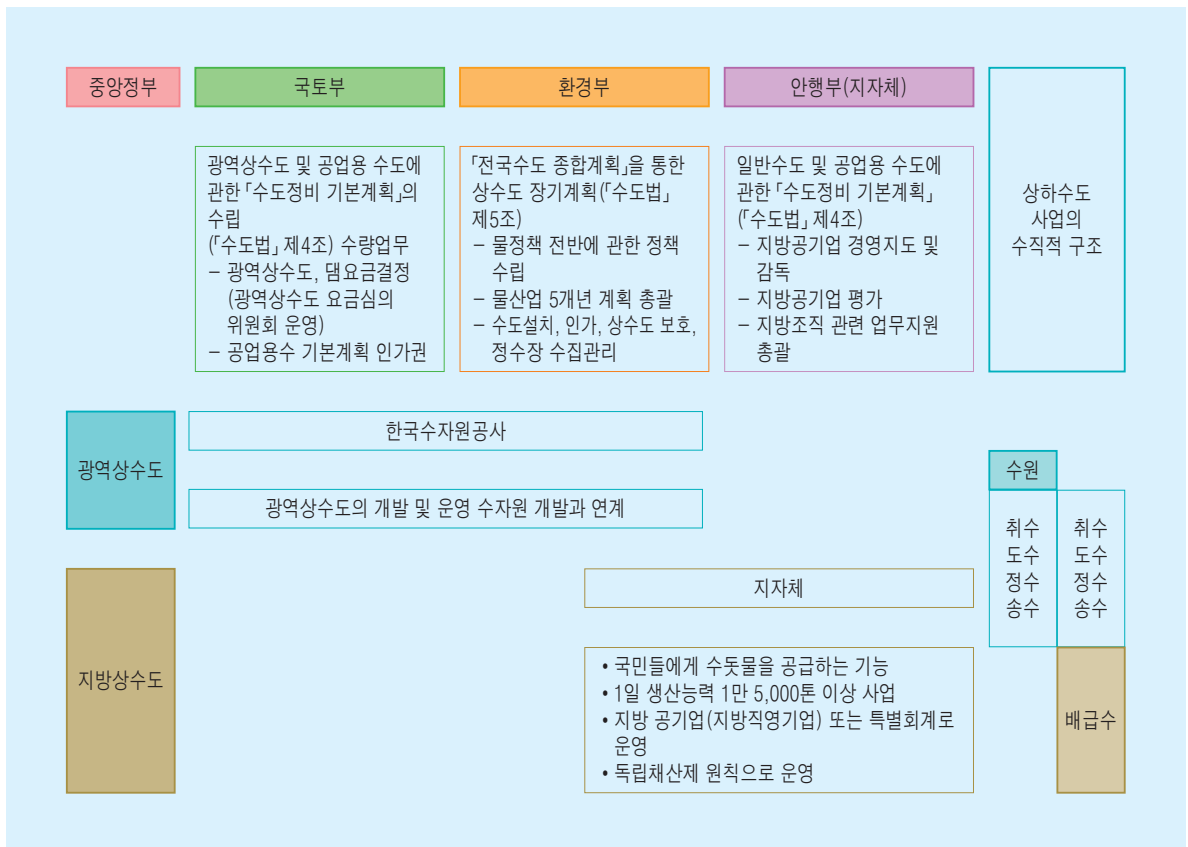
2. 물공급 관련 거버넌스 구조

우리나라의 물공급 관련 거버넌스 구조는 수직적, 배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중앙부처는 주요 법과 규제 관련 사항을 전국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에 지방공기업 경영 및 지방조직 관련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부는 물공급 관련 법의 주무부처로서 소관부처의 물공급 관리 분야가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량관리, 환경부는 수질관리, 농림부는 농업생산관련용수의 운영주체로 구분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기업 운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수도만 보더라도 상수도건설, 운영주체, 인허가 권한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에 따라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볼 때, 물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편 시 수직적 및 수평적 관련 기관과의 복잡한 조율과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탄력적인 운영 개선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는 부처별 및 기능별 개별법이 수평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어 수자원계획 및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내 물 관련 장기계획은 부문별(수량관리, 수질

관리, 재해관리), 용도별(생공용수, 농업용수) 또는 관리대상별(지하수, 지표수, 해수)로 수립되어 각 기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산 관리와 행정구역별 관리로 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관련 부처 간 업무혼선 및 충돌, 중복투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⁵⁾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물공급과 관련해서는 복잡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먹는 물은 기후환경, 지형,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공업용수 및 생활용수 수요 증가 등 다각적인 부문과 같은 전체 물공급 구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중 먹는 물 부분만 보더라도 물 관리의 속성상 법과 규제는 중앙부처가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최종단계의 먹는 물 공급단계 하수처리 취합, 모니터 및 평가를 담당하는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림 3] 상수도 관련 거버넌스 구조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2011.12, 국토해양부

“
 주요 선진국들은 먹는 물과 관련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권한 및
 책임이 관리부처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급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이다.
 ”

프랑스의 경우에는 환경부처와 보건부처가 주요 규제 담당 중앙부처에 해당하였고, 실제 먹는 물 최종 공급단계(delivery and protection of drinking water resources) 및 재무담당(financing)은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요금산정 관련 ‘위원회’가 있으며 공개 질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NGO 및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의 참여가 매우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의 수직적 환경과는 다른 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일을 포함한 프랑스, 캐나다의 사례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수량’과 ‘수질’을 담당하는 부처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요약하면 주요 선진국들은 먹는 물과 관련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권한 및 책임이 관리부처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공급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가 구조적인 차이점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

〈표 4〉 상수도 사업주체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상수도 건설	국가(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2 이상)	지방자치단체 (특별·광역시, 시·군)	지방자치단체
운영주체	한국수자원공사	지방자치단체 (특별·광역시, 시·군)	지방자치단체 마을별 시설관리위원회
사업인가	국토해양부 장관, 환경부장관(정수시설)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Ⅲ. 물공급 관련 재정규모 현황

1.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현황

먼저 물공급과 관련한 우리나라 전체 재정규모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물공급 관련 중앙부처 재원규모는 관련부처의 국고보조금 및 기금 현황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물공급 관련 재정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먹는 물과 관련한 상하수도 이외에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포함 가능하다. 공업용수의 경우 일부 국토해양부(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담당하고 있고, 농업용수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사업에 반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수량관리 목적의 보조금으로 ‘하천관리 및 홍수예보’, ‘댐건설 및 치수능력 확대’, ‘용수공급 및 개발’, ‘수자원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국토부 보조금 규모는 약 2.4조원 규모이며, 2011년 5조원에 달했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는 ‘상하수도 및 토양지하수관리’, ‘수질 보전 및 관리’, ‘수계기금’이 관련 보조금 및 기금에 해당하며, 2014년 기준 약 4.3조원이며,

6) Salvetti(2013), Audette-Chpadelaine(201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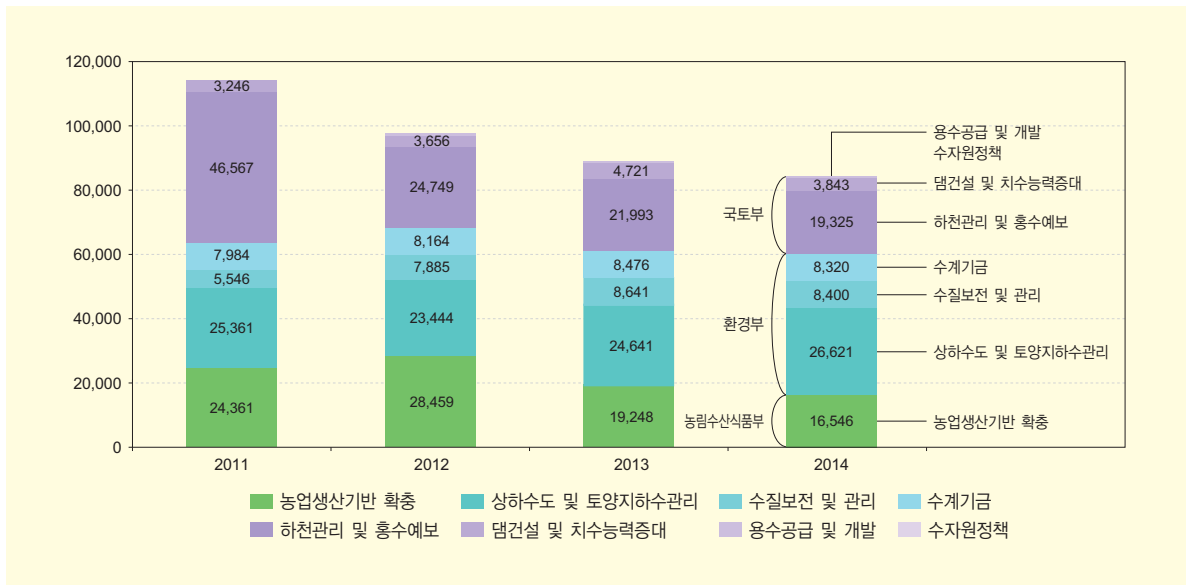
2009년 3.3조원, 2010년 3.6조원, 2011년 3.8조원, 2012년 3.9조원, 2013년 4.1조원 규모로 증가추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농업생산기반확충' 사업을 물공급 관련 보조금으로 보았으며 해당 단위사업의 보조금 규모는 2009년 당시 1.7조원에서 2012년 당시 2.8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기준 약 1.6조원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⁷⁾

이들 세 부처의 물공급 관련 보조금은 2009년 기준 약 7.9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총지출 대비 약 2.6% 비중이었으며 이는 2010년 3.7%까지 증가하였다가 2012년 이후 감소하여 2014년 8.4조원으로

2.3% 수준으로 역시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⁸⁾ 물공급 관련 보조금 규모의 증가율도 2010년과 2011년을 제외하고 20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다. 물공급 관련 보조금의 감소추세는 경제위기 이후 재정수입 감소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자본지출 관련 사업들의 감소추세와 유사한 상황이다. 요약하면 전체적인 물공급 관련 보조금은 감소 추세이나 먹는 물공급과 관련한 상하수도 보조금인 환경부 보조금의 규모는 다소나마 증가추세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2011~2014 중앙정부 물 관련 예산규모

(단위: 억원)



자료: 국토해양부, 예산개요 부문별 세출예산, 환경부, 예산개요 부문별 주요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개요, 각 연도

7) 농림부 예산개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확충' 단위사업은 '농업용수' 관련 사업으로 보았고, 이들 사업 중 '농지개발시설 장기채 상환(농특)'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분석에서는 단위사업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포함시켰다. 이하 세부사업명은 배수개선, 다목적농촌용수개발(농특),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서산간척지농업기반시설 재정비, 한밭대비용수개발, 아산만방조제 배수감문 확장공사,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수리시설용지관리, 농촌용수관리, 영산강유역하구둑구조개선(농특),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농특), 입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농특), 하천수 활용 농촌용수 공급사업 자원조사(농특), 금강Ⅱ지구, 홍보지구, 영산강Ⅳ지구, 농업용저수지독높이기(농특), 수리시설개보수, 대형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증대(농특), 삽교방조제 배수감문확장공사, 농업기반정비 사업에 각각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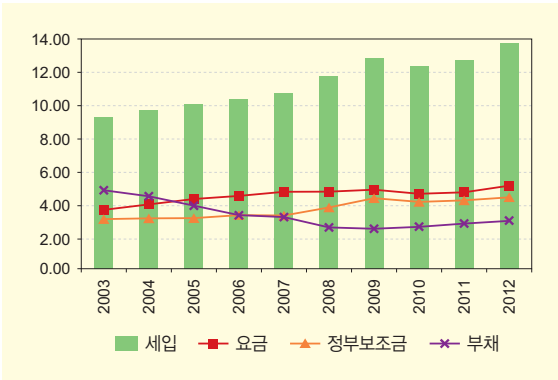
8) 우리나라 전체 총지출 규모는 「나라살림」의 예산개요(기금포함) 총지출 기준임

“
**재정규모 투입이나 요금비율
 비중을 살펴볼 때 상수도과 하수도의
 정부부담 비중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상수도과 하수도의 세입 및 세출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

2. 환경부 및 지방공기업의 상하수도 사업 재무
 현황

[그림 5] 환경부 기준 상하수도 재정규모

(단위: 조원)



우리나라 상·하수도 관련 통계는 환경부가 집계하는 부문과 지방공기업 부문이 관리하는 부문이 다소 상이하기에 통계수치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2012년 기준 환경부 기준으로 상수도 세입규모는 약 6.7조원, 하수도가 7조원 규모이다. 또한, 2012년 행정자치부 기준 지방공기업 결산 상수도의 세입규모는 6.1조원, 하수도는 5조원 내외의 규모이다. 이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GDP 대비 1% 수준으로 OECD가 2006년 당시 전망한 네트워크 관련 전 세계 재정지출 규모 수준에 해당한다. 환경부 기준, 전체 상하수도 재정규모에서 정부부담률(국비+시도

비+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연평균 세계 기반시설 분야별 예산 및 GDP 대비 비율(예측)

(단위: 십억달러, %)

기반시설 유형	2000 ~ 2010	세계 GDP 대비 비율	2010 ~ 2020	세계 GDP 대비 비율	2020 ~ 2030	세계 GDP 대비 비율
도로	220	0.38	245	0.32	292	0.29
철도	49	0.09	54	0.07	58	0.06
통신	654	1.14	646	0.85	171	0.17
전기	127	0.22	180	0.24	241	0.24
상수도	576	1.01	772	1.01	1037	1.03

자료: OECD, Infrastructure to 2030 - Telecommunications, Land Transport, Water and Electricity, OECD, Paris,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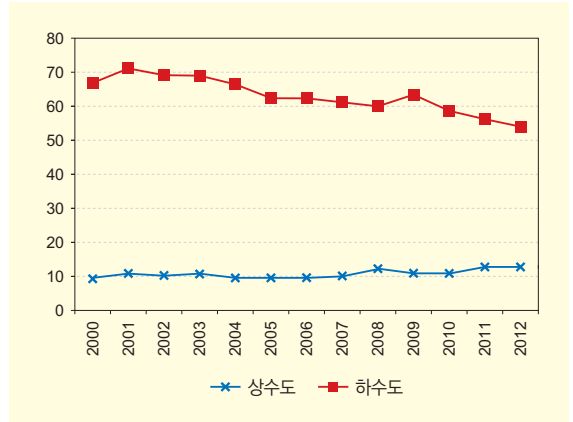
그러나 재정규모 투입이나 요금비율 비중을 살펴볼 때 상수도과 하수도의 정부부담 비중은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상수도과 하수도의 세입 및 세출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상수도의 정부지원 규모는 2003년 이후 11%에서 13%로 증가하였고, 하수도 부문은 오히려 69%에서 57%로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수도 세입에서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요금 비율에서도 상수도는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하수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17% 비중 정도에 불과하다. 상수도에 비하여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따라서 정부나 주민들의 재원부담 비중이 증가해야 하는 분야는 하수도임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의 요금비중 추세가 상수도에 비하여 낮고, 재정투입 규모 역시 감소하고 있는 점은 특이하다. 그렇다고 하여 하수처리 규모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정부나 사용자부담이 아닌 '부채'를 통한 재원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OECD

분석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상수도는 '수익자부담 (private benefit)원칙' 적용이 가능하지만, 하수도의 경우 '공공서비스(public concern)'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정치경제학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상수도 관련 요금 인상이나 예산의 국회통과 시 국민의 동의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는 반면, 하수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정규모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하수도 관련 부채규모이다. 환경부 기준과 지방공기업 기준에서의 상·하수도 재정규모는 전체적으로는 유사하나,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하수도 부채' 부문이다. 환경부의 하수도 통계에서의 부채규모는 2003년 당시 2.7조원에 달한 바 있으나 매년 점차 감소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조원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2012년 지방공기업 결산 기준에서의 하수도 사업 부채규모는 2006년 당시 1.4조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9조원, 2012년 3.8조원에 이르고 있다. 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하수도는 1조 2천억원의 가장 큰 규모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즉, 관련 공공서비스가 유지되면서 이에 대한 재정지출은 이루어졌는데, 중앙부처 부분에서의 부채는 감소하는 대신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부채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지방공기업을 통한 'Shadow economy' 현상으로 볼 수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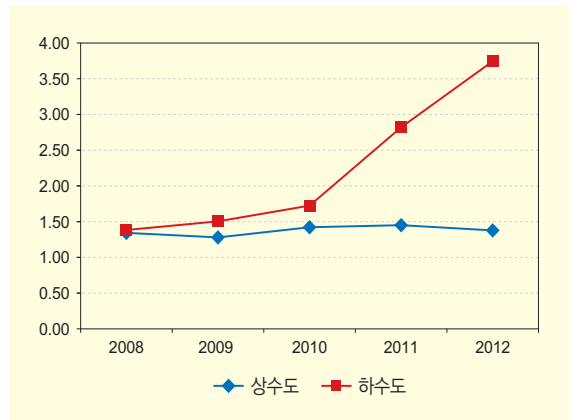
[그림 6] 상수도와 하수도의 정부보조수입 비중 변화

(단위: %)



[그림 7]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부채 규모

(단위: 조원)



이러한 하수도 사업은 도시철도 사업과 함께 지방공기업 전체 손실 발생의 주된 요인에 해당한다. 2012년 결산에서 상·하수도 전체 197개 기관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은 148개로 약 78.2%가 결손 기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수도 사업의 경우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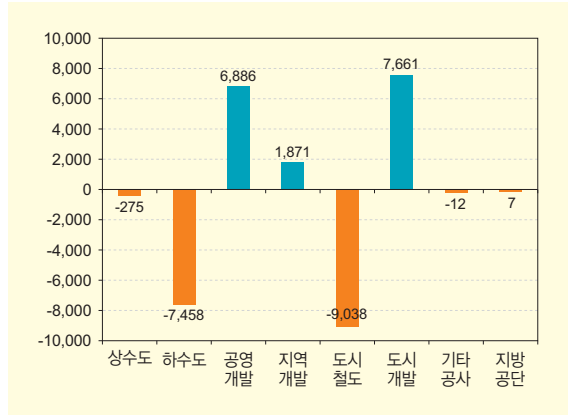
9) 과거에는 예산외지출(Off-balance) 효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제3섹터의 부채까지 통합부채로 포함시키므로 실질적으로는 예산지출로 포함되고 있는 추세로 볼 수 있다.

“
상수도 사업은
 최근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비 증가,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 시설 개량과 같은 비용 증가로 인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

82개 기관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에 79개로 결손 기관의 비중이 96.3%에 달한다. 상수도 사업은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5년 이후 당기순이익은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이후 상수도 보급률이 상승하면서 정수비, 배·급수비, 설비자산 감가상각비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11년에는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와 더불어 요금 적정화의 어려움, 서민물가 안정에 따른 수도요금 동결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이자율 하락 및 재정 조기집행에 따라 이자수익이 감소하여 상수도 사업의 적자를 야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급수구역 확대에 따른 신규사업비 증가, 노후관 교체 및 정수장 시설 개량과 같은 비용 증가로 인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림 8] 2011년 기준 지방공기업 유형별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3. 상하수도 요금수준

상·하수도 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는 원인은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상수도 요금현실화율 83.8%, 하수도 38.1% 수준)과 대규모 시설투자비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¹⁰⁾ 상하수도 사업은 고비용 구조의 장치사업이지만, 상하수도 사용료는 공공요금 관리정책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정화되지 못한 점이 주요 내용이다.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상수도의 경우 80%대의 요금 현실화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하수도는 2003년 당시 56.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기준 38%대에 머물러 있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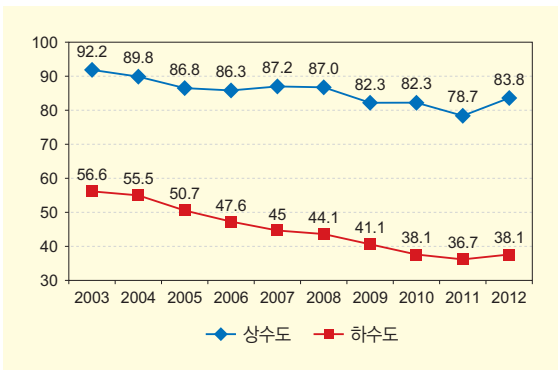
[그림 10]의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상하수도 요금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하수도 요금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라마다 차이가 큰 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하수도 요금이 가구소득 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3% 수준으로 일본, 캐나다, 미국과 유

10) 『1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안전행정부, 2013.6

사한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0.7%, 독일이 0.9%, 덴마크가 1% 정도이다. OECD(2009a)에서는 3T(Tariff: 요금, Taxes: 정부보조금, Transfers: ODA 보조금 등)로 구분하여 상하수도 요금(WSS: Water Supply and Sanitation)의 국가별 비중을 산정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금 비중이 약 40% 수준으로 프랑스의 95%, 오스트리아의 80~90%보다 낮고 멕시코의 60%보다도 낮은 것으로 분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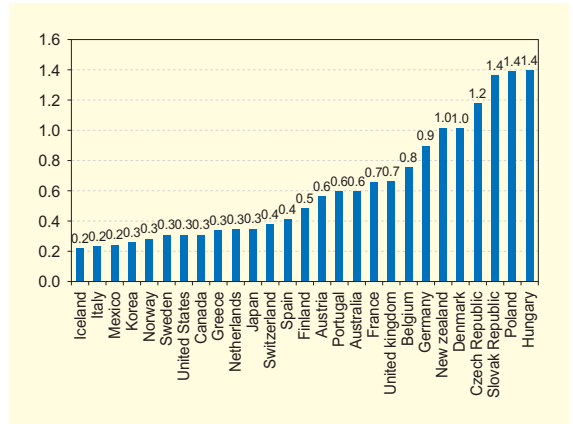
[그림 9] 연도별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단위: %)



[그림 10] 가처분소득 대비 상하수도 요금 비중

(미국달러 기준, 단위: %)



자료: OECD,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OECD internal document, 2009.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는 낮은 공공요금 수준의 정부정책과 관련이 깊다.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요금 정책은 높은 정부보조에 따른 형평화 기초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하여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정부재정이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공업용수 관련 지원도 가능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정부 지원을 통하여 낮은 공공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과연 이와 같은 공공요금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¹⁾ 조임곤(2014)은 2007년 3월 법 개정 이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요금 결정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할 의무는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요금인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¹²⁾ 향후 상하수도 요금 인

11) 동아일보, 「지하철, 버스, 수도요금 2015년 줄줄이 인상될 듯」, 2014.12.22.

12) "예를 들어 수도요금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요금에 영향을 받는데, 국토부 장관은 '물값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과 결정하고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 예산배분 권한과 각종 보조금 배분 권한을 생각할 때, 공공요금의 인상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핵심은 행정구역 단위사업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업의 영세성과
 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성이다.**
 ”

상에 대한 지자체별 인상내용을 분석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이후 자치단체 요금결정 방식이 변화하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쟁점사항 및 개편과정

가. 상수도 재정누수 심화에 따른 지방상수도 광역화 방안

상수도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핵심은 행정구역 단위사업의 속성을 갖고 있는 사업의 영세성과 이로 인한 재정 비효율성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7년 수도법 개정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독점운영에서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가절감 및 경영 효율화가 추진되었다.¹³⁾ 현재 국내 상수도 사업의 위탁운영은 국토부의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 가능하다. 2013년 기준 위탁운영 중인 지방상수도 공기업은 총 25개 지자체이다. 위탁방식은 시설소유권은 지자체가 갖고, 운영관리권은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이 갖는 형태이며, 사업기간은 20~30년이다.¹⁴⁾ 이와 같은 광역화 및 위탁확대 움직임은 재무효율성 측면에서 국제적인 추세와 같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으나,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의 위탁’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상수도 사업의 운영권한을 지자체에서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한 것으로 독점권한의 확대를 통한 효율화 개선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공공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사회가 ‘상수도 사업의 공공성 및 형평성’의 공공서비스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상수도 사업의 광역화 및 위탁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석결과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직관적으로는 상수도 사업은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투자비용을 광역화할 경우 규모의 경제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설에 따라 지방상수도 사업의 광역화 및 위탁의 효율성이 계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 연구는 권일웅·조수연(2012), 김상문(2012), 원구환(2010), 김지영(2008), 박상인(2005) 등이 있다. 특히, 권일웅·조수연(2012)에서는 규모의 경제 효과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획일적 통합보다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지역을 체계적으로 선택하여 통합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김지영(2008)은 특별시와 광역시, 대부분의 시·군 상수도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았고 중소기업 상수도 사업의 경우에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 생산원가가 감소하는 효과가 존재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유지연(2014)은 위탁운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위탁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를 뿐 아니라 설령 광역화와 위탁을 통한 효율성 개선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나아가 관련 정책입안자로서는 광역화 및 위탁효과에 대한 검증에 대해 주목해야 하고, 이때 계량분석의 속성에

13) 수도사업의 위탁 관련 규정은 수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근거하고 있고 위탁방식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으로 구분된다(원구환(2010)).

14) 유지연(2014), p.105

따른 분석결과와의 차이인지 실제 광역화 및 위탁효과의 차이인지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이다.

나. 상하수도 통폐합 논의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관점에서 상하수도 부분의 부채증가 추이로 볼 때 이들 사업을 통폐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현주·정아영(2013), 소일섭(2012) 등에서 논의한 바 있는데, 두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일원화하여 하수도 부분의 적자 운영 폭을 감소시키는 재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이는 시설 및 사업운영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수도 광역화 및 위탁 논의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규모의 경제효과를 의미한다. 또한, 사실상 두 사업의 재정통합체계를 갖추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는 바람직한 개편방향이다. 그러나 상하수도 통폐합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에는 부처 간의 이해관계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 지난한 정치적 과정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문현주·정아영(2013)는 상하수도 통합운영의 추진은 지역적 사업여건의 차이에 따른 지자체들의 재정손실 우려, 지자체들 간의 협력의 어려움, 경쟁력 있는 통합운영 사업자의 부재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 상하수도 요금인상 및 지역별 요금격차 논의

상하수도 재정효율화 방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선행연구가 있는 부분이 요금인상과 관련한 분야이다.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인상을 통한 수익자부담이 증가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에 비

“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인상을 통한
수익자부담이 증가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확보가 가능할 수 있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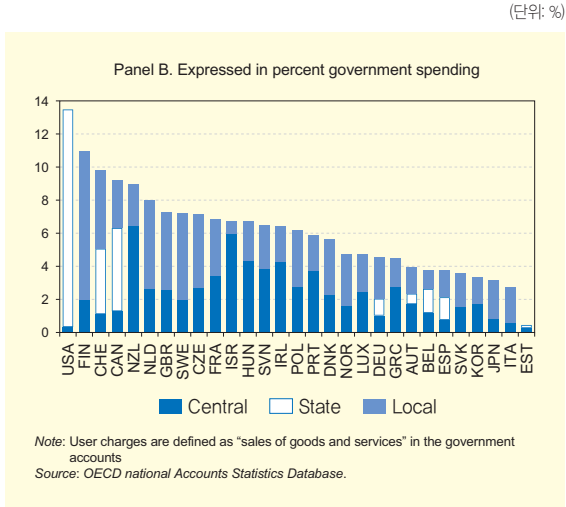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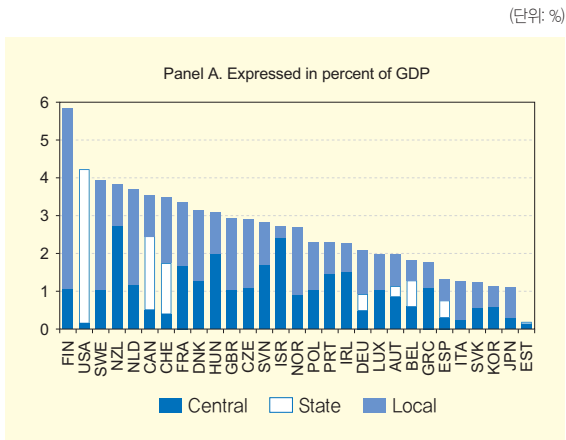
하여 매우 낮은 편이어서 오현택 외(2014)를 비롯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현행 하수도 요금은 처리원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요금현실화 추진을 위한 원가산정방식의 재산정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도 ‘한계비용’ 원칙에 따른 ‘수익자부담’ 방식이 ‘평균비용’ 부담을 의미하는 ‘정부부담(Tax financing)’ 방식보다 경제 효율면에서도 우월하므로, 상하수도 요금인상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와 사용자 책임성 확보는 이론적으로도 타당한 논리이다. [그림 11]의 국제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사용자 및 수수료의 GDP 대비 부담이 낮은 편에 속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에서 상하수도 요금인상은 쉽지 않다. 경제위기 이후 재정환경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요금인상 정책환경은 더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OECD(2009, 2009b)에서도 이른바 ‘3T’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이 한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하수도 관련 요금인상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요금수준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 정부보조 역시 경기확장(stimulus packages)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등을 권고하고 있다.¹⁵⁾ 상하수도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가장 원론적인 방법이 요금인상일 수 있겠으나, 관련 정책입

15) "Tariff revenue are likely to remain low and tax transfers to surge only where stimulus packages target....(OECD 2009b)."

안자는 이에 따른 정치적 비용과 '요금합리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11] 2009년 기준 OECD 국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용자료 비중
(User charges in OECD countr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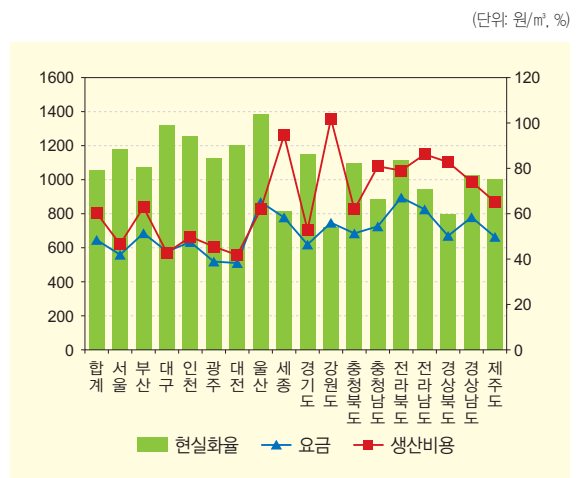


자료: 김현아·김지영(2013), pp.42~43 [그림 11-13] 인용

그리고 상하수도의 공공서비스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지역 간 요금격차 확대 문제가 더욱 심각한 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집중 지역인 대도시지역

위주의 공급 확대로 인하여 광역시보다는 일반 도지역의 생산원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강원도의 경우,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인구밀도가 낮아 요금 대비 생산원가가 높기 때문이다. 이는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며 이에 대한 원가보전 방식을 통해 지금까지는 정부보조로 유지해 왔다. 재원부담 정책 개편시 향후에도 정부의 원가보조를 통한 지역 간 형평화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정부보조를 줄이는 대신 재원부담 방식의 다양화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은 한계가 있고, 정부보조 역시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재원부담 다양화 방안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자본 투입을 의미하는 PPP 방식을 예로 들면, 민간자본 투입은 사업성과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대도시 지역에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재원의 낙후지역 배분비중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외부자본 유입을 통한 재원조달방안이 간접적인 지역 간 요금형평화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림 12] 2012년 지역별 수도요금 현황



자료: 환경부, 「2012 상수도통계」, 2013

5. 물공급 재정효율화 개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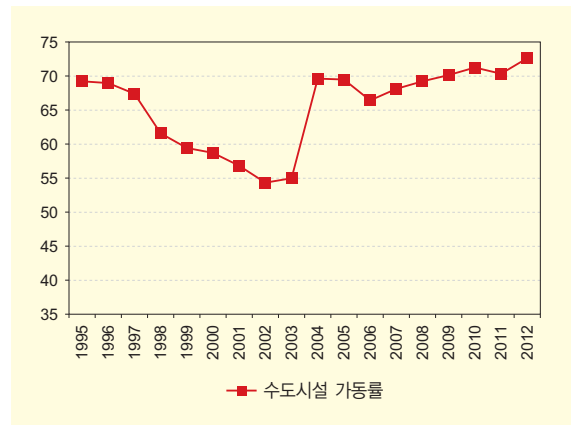
가. 물 관련 정부 간 재정지원 방식 다양화 방안 마련
 현행 우리나라의 물공급 재정정책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를 원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KIPF와 OECD의 공동연구 과정에서 발표된 주요 선진국 사례와 OECD 분석을 비교해 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물공급 관련 재정부담 규모 면에서는 다소 정부부담이 높게 나타나고, 운영 면에서는 지자체 독점운영 등이 주요 차이점으로 나타났다.¹⁶⁾ 그 밖에 빠른 보급률 확대와 높은 수질수준 유지 등 재정관점에서는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고 있다. 과거 OECD의 평가에서도 우리나라 물관리 성과를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으며, 비교적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지금까지는 물관리 재정정책 면에서도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¹⁷⁾

재정효율화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상수도 시설 가동률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설 효율화 관점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창수(2013)는 상수도 적정가동률이 80%대에 이르게 되면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역화 추진 및 위탁 활성화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동률 80%대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공급 관련 정부 간 거버넌스 개편 논의 시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의 통합논의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분권적인 업무연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
 재정효율화 측면에서 문제가 되었던
 상수도 시설가동률을 살펴보면,
 2006년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설 효율화 관점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 13] 1995~2013년 전국 상수도 시설(정수장) 가동률

(단위: %)



주: 1. 가동률=일최대생산량/시설용량×100
 2. 지방상수도과 광역상수도(수자원공사)를 합쳐서 계산한 값
 자료: 환경부, 「상수도통계」, 각 연도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상하수도 사업의 정부 간 재정부담 체계는 현행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분배 관련 재원부담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장치산업 관련 시설비용은 지금의 국고보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보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민간자본 투자를 이용한 ‘Public Private Partnership(PPP)’ 등의 다양한 재원조달방

16) Hyun-A Kim, KIPF and OECD Joint workshop 발표자료(2014.12)
 17) 김창수(2013), p.244

“
**향후 고령화,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정부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일정수준의 물공급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외부재원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

안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에도 재분배 관련 재원, 즉 저소득층의 공공요금 지원 등 중앙정부가 현금보조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고, 해당 사업비용은 자치단체가 일임하고 있는 등 정부 간 재정역할은 구분되어 있기에 현행 틀은 유지하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다양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자본지출 관련 이차보전 방식 확대, 정부보증 방식을 통한 중앙정부 지원방식의 다양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국제기구 전망에 따르면, 2016년의 주요국의 네트워크 공공서비스의 PPP 비중은 약 30%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향후 고령화,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수요가 정부세입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일정수준의 물공급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탄력적인 외부재원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재원의 탄력성 확보 이전에 시설의 광역화 및 위탁방안 등 운영면에서도 효율화가 이루어진다면, 상대적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늦춰진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시설운영의 다각화는 공공기관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물공급 서비스의 공공성 훼손 논의로 인하여 그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수도 분야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 확대로 인하여 부채수준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질 확보 수혜정도와 같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복지재원 확보에 밀려 인프라 재원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또한 쉽지 않은 정책환경하에서 그나마 자치단체별 재원확보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라고 보았다.

나. 부처 간 유사중복 감소를 위한 포괄보조사업화 방안 확대

앞서 살펴보았듯이 물공급의 재원 관련 부처는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부처 간 효율화는 역시 쉽지 않은 과제이다. 부처 내 보조금의 유사중복사업 통합은 PAYGO 논의 등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관련 보조금 효율화’인데 이는 사실상 현재와 같은 보조금 체계하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부처 중심의 보조금 예산편성 체계하에서는 타 부처의 유사중복사업을 모니터링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보조 사업화’ 방안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 중심의 사업선택권을 지자체에 일임할 경우 지역의 재정수요 및 매칭비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이 우선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이러한 포괄보조금 방식은 과거 10년 동안의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성과에서도 알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사업선택권과 재정책임성을 연계하는 지속가능한 재정효율화 방안에 해당한다.

다.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심 거버넌스 개편 논의


현재 상수도 사업운영 주체의 다각화를 통한 효율성 확보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영기업 혹은 지방공기업을 통한 운

영 위주에서 국가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과 같은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운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분권적(local)’이고 ‘상업화(commercial)’로 진행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집권적(central)’이고 ‘공공화(public)’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장점으로는 재분배적인 요금정책과 일정 수준의 공공서비스 형평화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이다. 민영화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 대부분 단일요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요금부담이 크게 나타나는 ‘역진성’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수도 사업자의 공공성 확보 경향은 지금까지의 물공급 재정정책의 축으로 작용해 왔다. 이는 정책적 수용성 면에서도 공공서비스의 효율성보다는 형평화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용성·정해동(2010)은 중앙정부 차원의 상수도 일원화 주장과 공무원노조, 시민단체의 공공성 주장이 대치되고 있는 상수도 효율화 정책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상수도 정책 하위체제를 살펴볼 때, 행정구역별로 분절화된 상수도 운영에서 비롯하는 비효율과 전 세계적인 수자원산업의 재편, 우리 사회 특유의 이념적 대립 등이 외적상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공급 관련해서는 ‘물산업’ 적인 특성과 ‘공공성’의 특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에 어느 한쪽만을 사회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하수도의 경우 민간사업자 참여 비율이 높아져 사실상 민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훼손 논의가 거의 없는 반면, 상수도에서만 이러한 논의가 있는 점도 분석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적 유인이 있는 상수도 분야만이 물산업으로서의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하수도 분야의 공공성이 일정 부분 확보되어야 함에

“
지속가능한 물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공급비용 단가를 줄이는 규모의 경제 확보방안이 필요하기에 일정 비율까지는 광역화 및 위탁운영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 불구하고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하수도 분야의 국고부담 비중이 높은 이유와 관련하여 사업의 고비용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볼 수 있으나,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해야 할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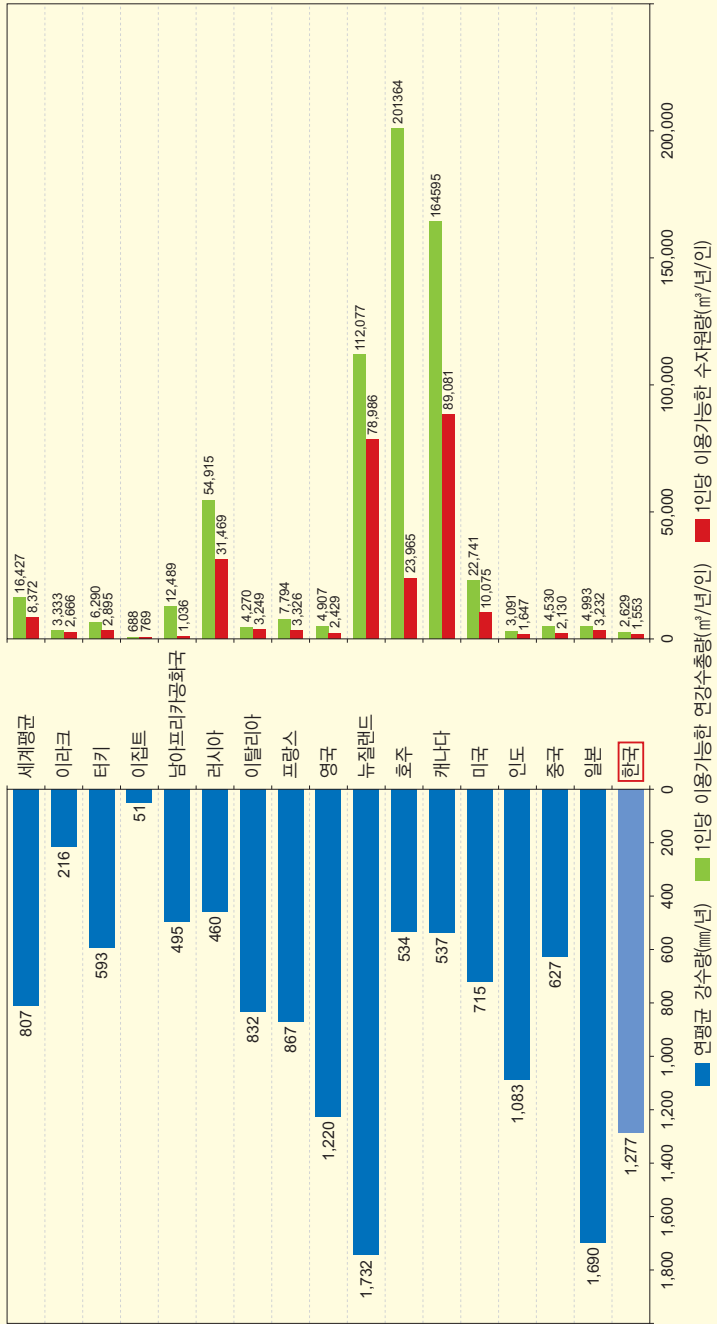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본 분석은 이러한 정치적, 제도적 환경하에서 ‘지속가능한 물공급 재원확보’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조적으로 물공급 재원은 지방재정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재원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단지 지방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게다가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상 고비용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재정부담의 증가도 예상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물공급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공급비용 단가를 줄이는 규모의 경제 확보방안이 필요하기에 일정 비율까지는 광역화 및 위탁운영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운영 면에서는 재정부담 주체인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재정책임성이 구체화되도록 하는 것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쟁을 통한 사업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등도 포함한 다양한 운영방식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일용·조수연,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규모의 경제 원인 분석」, 『산업조직연구』, 제20집 제4호, 2012.
- 김상문, 「주요 국가 수도사업 운영」, 한국수자원공사, K-Water 연구소, Working paper, 2013.
- 김창수, 「효율성과 가외성의 딜레마: 상수도정책의 불확실성과 모호성 그리고 도그마」, 『정부학 연구』, 제19권 제2호, 2013, pp. 241~272.
- 김현아·김지영, 『지방정부 재정활동의 건전성 강화 방안: 지방채와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16.
- 문현주·정아영,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11.
- 박용성·정해동, 「물산업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 소일섭, 『지방공기업 부채관련 재무건전성 평가와 재정위험 감축대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3.
- 오현택·김성태·박완규·박주영·박규홍, 「서울시 하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Water and Wastewater』, Vol.28, No.5, pp. 529~540, October 2014.
- 원구환, 「지방상수도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 『한국지방자치연구』, 12(3), pp. 91~110.
- 유지연, 「지방상수도공기업의 위탁운영이 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9권 제2호, 2014.8, pp. 101~130.
- 조임곤, 「지방공기업 요금결정의 합리화 방안」, Working paper, 2014.
- Audette-Chapdelaine, Marianne, “Local public enterprises: Water provision in Montreal,” the KIPF and the OECD, Working paper, 2013.
- Bae, Suho, “Explaining geographical differences in water prices: Do institutional factors really matter?,” *The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37, No.2, 2007, pp. 207~250.
- Hyun-A Kim, “The strategic financing structure of water LPEs in Korea,” *Capacity of sub-national governments for governing LPEs: The case of water supply*, December 5th, 2014,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the OECD.
- OECD, “A framework for financing water resource management,” 2012
- _____, “Meeting the challenge of financing water and sanitation: Tools and approaches,” OECD Studies on Water, 2011
- _____, “Strategic Financial Planning for Water Supply and Sanitation,” OECD, 2009a.
- _____, “Managing Water for All : Perspective on pricing and financing,” OECD, 2009b.
- _____, “Pricing Water Resources and Water and Sanitation Services,” OECD internal document, 2009c.
- _____, “Infrastructure to 2030: Telecom, Land, Transport, Water and Electricity,” OECD, 2006.
- Salvetti, Maria, “Local public enterprises: Eau du ponant,” the KIPF and the OECD, Working paper, 2013.

<부록>

[부도 1] 각국 연평균 강수량 및 1인당 이용가능한 연강수량 및 수자원량



자료: 국토해양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2011, p.7.



공공정책포럼

■ 제38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정부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격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개요

- 주 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 일 시 2014년 12월 11일(목),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B1)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10 인사말씀
송대희 좌장
 - 08:10~09:00 주제 발표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 09:00~09:30 자유토론
 - 09:30 폐회

* 본 원고는 2014년 12월 11일 서울 팔레스호텔 그랜드볼룸A(별관B1)에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개최한 제38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발표 및 토론요약입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 기관이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말씀

송대희/좌장

이번 공공정책포럼에서는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이석준 제1차관을 모셨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듣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 보았으면 한다.

주제발표 요약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이석준/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I. 서론

이번 포럼을 통해서 창조경제가 무엇인지와 함께 공공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다. 이를 알기 위해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해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익히 아시다시피 화석연료와 대량생산으로 대표되는 1·2차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을 두고 파괴적 혁신이 강조되는 3차 산업혁명이 촉발되고 있다. 상상하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과거의 성공 공식이 현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의 FTA나 TPP, 중국의 시장경제 편입 등의 시장 통합, 정보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확장

적 거시경제정책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 전략과 함께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OECD 국가 중 가장 먼저 극복하였지만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창조경제와 관련한 정책으로 유럽은 'Horizon2020'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실전 여부는 미지수이다. 영국은 우리보다 앞서서 Creative Britain이라는 창조산업에 대한 정의를 한 후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에서 유일하게 제조업이 살아있는 국가로 Industry 4.0으로 IT와 SW를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산업과 IT의 융합을 시도하는 양화융합, 신재생에너지나 차세대 IT 등 신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주창신'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4개 인터넷 기업의 시가총액은 미국의 4대 기업과 비슷하다. 이는 중국시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능력에 대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업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터넷 세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양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 인구가 적기 때문에 미국의 과학기술 생태계, 금융생태계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가적으로 허브 전략을 취하고 있다. 허브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혁신이 뉴욕 등 대도시로 전파된다. 대표적인 혁신적인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대표적인 전통적인 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실리콘밸리는 특히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뛰어나다.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기술이 사회와 경제를 바꿀 수 있다는 신념, 적용 가능하다는 믿음 등 뛰어난 상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실현시키고 있다. 미국의 오바

마 정부 역시 우리의 창조경제와 비슷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추격형으로는 세계 최고이다. 우리나라는 추격형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결국은 창조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Fast-Track 창조경제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주력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신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인재의 양성, 2) 규제개혁과 공공부문의 혁신, 3)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협업과 융합을 통해 산업혁신, 4)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II.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국가적 노력

1.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창의인재의 양성

현재와 같은 주입식, 이론적 입시위주 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Alibaba나 샤오미 등으로 창조경제로 급부상한 중국의 경우를 주시해 볼 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정적 직장 선호 문화, 스펙 중심의 취업문화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질문과 토론 중심의 교육, 체험형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창의적 인력 양성을 위해 STEAM, SW 융합교육, 자유학기제 확대를 통한 체험형 학습, 문제해결형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과 연계된 인재 양성을 위해 비즈쿨 프로그램, 특성화와 마이스터고 등의 기술창업 교육, 기업가정신의 교육과 창업동아리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편 공과대학 혁신을 통해 교육과 연구를 기업현장과 밀접하게 연계하도록 하기 위한 노

력을 하고 있기도 하다.

2. 규제개혁과 공공부문의 혁신

기술의 진보가 정부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Danal이라는 국내 전자결제 대행업체가 2000년 7월 세계 최초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실시하려 했지만 정부의 규제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Alibaba나 Applepay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정부의 일하는 방식 역시 바뀌어야 한다. 소극적 업무태도 탈피, 부처 간 협업 강화, 공공데이터의 공개 등으로 나아가야 한다.

3.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협업과 융합을 통해 산업혁신

우리의 R&D는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와 양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성과의 질적 수준과 기술사업화 실적은 미흡하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연구개발 전 주기적 혁신과 각 산업별 혁신이 필요하다. 농업은 기존 농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하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여 농촌과 농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제조업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의 ICT 인프라와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바탕으로 제조업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 산업은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서비스 산업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부문의 Fintech, 의료산업의 3D 프린팅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광산업에서는 의료관광과 크루즈산업,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교육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인터넷 기반 신산업으로 ICBM, 즉 IoT, Cloud, Big Data, Mobile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산업에서는 4G보다 1,000배 빠른 5G 이동통신서비

스를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4.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

우리나라의 벤처·창업 생태계도 점점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리고 생태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창조경제타운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이곳은 아이디어를 올리고 창업, 성장, 회수/재도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기술금융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노력 역시 계속되고 있다. 또 창조경제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 역시 진행되고 있다.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창업허브와 지역혁신 거점으로 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생태계 보강과 동반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Ⅲ.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역할로는 1) 창업 및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2)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3) 공공데이터 및 공공특허의 적극적 공개, 4) 시장의 공정경쟁을 지원하는 것이다.

1. 창업 및 벤처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먼저 대기업과 연계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혁신도시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17개 시·도에 지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대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에 따른 적극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공공기관의 시설과 장비의 공동활용, 제품 서비스 R&D 투자 강화 등이다. 이를 통해 지역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꾀하려 한다.

2.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과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등 정상화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기관의 비리 및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공공데이터 및 공공특허의 적극적 공개

정부에서는 정부 3.0을 통해 민간 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보건의료, 재해안전, 교육 등의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기관 소유 특허의 민간 이전 또는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활용 및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4. 시장의 공정경쟁 지원

그리고 정부 3.0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민간이 하는 일은 민간에 맡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용자 서비스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 및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기관 발주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의 개발기관 소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및 공공조달의 시장을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 질의응답

안기영/한국환경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학규/한국감정원 혁신경영본부장

발표를 듣고 나니 선진국의 창조경제 생태계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이나 제도가 필요하리라 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감한 노력이 있어야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부처 차원의 노력이 궁금하다.

창조경제에 있어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영평가이다. 이를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경영평가에 창조경제 부문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국정기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경제이고, 이를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영평가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석준/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아직까지 미래창조과학부를 포함한 정부 차원에서 창조경제에 대한 믿음이 크지 않다고 느꼈다. 그리고 창조경제와 혁신 생태계를 위해서는 전 부처의 예산과 업무 역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

이석준/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창조경제는 공공기관 운영 전반과 관련되는 내용이다. 직접적으로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창조경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한다.

지난 4개월 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플랫폼으로서의 혁신센터가 중요하다고 본다. 17개 시·도의 센터 간 경쟁이 이루어져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리고 R&D와 관련해서도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주제발표 내용 중 국내기업인 Danal이 앞서 개발한 전자상거래 기술이 상용화에 실패한 데에 반해 중국의 Alibaba는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직까지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되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면 아래의 노력들이 임계치를 지나면 눈에 보일 정도로 개화할 것이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창조경제 생태계는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석준/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우리나라는 금융 관련 업무를 금융기관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금융관련 법률을 쫓아가면서 발생한 일인데 이제는 미국의 금융관련 법률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결제업은 금융업과 일반산업의 중간적 성격의 산업인데 우리나라 금

용당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사회적 인프라로 여기는 등의 이유로 일반기업이 진출하는데 부정적이다. 또 기득권층이 있는 시장이나 업계의 경우 혁신이 더디게 일어난다. 중국의 경우는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김영호 / 한국관광공사 경영본부장

중국시장이 세계적인 흐름을 바꿔놓고 있다. 면세업의 경우 사양기에 접어들었는데 중국시장으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한국을 보고 따라잡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는 규제들로 인해 가로막혀 있는 현실이다.

마무리말씀

송대희 / 좌장

이번 발표를 통해 어느 강연보다도 창조경제의 핵심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가진 창조경제에 대한 역량이 아직까지 규제 등으로 인해 발휘되지 않고 있다. 또한 Fast Track이라는 표현을 통해 창조경제 추진 전략의 적절한 시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동감이 간다.

실리콘 밸리의 엔젤펀드가 13세 소년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큰 기업을 육성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다. 전향적인 생각을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도 창조경제를 꽃피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 **KIP**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동향 14-12

요약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2월 19일, '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에 최종 서명하였으며, 본 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유지 및 취약계층 개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3년 말로 종료되었던 감면연장법(tax extenders)은 대부분의 규정을 소급하여 2014년 1월부터 1년 추가 연장함
 - 감면연장법이란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한시적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을 1,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시켜 주는 법을 말함
 -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충당 관련 비과세 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위의 조세감면으로 인한 세수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세수확대 방안도 동시에 마련함
- 독일 정부는 12월 19일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소득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에서 평균세율을 산출한 후 공제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을 상원에서 의결함
 - 2013년에 이루어진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이로 인해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본 총리는 2014년 11월 17일 담화를 통해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계획을 연기하기로 공표함
 - 2012년 8월 22일 입법된 개정 소비세법에서는 소비세율을 2015년 10월 1일부터 10%로 인상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세율 인상을 2017년 4월로 연기함
- 뉴질랜드 과세관청은 2014년 11월 26일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납세협력사항을 공개함
 -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주요 사항으로 공격적 조세회피, 사기 및 명의도용, 소득누락 등 총 10가지를 열거하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응 방식을 언급함
 -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납세협력 주요 사항에서는 유효세율이 낮거나, 세무와 재무보고의 괴리가 큰 경우 등 과세관청이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 인도 연방내각은 2014년 12월 17일 소비세 도입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될 헌법개정안을 승인함
 - 간접세 과세체계의 단순화, 세원의 확대, 보다 충실한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다수의 간접세를 하나의 소비세로 통합하는 것임
 -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비세과세 권한 배분, 소비세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중국 과세관청은 2014년 12월 2일 조세혜택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에 대한 대응방법을 규정하는 영(令) 제32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운영지침 및 중대세무사건

의 심리를 규정하는 영(令) 제34호 중대세무안전 심리방법을 공개함

- 영(令) 제32호는 조세회피에 대한 특성과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과세관청이 조세회피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와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각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음
- 영(令) 제34호는 중대세무안전심리위원회의 구성, 서면심리 등의 심리방법, 심리결정기간 등 중대세무사건의 심리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담고 있음
- 중국 재무부와 과세관청은 2014년 11월 25일 제품별 소비세율을 조정하는 지침 93을, 11월 28일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지침 94를, 중국 국무원의 관세위원회는 2014년 12월 12일 2015년도 관세계획안 지침 32를 공개함
 - 지침 93에서는 일부 저탄소이륜차, 차량의 타이어, 차량용 가연가솔린, 주정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함
 - 지침 94에서는 환경보호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솔린 등에 대해 리터당 0.12위안, 디젤유 등에 대해서는 리터당 0.14위안의 소비세를 추가로 과세함
 - 지침 93에서는 첨단제조산업에 사용되는 장비 부품 등에 대해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하고, 냉장압축기 등에 대한 할당관세율 적용 배제 및 천연고무 등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품목별 관세율을 조정함

-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11월 20일자로 회원국들의 부유세(wealth tax)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행함
 - 주로 상속세, 부동산세 및 순부유세와 관련하여 각 국가들의 제도상 공통된 특징 및 현안들을 검토하였음

1. 미국 - '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

- 2014년 12월 19일, 오바마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H.R. 5771,' 증세 방지법(Tax Increase Prevention Act of 2014; TIPA)에 최종 서명함
 - 본 법안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유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증세 방지법(TIPA)'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음
 - 2013년 말로 종료되었던 감면연장법(tax extenders)의 대부분의 규정을 소급하여 2014년 초부터 1년간(2014년 말까지) 추가 연장함
 - 감면연장법(tax extenders)이란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각종 한시적 조세감면 규정의 일몰을 1,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시켜 주는 법을 말함
 - '삶의 질 제고법(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ABLE) Act of 2014)'하에서,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교육비 관련 비과세 저축계좌 개설을 허용함
 - 또한 감면 규정들의 일몰 연장과 취약계층에 대한 비과세 저축계좌 개설로 인한 세손수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수확대를 위한 방안도(revenue raisers) 동시에 마련함



• 그 밖에 국제조세 관련 규정의 정비 및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의무 강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증세 방지법(TIPA)’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감면연장법(tax extenders) 관련 내용

■ 이번 ‘증세 방지법(TIPA)’에서는 201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대부분의 감면 조항들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였으며, 그 주요 규정들은 다음과 같음

- 연구실험세액공제(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
 - 적격 연구활동에 따른 비용 지출에 대하여 일정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임
- 신시장세액공제(New markets tax credit)
 - 저소득 지역사회(Low income communities)에 대한 민간부문의 비-부동산 투자를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임
- 능동금융소득에 대한 ‘subpart F 소득’¹⁾ 제외(Exception under subpart F for active financing income)
 - 사업목적 금융활동으로부터의 소득을 ‘subpart F 소득’ 과세에서 제외하는 규정임
- CFC 도관 규정(CFCs Look-through treatment)
 - 과세 가능한 수동소득(passive income)²⁾을 과세 이연되는 능동소득(tax-deferred active income)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 신규로 취득하여 사용 중인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 첫 해에 소정의 추가적인 감가상각을 해주는 제도임

-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Renewable energy production tax credit)
- 적격 소규모기업 주식 양도차익 자본이득세 비과세(Exclusion of gain on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 소규모기업에 대한 안정된 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규정임
- 주(state) 또는 지방 일반판매세 공제(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es)
 - 세액공제 대신 비용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식품 재고 기증에 대한 기부공제액 인상(Enhanced charitable deduction for contributions of food inventory)
- 개인퇴직계좌의 자선단체로의 직접 인출에 대한 면세(Tax-free 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As) directly to charities)

■ 반면 다음과 같은 규정들은 201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종료되었으며, 추가 연장되지 않음

- 건강보험 비용 관련 세액공제(Credit for health insurance costs)
 - 개인의 적격 건강보험 관련 비용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규정임
- 2·3륜 전기차 세액공제(Credit for two-or three-

1) 미국의 CFC 세제는 외국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해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미국 주주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에 따라 미국 주주의 과세소득으로 합산되는 유보소득을 일반적으로 ‘subpart F 소득’이라 말하며, 그 범위는 거래적 접근방식(Transactional Approach)에 의해 결정됨
 2) 주로 배당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연금소득, 사용료소득 등을 말함

- wheeled plug-in electric vehicles)
- 에너지효율 증진장치에 대한 세액공제(Credit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 대체연료전지 자동차 세액공제(Alternative motor vehicle credit for qualified fuel cell motor vehicles)³⁾

Sec.529⁴⁾에 준하는 비과세 저축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IRC Sec.529는 등록금 등 교육비 충당을 위한 비과세저축 지원 규정임
- 본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시행함

나. '삶의 질 제고법(ABLE)' 규정 개정사항

- 이번 '증세 방지법(TIPA)'에서는 26세 이전에 중증장애(severely disabled)를 입게 된 개인에게 IRC

- 본 저축계좌는 매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한도까지 비과세로 불입할 수 있음
- 2014년 기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인당 매년 14,000달러임

〈표 1〉 감면연장법 관련 주요 내용 정리

구분	관련 규정
2014년 말까지 일몰 연장되는 감면규정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험세액공제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ax credit) 신시장세액공제 (New markets tax credit) 능동금융소득에 대한 'subpart F 소득' 제외(Exception under subpart F for active financing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FC 도관 규정(CFCs Look-through treatment)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Renewable energy production tax credit) 적격 소규모기업 주식 양도차익 자본이득세 비과세 (Exclusion of gain on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주 (state) 또는 지방 일반판매세 공제 (Deduction for state and local general sales taxes) 식품 재고 기증에 대한 기부공제액 인상 (Enhanced charitable deduction for contributions of food inventory) 개인퇴직계좌의 자선단체로의 직접 인출에 대한 면세 (Tax-free distributions from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 (IRAs) directly to charities) 특정 자산 등에 대한 15년간의 균등 비용보상(15-year straight-line cost recovery for certain qualified property and improvements) 내재이득에 대한 5년간에 걸친 수익인식(5-year, section 1374 built-in gains tax recognition period) 특정 부동산 자본이득 기부에 대한 특별규정 (Special rules for contributions of capital gain real property made for conservation purposes) 기부 관련 S법인 주식의 기준가 조정 (Basis adjustment to stock of S corporations making charitable contributions of property) 등
2013년 말로 영구 종료되는 감면규정들	건강보험 비용 관련 세액공제 (Credit for health insurance costs)
	2·3륜 전기차 세액공제 (Credit for two- or three-wheeled plug-in electric vehicles)
	에너지효율 증진장치에 대한 세액공제 (Credit for energy efficient appliances)
	대체연료전지 자동차 세액공제 (Alternative motor vehicle credit for qualified fuel cell motor vehicles)

3) 동 규정은 2014년 말로 영구 종료됨

4) 등록금 등 저축기금(Qualified Tuition Programs, QTP)



- 불입금은 주정부나 사립대학교에 의하여 운영되는 바, 개방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투자됨
- 불입금에 대한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은 없음

- 수증자(중증 장애인)를 위해 불입한 저축금과 그 이자 등 투자수익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수증자가 면세 상태에서 인출하여 '적격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적격 교육비용'에는 등록금과 이와 관련된 비용, 이외 숙식비용 등이 있음
 - 그러나 적격 교육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인출된 저축은 수증자의 총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며, 또한 1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
 - 다만, 개인의 사망으로 인출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

- 내륙수로 운송을 위한 상업용 연료 사용에 부과⁵⁾되 는 '내륙수로 운송 신탁기금 적립률(inland waterways trust fund financing rate)'을 1갤런당 20센트에서 29 센트로 인상함
 - 2015년 3월 31일 이후 사용되는 연료에 적용함
- 정액으로 부과되던 각종 신고서 미제출이나 정보보고 불성실 등 행정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civil penalties)에 대해 물가와 연동시키기로 함
 - 2014년 12월 31일 이후 세무신고분부터 적용함
- '의료서비스 공급 사업자(Medicare providers or

- suppliers)'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액에 대한 수 시부과(continuous levies)⁶⁾세율을 최대 15%에서 최 대 30%까지로 인상시킴
 - 2014년 12월 19일 이후 수입액분부터 적용함

라. 기타

- 개인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가 수령한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로부터의 실 제 배당에 대해서는 '미분배 소득(undistributed income)'에 대해 부과되는 20%의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함
 - 개인지주회사란 주주 1인 및 그 친족에 의해 소유되 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소득의 상당부분(50% 이상) 이 투자자산(investment assets)으로부터 나오는 회사를 의미함
 - 개인지주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미 분배 소득에 대하여는 20%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CFC로부터 받은 배당은 해 당 미분배 소득에서 제외함
 - 본 규정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 도부터 적용됨
- 국세청은 '조직을 갖춘 전문직 사업자'에게 고객 및 종 업원 관련 세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도 록 '전문직 사업자 조직(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s(PEOs))'이라는 인증(certification)을 받도록 함
 - '조직을 갖춘 전문직 사업자'란 종업원을 고용한 상 태로 법률, 회계, 의료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

5) IRC Sec. 4042(b)(2)(A)

6) 국세청은 세무상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 수시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음(IRC Sec. 6331(h))

는 사업자를 말하며, PEO는 자기책임하에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소득세 및 판매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인증 비용은 매년 1,000달러를 넘지 않도록 규제함
-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보석금 제출(posting a bond), 외부로부터인 재무상태 리뷰, 채무 공시 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함
-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2. 독일 -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 개정⁷⁾

- 독일 정부는 2014년 12월 19일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의 개정안을 상원에서 의결하여 통과시킴
- 기존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 방식은 국내와 국외소득을 모두 합친 후 계산된 산출세액을 국내와 국외소득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식이었음
 - 이때 산출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특별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출함
 - 법인세 납세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법인세의 총액에 국외소득 대비 총수입 사이의 비율을 구해서 법인세 총액에 곱한 결과로 구해지며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됨
 - 법인은 개인과 달리 인적공제 등이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임

〈표 2〉 독일의 개정 전 개인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계산방식의 문제점

계산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개인소득세 산출세액(a)×국외소득/총소득 ¹⁾ (b)
계산방식의 문제점	산출세액(a)을 구할 때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특별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서 계산하여 (a)를 구함 그러나 비율을 정하는 분모인 총소득(b)에서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특별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고 있음

주: 1) 총소득은 국내소득과 국외소득의 합계액임
자료: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62011CJ0168:EN:HTML>

- 그러나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기존 한도계산방식이 개인에 대한 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판결함
 - 2013년 2월 28일에 유럽사법재판소는 독일의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규정들이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 (TFEU))’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결함
 -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특별 지출, 비밀상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고 있음을 부당한 점으로 판시함
 - 유럽재판소가 언급한 지출과 비용은 생활 관련 비용 또는 개인과 가정 환경들에 관련된 지출과 비용들이며 편부모 공제, 노령자 공제, 특별비용, 예외적 비용 그리고 자녀 공제 등이 포함됨
-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판결 이후 법 개정 전까지 판결내용을 반영한 임시 지침을 발표하여 운영해 왔으며 금번에 임시 지침과 같이 법을 개정하였음⁸⁾

7) http://online.ibfd.org/kbase/#topic=doc&url=%252Fdata%252Ffns%252Fdocs%252Fhtml%252Ffns_2014-12-19_de_4.html&WT.z_nav=crosslinks&hash=tns_2014-09-03_de_2

8)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62011CJ0168:EN:HTML>



- 개정안은 개인 납세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는 평균 소득세율을 산출한 후 동 세율을 국외수입에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가 기존한도 이상으로 인상되게 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 계산식에서 사용되는 평균세율은 국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평균 소득세율임
(자료 수집 및 정리: 흥성열 회계사)

3. 일본 소비세 추가인상 연기

- 일본 총리는 2014년 11월 17일 담화를 통해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는 계획을 연기하기로 공표함⁹⁾
 - 2012년 8월 22일 입법된 개정 소비세법에서는 소비세율을 2015년 10월 1일부터 10%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2017년 4월로 연기함
 - 개정 소비세법은 두 단계의 소비세율 인상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014년 4월 1일부터 8%로의 인상이 이루어짐
 - 이러한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11월 16일 공개된 3분기 GDP 추정치를 고려할 때 경기회복세로 접어들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4. 뉴질랜드 2014/15 세무상 중점사항 공개

- 뉴질랜드 과세관청(Inland Revenue)은 2014년 11월 26일 납세자가 주의해야 할 납세협력사항(our

compliance focus)에 대해 공개함¹⁰⁾

- 납세협력사항은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주요 사항(our key focus areas), 납세조력자의 협력(helping your clients get it right), 모든 납세자에 대한 기초사항(basics for everyone), 사업에 대한 기초사항(basics for business)으로 구분하고 있음
- 납세조력자의 협력과 모든 납세자에 대한 기초사항은 일반적인 납세협력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문서는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사항에 대해 매우 유용한 지침이지만 이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세부적 내용이 충분하지 않음¹¹⁾

가.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주요 사항

- 과세관청이 주목하는 주요 사항은 공격적 조세회피, 사기 및 명의도용, 소득누락 등 총 10가지를 언급하고 있음
- 공격적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ATP)에 대해 과세관청이 주목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함
 - 잠재적 ATP 구조를 식별하기 위해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입수한 조세정보를 상호 비교 검증함
 - ATP가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면 이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세무조사를 수행함
 - 과세관청은 과거 몇 년간 조세회피에 대한 소송에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해 오고 있음
 - 과세관청은 과거 조세회피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

9) Prime Minister of Japan and His Cabinet, Press Conference by Prime Minister Abe, November 18, 2014(http://japan.kantei.go.jp/96_abe/statement/201411/1118kaiken.html).

10) Inland Revenue of New Zealand(<http://www.ird.govt.nz/taxagents/compliance/compliance-index.html>).

11) KPMG, "Inland Revenue's 2015 compliance focus," taxmail, 1 December 2014, p. 1.

한 수십 건의 사례를 공개함

- BEPS에 대한 국제사회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문가 집단 등에 교육과 지원을 제공함

■ 거짓 정보 또는 때로는 국가 간 거래 등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원을 차용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함

- 과세관청은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입수되는 정보를 매우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사회발전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사고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뉴질랜드 경찰 등과 함께 자산사기협력프로그램(Welfare Fraud Collaborative Action Programme)의 회원으로 이러한 기관에 대한 사기 등의 행위가 시도되는 경우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음

■ 소득누락 및 현행 과세체계에서 식별되지 않는 소득에 대응하는 방식을 기술하고 있음

- 과실로 인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직업이나 사업을 최초로 수행하는 납세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함
- 고의적인 조세포탈을 탐지하기 위한 과세체계와 기술을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정보교환을 수행함

■ 기부, 고액자산가, 신탁에서 발생하는 세무상의 쟁점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음

- 등록된 자선행위에 대한 면세와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를 남용하는 사례에 대응하여 이러한 행위의 적발을 위해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의 자선서비스팀(Charities Services team)과 공조

하고 있으며 납세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고액자산가 및 고소득자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세무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거래 또는 비경상적 거래, 해명되지 않는 손실, 비경상적인 수익과 비용의 분류, 세금납부금액과 자산금액과의 상관관계의 비합리성 등의 항목을 주목하고 있음
-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실질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비경상적인 조세혜택을 향유하는 신탁의 구조에 대해 주목하고 있음

■ 공공기관, 적시납세, 생명보험, 거주용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세무상의 쟁점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을 언급하고 있음

- 공공기관에서 지속적인 구조 및 조직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의 납세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 시스템 및 절차 검토 등을 수행하고 납세협력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밝혀내고 있음
- 적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납세자에 대한 의사소통 절차나 제공하는 정보의 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새로운 세법규정에 따라 생명보험에 대한 5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생명보험사들에게 지속적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과세관청은 거주용 부동산과 신규 개발에 따른 일회성 투기부동산의 거래에 주목하고 있음

나. 다국적 기업의 납세협력 주요 사항 중 적신호 사례

- 과세관청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납세협력 주요 사항은 전년도에 공개한 내용과 동일한데 여기에서는 과세관청이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판단하는 적신호(red flags)의 사례를 포함하고 있음



- 유효세율이 국내 법정세율인 28%보다 낮은 경우
- 세율이 낮거나 없는 지역에서 유의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재무보고와 세무보고 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
- 대규모 조세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 국가 간 거래 또는 실체에 대해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예, 혼성기업 또는 혼성금융상품)
- 다수의 구조화, 특수목적기업 또는 신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복잡한 약정에 관여하는 경우
- 비과세수익이 존재하거나 대규모 외국납부세액이 공제하는 경우
-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 합병, 인수 등의 지배권이 변경되는 경우
- 기간별로 손익 등의 변동성이 큰 경우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주정부에 동시에 부여하고 있음

- 신설된 279A조는 GST와 관련된 세율, 면제범위, 과세최저점, 불복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수행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의 GST위원회(Goods & Services Tax Council)를 설립하도록 규정함
- 중앙정부는 GST 과세에 따라 향후 5년간 지방정부의 세수손실을 보전함
- 이 법안을 통해 현행 다수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간접세가 GST로 통합되나 일부 재화에 대해서는 현행 간접세가 유지됨
- GST로 통합되는 간접세는 중앙정부의 국가소비세(Central Excise Duty), 추가소비세(Additional Excise Duties) 등과 지방정부의 부가가치세(VAT/Sales Tax) 등임

〈표 3〉 GST로 통합되는 간접세

중앙정부	지방정부
중앙소비세(Central Excise Duty), 가산소비세(Additional Excise Duties), 용역세(Service Tax), 가산관세(Additional Customs Duty), 특수가산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of Customs) 등	부가가치세(VAT/Sales Tax), 중앙판매세(Central Sales Tax), 오락세(Entertainment Tax), 지방통과세(Octroi and Entry Tax), 구매세(Purchase Tax), 사치세(Luxury Tax) 등

5. 인도 소비세 헌법개정안 제출

- 인도 연방내각(Union Cabinet)은 2014년 12월 17일 소비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도입을 위하여 의회에 제출될 헌법개정안을 승인함¹²⁾
 - 과세체계의 단순화, 세원의 확대, 보다 충실한 납세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다수의 간접세를 하나의 GST로 통합하는 것임
- 법안은 GST 과세권한의 배분, GST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신설된 246A조는 GST의 과세권한을 연방정부와

- 원유, 고속디젤연료, 천연가스, 항공유 등의 석유제품과 주류 등에 대해서는 향후 GST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공고가 있을 때까지 현행 간접세의 과세가 유지됨

12) Ministry of Finance(Government of India), The Union Finance Minister, Shri Arun Jaitley said that GST will benefit most of the States from day one especially the consumer States, Press Release, 19th December, 2014.

- GST 부과와 관련하여 세율, 과세최저한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¹³⁾
 - 해당위원회(Empowered Committee)의 하위 GST 위원회에서는 GST세율을 주정부 12.8%, 지방정부 13.9%로 총 26.7%로 제안하였으나 최종 확정되지 않음
 - GST 과세최저한에 대해 중앙정부는 연간 수입금액 2.5백만루피를 기준에 제시하였으나 지방정부는 1백만루피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GST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6. 중국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운영지침 등의 지침과 2015년 관세계획 공개

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운영지침 공개

- 중국 과세관청은 2014년 12월 2일 조세혜택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에 대한 대응방법을 규정하는 영(令) 제32호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에 대한 운영지침(一般反避稅管理辦法)을 공개함¹⁴⁾
 - 제1장 총칙(總則), 제2장 입안(立案), 제3장 조사(調查), 제4장 결안(結案), 제5장 분쟁처리(爭議處理), 제6장 부칙(附則)의 6개의 장과 하위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영(令)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조세회피에 대한 특성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조세회피(避稅) 특성에 대해 세제혜택을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의 경제적 실질이 형식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술
 -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이 먼저 적용되거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를 제시함
 - 국제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불법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이전가격, 원가공유약정, 피지배외국법인 및 과소자본세제 등과 관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특정 규정이 먼저 적용됨
- 과세관청이 조세회피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방법을 예시함
 -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구성
 - 조세목적상 거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을 부인하고 하나의 당사자로 간주
 - 관련 소득공제, 세제혜택 등의 조정 또는 관련 당사자간 재분배
 -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
- 세무조사와 관련된 절차와 세무조사에서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각 단계별로 규정하고 있음¹⁵⁾
 - 세무조사대상 선별은 관할 과세관청의 권한이지만 일반적 조세회피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지역과세관청 또는 중앙과세관청의 승인에 의해서 선정될 수 있음
 - 과세관청은 약정의 배경, 경제적 목적 등을 포함한

13) Ernst & Young, "India plans to introduce Constitution Amendment Bill for Goods and Services Tax," *Global Tax Alert*, 12 December 2014, pp. 1~2.

14) 国家税务总局, 「一般反避稅管理辦法(試行)」, 國家稅務總局令 第32號, 2014年12月2日.

15) Deloitte, "SAT issues regulations on the application of the GAAR," *China Tax Alert*, 19 December 2014, pp. 2~3.



- 포괄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세무 조사 예정 통보 후 60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납세자가 신청한 자료제출 연장요청을 과세관청이 수용하면 30일 내에서 연장이 가능함
 - 과세관청은 역외정보교환 또는 특정 약정에 자문을 수행한 자에게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과세관청은 중앙과세관청의 조사 승인일 이후 9개월 내에 일반적 조세회피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행하고 중앙과세관청 등에 사후 보고를 해야 함
-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납세자는 일반적 조세회피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불복을 수행할 수 있으며 조세 조약과 관련되는 경우 상호합의 절차 개시 신청을 할 수 있음

나. 중대세무사건 심리방법 지침 공개

- 중국 과세관청은 2014년 12월 2일 중대 세무사건의 심리를 규정하는 영(令) 제34호 중대세무안전심리방법(重大稅務案件審理辦法)을 공개함¹⁶⁾
 - 제1장 총칙(總則), 제2장 심리조직과 책무(審理機構和職責), 제3장 심리범위(審理範圍), 제4장 신청과 접수(提請和受理), 제5장 심리절차(審理程序), 제6장 집행과 감독(執行和監督), 제7장 부칙(附則)의 7개의 장과 하위 45개의 조문 및 부록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영(令)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됨

- 이 영(令)은 중대세무안전심리위원회(重大稅務案件審理委員會: “위원회”)의 구성, 심리의 방법 등 중대세무사건의 심리에 대한 절차적 규정을 담고 있음
 - 유의적인 행정재제에 해당하는 조세사건, 여타 수사기관에 이첩될 사건,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등을 중대세무사건으로 정의함
 - 공고에서는 지방단위에서 증언자와 세무전문가의 의견 청취, 증거조사, 사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포함한 사건조사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서면심리가 이루어지며 심리결정 기간은 30일이며 연장되는 경우 최대 45일까지 가능함
 - 또한 납세자는 자신을 방어할 기회가 주어지며 사건에 관계된 세무공무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
 - 단독이 아닌 위원회의 심리, 서면 및 대면 심리의 규정, 각 절차의 기한을 규정함으로써 기존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음¹⁷⁾

다. 2015년도 관세계획 공개

- 중국 국무원(the State of Council)의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는 2014년 12월 12일에 2015년도 관세계획인 지침 32를 공개함¹⁸⁾
 - 첨단제조산업에 사용되는 장비부품, 열 효율화 및 탄소저감장치 등의 환경친화장비 등에 대해 최혜국대우관세율(most-favoured nation duty rates)보다 낮은 할당관세율을 적용

16) 国家税务总局, 『重大稅務案件審理辦法』, 国家税务总局令 第34号, 2014年12月2日.

17) Ernst & Young, “China Tax & Investment Express,” China Tax Center, Issue No. 2014051, 24 Dec 2014, p. 3.

18) China (People’s Rep.) – Customs duties for 2015 (17 Dec. 2014), News IBFD.

- 할당관세율이 적용되던 냉장압축기, 차량라디오 등
에 대한 적용을 배제
- 천연고무 등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적용
- 자유무역협정과 우호관세협정의 실행
 - 방글라데시, 칠레, 코스타리카 등과의 협정 및 홍콩, 마카오와의 원산지특혜 기준에 따른 관세 면제 등
- 석탄, 원유 등의 부과되는 수출관세는 유지되며 시장 공급과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라. 소비세 적용에 관한 지침 공개

- 중국 재무부와 과세관청은 2014년 11월 25일 제품별 소비세율을 조정하는 지침 93¹⁹⁾을, 11월 28일 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지침 94²⁰⁾를 공개함
- 지침 93에서는 250ML 미만의 저탄소이륜차, 차량의 타이어, 차량용 가연가솔린, 주정에 대한 소비세를 폐지, 250ML 및 이를 초과하는 이륜차에 대한 소비세율을 각각 3%와 10% 적용함
- 지침 94에서는 환경보호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가솔린, 나프타, 미네랄용매, 윤활유에 대해 리터당 0.12위안, 디젤유, 항공유, 연료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0.14위안의 소비세를 추가로 과세하나 항공유는 현행과 같이 한시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 지침 93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지침 94는 2014년 11월 29일부터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 훈 회계사)

7. EU의 부유세 관련 검토 보고서 발표²¹⁾

-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2014년 11월 20일자로 각 국가들의 부유세(wealth tax) 관련 조세 제도에 대한 검토 보고서²²⁾를 발행함
- 동 보고서에서는 상속세(inheritance and gift taxes), 부동산세(real estate and land taxes) 및 순부유세(net wealth taxes)와 관련하여 멤버 국가들의 조세제도를 검토하고 그 주요 특징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음
- 상속세는 조사대상 28개 멤버 국가들 중 약 20개국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세원 범위는 넓고 세율은 높으나 가족에 대한 감면 혜택이 크고 전체 세수입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상속 또는 증여 대상물의 공정시장 가치를 바탕으로 과세되며, 납세자는 상속인 또는 수익자임
- 상속세율은 대부분 누진세율(progressive taxes)이나 증여세율은 단일세율(flat taxes)인 경우가 더 많음
- 가까운 친척이 납세자인 경우 제3자에 비해 세부담이 적으며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상속세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도 있음
- 대부분의 멤버 국가들이 부동산 소유 및 양도에 대해 부동산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각 세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소유에 대한 과세

19)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关于调整消费税政策的通知』, 财税 [2014] 93号, 2014年11月25日.

20)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关于提高成品油消费税的通知』, 财税 [2014] 94号, 2014年11月28日.

21) www.ibfd.org 및 http://ec.europa.eu 참조

22) "Cross-country Review of Taxes on Wealth and Transfers of Wealth," European Commission, October 2014.



- 일반적으로 관할 당국이 지방정부인 경우가 많으며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함
- 과세표준은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평균기준을 바탕으로 산정됨
- 대부분의 경우 중앙정부가 세율 범위를 정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일정부분 가감함
- 세율은 1~3% 정도로 낮은 편이며, 다수의 세액 감면이 적용 가능함

• 부동산 양도거래세

- 일반적으로 관할 당국은 중앙정부이며 부동산 양수인에 대해 과세함
-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액 등 공정시장가치를 기반으로 산정함
- 세율은 대략 1~8% 범위 내에서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다수의 세액감면이 적용 가능함

■ 순부유세는 대부분의 멤버 국가들이 채택하지 않은 관계로 공통적 특징을 찾기가 어려우며, 동 제도가 적용되더라도 사실상 소수 일부만 납세 의무를 지고 있음

- 순부유세는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surplus wealth)을 가진 납세자에 대해 과세되는데, 해당 기준점(tax-free threshold)이 높음
- 사업용 자산 등에 대해서는 과세대상 재산에서 제외함
- 세율은 누진세율로 0~2.5% 사이에서 결정됨

■ 동 보고서에서는 해당 조세제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음

- 상속세는 대부분 국가들이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음

- 부동산세가 거의 유일한 부유세 관련 세원이 되고 있으며 관련 제도도 간명한 편이나,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음
- 순부유세는 대부분의 멤버 국가들이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거 채택하였던 국가들도 높은 징세비용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대부분 폐지하였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정상회의 개최, 대규모 투자계획 및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논의(2014.12.18.)¹⁾
 - (투자 활성화) EU 정상들은 투자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고 구조개혁 및 재정건전화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 필요성을 언급
 - (EFSI) EU 정상들은 ‘전략적 투자를 위한 유럽기금 (European Fund for Strategic Investment: EFSI)’이 2015년 6월쯤 운영되어 2015년 중반에 첫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촉구
 - * 유럽집행위원회는 11월에 3,150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바 있음
 - (투자 환경 개선) 자본시장 통합, 규제 개선, 단일 시장과 투자 관련 EU 규정의 이행 및 강화 등 EU 정상들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조치를 요구
 - (우크라이나 관련) EU 정상들은 정치·경제적 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신정부 설립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우크라이나 경제 지원 방안을 논의함
- EU 집행위원회,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14* 발표(2014.12.17.)²⁾
 - (경제·재정 현황) EU 지역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취약하고 구조적 실업도 지속되고 있으나 EU 전반

의 재정 상황은 개선됨

- 2014년 EU 전체의 재정적자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GDP의 3%까지 낮아지고 GDP 대비 정부 채무비율은 2015년에 EU 88%, 유로존 95%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16년부터 감소할 전망
- 공공재정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인해 과다적자시정 절차(EDP) 대상 국가는 2013년말 16개에서 2014년 11개³⁾로 감소
- EU 국가들의 재정건전화 속도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며, 내년에도 EU 지역은 전반적으로 중립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전망
- EU 예산감독 프레임워크 개선
 - 정책 수단의 측정(eg. 효과적인 실행 방법론), 정책 변수의 정의(eg. 경기 조정된 수치), 재정 통계(ESA 2010) 변화 등 최근 EU 재정 프레임워크가 발전하고 있음
 - 독립적 재정기관의 증가도 EU 재정제도 변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임
 - 최근 EU 재정 거버넌스 개혁은 MTBF(Medium Term Budgetary Framework) 강화와 독립적 재정기관의 증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재정감독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임
- 계획된 예산 목표와 예산 집행의 차이
 - 지난 17년간 예산 집행 결과와 계획된 목표의 불일치가 되풀이되었으며 이는 주로 회원국들이 지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평균적으로 실제 지출이 목표 대비 GDP의 약 0.5%p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1) EU 이사회: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ec/146411.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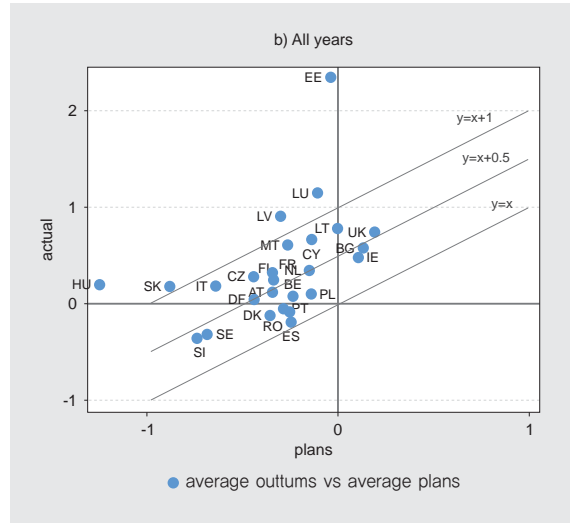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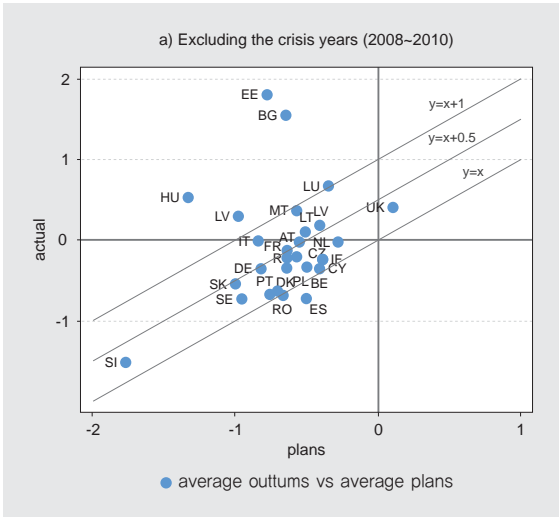
2) European Commission: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4/ee9_en.htm

3) 몰타, 아일랜드,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영국, 키프로스, 크로아티아, 그리스, 스페인



[그림 1] GDP 대비 지출 비율의 계획과 목표의 차이(1998~2014년)

(단위: % of GDP)



주: y=x 선에 가까울수록 실제 지출이 지출 목표에 근접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Report on public finances in EMU, 2014, Graph III.3.3

- 예산목표 달성 실패는 성장률을 매우 긍정적(평균 0.8%p)으로 전망하거나 재정건전화 계획을 과도하게 설정(전년도에 세운 재정적자 목표는 GDP 대비 평균 0.2%p 개선인 반면 실제로는 0.2%p 악화)하였기 때문임
- 확고하고 효과적인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는 계획 과 집행의 불일치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함
- 지출 기반 재정건전화의 효과성 평가
 - 지출 효율성 제고 및 예산 규율이 동반된 광범위한 지출 축소는 중기 지출 수준을 낮추고 더욱 건전한 재정에 기여함
 -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은 지출 통제가 사회보장 급여, 근로자 보수 등 경직적이고 지속적인 지출

-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더욱 성공적임
- 성공적인 지출 축소 이행에는 여러 해가 소요되므로 강력한 정치적 약속(commitment)이 중요함

(자료 수집 및 정리: 한혜란 연구원)



- 블랑샤르(Olivier Blanchard,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아레즈키(Rabah Arezki, IMF 조사국 원자재팀 팀장),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내용 발표 (2014.12.22.)⁴⁾
- 유가는 2014년 6월 이후 50% 가까이 하락하는 등

4) IMF 블로그, Seven Questions About The Recent Oil Price Slump: <http://blog-imfdirect.imf.org/2014/12/22/seven-questions-about-the-recent-oil-price-slump/>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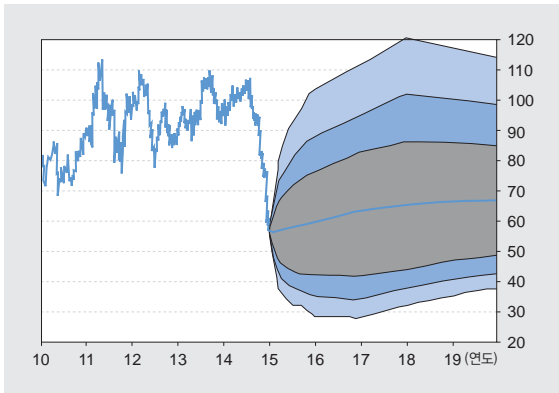
- 선물시장 추이를 볼 때 향후 유가가 반등할 것이나 몇 년간은 낮은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
- OPEC의 전략 변경, 지정학적 긴장 변화 등 공급 측면과 세계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에 따른 석유 수요 변화 등 수요 측면이 유가의 불확실성 요인

- 유가 하락에 따른 효과는 석유 수출입 패턴에 따라 상이하다고 분석
 - 석유 수입국은 가계소득 증가, 투입 비용 하락, 국제수지 개선 등 이익을 얻음
 - 석유 수출국은 세수 하락으로 인한 재정 적자, 국제수지 악화 등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

〈자료 수집 및 정리: 장준희 연구원〉

[그림 2] 유가(WTI 원유)

(단위: 배럴당 미국달러)



자료: Bloomberg, L.P.; IMF 블로그, Seven Questions About The Recent Oil Price Slump, Chart 6.

참고: 2019년 유가의 68% 신뢰구간은 48~85달러이며, 95% 신뢰구간은 38~115달러

- 유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와 비교해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를 2015년 0.7%p, 2016년 0.8%p 높일 것으로 전망
 - (미국) 2015년 0.2~0.5%p, 2016년 0.3~0.6%p 상승
 - (중국) GDP 대비 석유 소비 비중이 높아 2015년 0.4~0.7%p, 2016년 0.5~0.9%p로 크게 상승

프랑스

1. 예산 · 결산 등

- 프랑스 의회, FY2015 예산법안(PLF: projet de loi de finances pour 2015) 및 사회보장부문 예산법안(PLFSS: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2015) 최종 승인(2014.12.18, 2014.12.1.)⁵⁾
 - 위 예산법안은 연말 이내 관보(Journal officiel)에 공표 예정

2. 기타

- 통계청, 2014년 3분기 일반정부 채무 발표(2014.12.23.)⁶⁾
 -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2014년 3분기 말 일반정부 채무는 2조 315억유로로 2분기 말 대비 78억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는 2분기 대비 0.1%p 상승한 95.2%를 기록

5) 재무부, <http://www.economie.gouv.fr/chronique-budgetaire-de-la-loi-de-finances-pour-2015w>
<http://www.economie.gouv.fr/chronique-budgetaire-projet-loi-financement-securite-sociale-pour-2015>

6) 통계청, <http://www.insee.fr/en/themes/info-rapide.asp?id=40&date=20141223>



〈표 1〉 마스트리히트 조약 기준 일반정부 채무

(단위: 십억유로)

	2013 Q3	2013 Q4	2014 Q1	2014 Q2	2014 Q3
일반정부 채무	1,935.5	1,949.5	1,995.0	2,023.7	2,031.5
GDP 대비 %	91.8	92.2	94.0	95.1	95.2

자료: 프랑스 통계청, 2014.12.23.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진아 연구원〉

독일

1. 기타

- 제10차 안정화위원회⁷⁾ 회의 개최(2014.12.15.)⁸⁾
 - (구조적 적자 한도 준수) 독일의 거시경제 지표는 양호하고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재정상황 또한 건전한 상황
 - * 안정화위원회는 예산원칙에 관한 법률(Haushaltsgrundsatzgesetz) 제51조 제2항에 의한 구조적 적자 한도의 준수에 대해 모니터링
 - 2014년 사회보장기금은 GDP 대비 1%의 흑자를 기록하여 2년 연속 흑자. 2015년 일반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0.5%의 흑자가 예상
 - 이에 따라 안정화위원회는 '신재정협약 실행법'에 의해 만들어진 일반정부의 구조적 적자의 한도를 GDP의 0.5% 수준으로 2018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함
 - (연례 안정성 보고서 분석) 연방 및 주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아직 '회생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예산

비상상황' 이전의 '위험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

* 안정위원회는 연방 및 주의 재정을 평가하기 위해 구조적 재정수지, 차입 대비 구조적 지출 비율, 이자지출 대비 조세수입 비율, 부채 규모 등 지표를 조사해 임계치를 초과하면 '예산 비상상황'으로 정해 건전화 계획을 수립

- 기존에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베를린, 브레멘, 자를란트, 쉘리스비히-홀슈타인 주는 건전화계획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2016년까지 상황을 계속할 예정

- 위원회는 브레멘과 쉘리스비히-홀슈타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건전화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

- (동독지역 재건(Aufbau Ost) 관련 협의) 연방정부는 현재까지 '2차연대협약(Solidarpakts II)* Korb 2' 의무의 약 87%를 지원함

* '2차연대협약'은 통일 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구동독 지역에 총 1,565억유로의 재정을 지원하는 협약. 지원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소요되는 'Korb1'과 경제활성화에 투입되는 'Korb2'로 구성

- 통계청, 2014년 3분기 공공채무 현황 발표(2014.12.18.)⁹⁾

- 독일의 3분기 말 공공채무 총액은 2분기 대비 0.0% (5천 3백만유로) 증가한 2조 441억유로로 집계
 - 연방정부의 공공채무는 0.3% 감소하여 1조 2,825억유로, 주정부는 0.6% 증가하여 6,225억유로로 나타남
 - 공공채무 증가는 연방정부의 핵심 예산사업에 대

7) 안정화위원회는 연방 재무부 장관, 각 주 재무부 장관, 경제기술부 장관으로 구성되어, 재정건전화 방안으로 연방과 주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감시하는 역할 수행

8) 원문: http://www.stabilitaetsrat.de/DE/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Beschluesse-und-Beratungsunterlagen_node.html

자료: http://www.stabilitaetsrat.de/SharedDocs/Downloads/DE/Sitzungen/20141215_10.Sitzung/Beschl%C3%BCSse/20141215_Beschluss_Einhaltung_Defizitobergrenze.pdf?__blob=publicationFile

9) 원문: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4/12/PD14_460_713.html

자료: 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4/12/PD14_460_713pdf.pdf?__blob=publicationFile

한 현금지출 및 유가증권부채 증가에 기인

〈표 2〉 독일 2014년 3분기 공공채무 현황

(단위: 백만유로, %)

	공공부채		증감률
	3분기 말	2분기 말	
총액	2,044,177	2,044,124	0.0
연방정부	1,282,510	1,286,849	-0.3
주정부	622,510	618,555	0.6
지방자치단체 · 협회 ¹⁾	139,157	138,720	0.3

주: 1) 독일의 지방정부에는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정부의 두 수준이 있다. 각 주는 주헌법(Landesverfassung)을 가진다. 각 주(Land)는 이 주헌법에 기초하여 연방정부와 비슷한 체계로 주의회(Landestag)로 그 주인을 대표하며, 주의회에 의하여 주정부가 구성되고 후자는 주지사(Ministerpräsident)와 각부 장관들로 구성된다. 기초자치단체(Gemeinde)는 기초자치단체규칙(Gemeindeordnung)에 근거하여 성립하며 이에 기초하여 기초자치단체 행정부와 의회를 둔다. 2011년 현재 11,33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며 평균인구 7,217명, 평균 면적은 31.43km²이다. 기초자치단체는 필수 임무인 각종 등록, 오물 제거, 거리 청소 이외에도 사회적, 문화적 기능을 담당한다(참고: 『정책분석 11-06 독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p.12)

1. 잠정치로서 사회보험(Sozialversicherung) 부분은 제외하고 집계

자료: 연방통계청 보도자료, 2014.12.18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선미 연구원)

● 일본

1. 예산 · 결산 등

■ 재무성 재정제도분과회, ‘20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의’ 발표¹⁰⁾ (2014.12.25.)

• ‘2015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건의’에서는 일본 재정의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건전화의 기본방

침과 2015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언급

- (일본 재정 현황과 문제점) 사회보장 및 지역 행정 서비스를 누리는 현 세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재정악화의 요인
- (재정건전화의 기본방침)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사회보장 이외의 분야에서는 인구감소사회에서의 행정서비스 재검토 및 세출 효율화를 통해 세출 억제

• (2015년도 예산편성의 과제)

- (소비세율 인상 연기¹¹⁾ 및 재정건전화 목표) 소비세율 인상 연기로 인해 어려워진 2015년도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재정적자 반감목표 달성을 철저한 세출감소 및 세입확보를 통해 착실히 달성해야 하며, 소비세수 증가분을 활용하기로 했던 사회보장 충실화 정책 재검토는 불가피하므로 2015~2016년도에 우선순위 책정이 필요
- (경제대책과 2014년도 추경예산 편성) 경제대책 및 2014년도 추경예산 규모 및 각 사업의 내용에 대해 확실히 조사하고, 향후 인구감소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재검토 및 계획과 통합적으로 정리할 필요
- (마을 · 사람 · 일자리 창출) 기존 보조금의 통합 등을 통한 재원확보, 명확한 성과지표를 활용한 정책목표 설정, 정확한 효과검증 실시 필요
- (기금의 적정화) 매 회계연도 PDCA 사이클¹²⁾을 확립해 나갈 필요, 예산조치를 확실히 억제하고 불용액 국고반납에 노력

10) 재무성 재정제도분과회, 『平成27年度予算の編成等に関する建議』, 2014.12.25

11) 2014년 11월 18일 아베총리는 총리대신관방에서 소비세율 인상 연기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2015년 10월 소비세율 인상(10%)을 18개월(2017년 4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발표

12) Plan, Do, Check, Action의 4단계



- (내년 여름 재정건전화 계획을 위해) 내년 여름까지 2020년도의 국가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 흑자 전환 달성을 위한 신뢰를 촉구하는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명확히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2017년 4월에 소비세율을 확실히 인상해야 함

■ 내각부, '201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발표¹³⁾ (2014.12.27.)

- (세출의 중점화·효율화 및 재정의 신뢰 확보) 2015년도 예산에서는 재량적 경비 및 의무적 경비를 포함한 전체적인 세출 재검토, 낭비를 최대한 감축, 민간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구하는 정책 중점화를 도모
 - 민간 수요 및 이노베이션 유발효과가 높고 긴급성이 높은 것, 규제개혁과 통합하여 논의할 것을 중시하고 유연성 있는 예산을 편성, 디플레이션 탈출 및 경제재생과 2015년도 국가 및 지방의 GDP 대비 기초재정적자 반감목표의 착실한 달성을 위해 노력
 - 이를 위해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비사회보장경비를 2014년 대비 최대한 억제, 사회보장경비의 자연증가를 재검토하고 효율화·적정화를 도모하여 증가를 최소한 억제, 소비세율 10% 인상 시 예정된 정책을 소비세율 8%를 전제로 우선순위 책정
 - 또한 2015년도 예산에서 '당면한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¹⁴⁾을 바탕으로 국가의 일반회계를 최대한 개선, 신규국

- (주요 세출 분야의 노력) 국가의 일반회계 세출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사회보장, 사회자본정비, 지방재정, 행정의 철저한 효율화) 및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중점화·효율화를 진행

2. 기타

- 내각부, 2013년도 국민경제계산 발표¹⁵⁾ (2014.12.25.)
 - 2013년도 실질 GDP는 전년 대비 2.1% 증가하여 4년 연속 증가, 명목 GDP 또한 전년 대비 1.8% 증가하여 2년 연속 증가추세
 - 2013년도 일반정부의 기초재정수지(명목GDP 대비)는 중앙정부(Δ5.9%)와 사회보장기금(Δ1.2%)로 전년 대비 개선됨에 따라 Δ6.7%로 0.8%p 개선(2년 연속 개선)

13) 내각부, 「平成27年度予算編成の基本方針」, 2014.12.27

14) 내각부, 「当面の財政健全化に向けた取組等について-中期財政計画-」, 2013.8.8., 자세한 내용은 「2014년도 주요국 예산안」 일본편 참조

15) 내각부, 「平成25年度国民経済計算確報(フロー編)ポイント」, 2014.12.25

〈표 3〉 2013년도 국민경제계산

(단위: 전년 대비, %)

항목	2012년	2013년
국내총생산(실질)	1.0	2.1
국내수요	1.8	2.5
민간수요	1.9	2.3
공적수요	1.4	3.2
재화 · 서비스 순수출 ¹⁾	△0.8	△0.5
기초재정수지(명목GDP 대비)		
일반정부	△7.4	△6.7
중앙정부	△6.5	△5.9
지방정부	0.5	0.4
사회보장기금	△1.4	△1.2

주: 1) 실질성장률 대비 기여도

자료: 내각부, 「平成25年度国民経済計算確報(フロー編)ポイント」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은 연구원)

전년 동기에 비해 1.3% 증가

☞ 이자지출 및 전기 부문의 적자 보전을 위한 지출(5.4%증가)이 주요 증가요인

2. 기타

- 장관회의에서 고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계획(Extraordinary Plan) 승인¹⁸⁾ (2014.12.19.)
 - 일가족 부양책임이 있는 장기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
 - 지원 자격자는 매달 426유로를 6개월 동안 지원받는 대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으며, 일자리 제공 혹은 직업훈련 코스를 받아야 함
 -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40만명 이상의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 사업비용으로 10억~12억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자료 수집 및 정리: 강민채 연구원)

스페인

1. 예산 · 결산 등

- 총리실, 2014년 11월 말 중앙정부¹⁶⁾ 재정적자 발표¹⁷⁾ (2014.12.23.)
 - 2014년 11월 말 중앙정부 적자는 355억 6천만유로이고, 이는 GDP 대비 3.34%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10.3% 감소
 - 2014년 11월 비금융수입은 1,568억유로로 전년 동기에 비해 4.3% 증가
 - 이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3.4% 증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3.2% 증가에 기인
 - 비금융지출은 2014년 11월 1,923억 7천만유로로

16) 중앙정부 기관지출 제외

17) 자료: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lang/en/gobierno/news/Paginas/2014/20141223-stateresources.aspx>

18) 자료: 총리실 <http://www.lamoncloa.gob.es/lang/en/gobierno/councilministers/Paginas/2014/20141219-councilministers.aspx>

미국

1. 예산 · 결산 등

- FY2015 예산안 최종 합의
 - FY2015 예산안은 잠정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과 일괄세출법안(Omnibus)을 합쳐 크롬니버스(CRomnibus)로 불림
 -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에 대해 2015년 9월까지 통합예산을 배정하고, 이민개혁과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17일까지의 잠정예산만 집행
 - 1조 1천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하원에서 찬성 219



표, 반대 206표로 가결(2014.12.12.), 상원에서 찬성 56표 반대 40표로 가결(2014.12.13.)시키며 통과 후 오바마 대통령 서명(2014.12.16.)으로 발효

- 앞서, 미국 의회는 9월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지만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12월 11일까지 연방 정부를 운영함

- 불법 체류자 400여 만명을 구제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폐쇄(shutdown) 사태를 피하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정인 연구원〉

| 정책 흐름 |



-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 -

* 본 자료는 2015년 1월 19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에서 발표한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 집중」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① '사후 관리'에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 운영체계 전환

- 신고 전에 국세정보유 과세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해명 불편·가산세 부담 대폭 축소
- 인터넷 국세서비스 하나로 통합(My-NTS 제공), 전자신고 확대, 간편신고(Pre-filled) 서비스 제공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②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 최우선 존중

- 납세자 해명절차 및 현장확인 전산관리 등 투명하게 개선
- 외부 법률전문가를 보강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한층 강화, 과세 책임성 제고, 현장 중심·납세자 중심 현장소통 내실화

③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 올해부터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
- 총조사 건수는 납세자 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으로 운영

④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인프라 고도화

- 실물거래 인프라 활용체계 고도화, 세원포착률 미흡분야 지속적 제도개선,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해외금융정보분석시스템 구축

1. 회의 개요

- 국세청은 1월 19일(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국 세무관서장, 본·지방청 관리자 등 297명이 참석한 가운데,
 -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15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일체감 있는 업무추진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음
- 최경환 부총리는 치사에서,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국민들이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올해 경제체질을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해야 하고, 그 구조개혁의 선봉에 국세청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 재정수입 확보, 세정 차원에서 경제혁신 지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중단 없는 세정개혁을 당부함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면서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역점 추진하는 한편,
 - 자영업자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집행해 줄 것을 당부함
 - 특히,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하되, '성실납세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납세자가 편리하고, 기분 좋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돕고,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도 하나하나 찾아 고쳐나갈 것을 주문함

2.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

- 이날 발표한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 최근 조직개편과 정기 인사의 조기 마무리,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토대로
 - '활기찬 경제, 성실한 납세, 튼튼한 재정'의 선순환 고리를 견고히 하기 위한 5대 중점과제와 세부 실천계획을 담고 있음

1 사전적 성실납세 지원에 세정역량 집중

- 앞으로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한 일선 관서의 개인납세과를 통해,
 -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 체계로 세정운영의 패러다임을 확고히 전환할 방침임

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

- 기존처럼 납세자의 자진 신고납부 내용을 사후에

검증하여 잘못된 신고 내용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 전산분석 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 등 납세자가 성실신고하는 데 꼭 필요한 과세정보를 미리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신고 전 성실신고지원 자료 (예시)

신고 분야	제공 항목
부가가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지출 연계분석을 통한 불성실신고 혐의자료 •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 외부기관 수집 과세자료, 현장정보수집 자료 등 총 26종
종합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금액보다 과다계상한 혐의 • 위장가공자료 수취 혐의, 조사 후 소득률 하락자 • 국민연금 소득공제자료 등 총 35종
법인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신용카드 부당사용금액, 지출증빙 미수취 자료 • 상품권 구입 금액, R&D 세액공제 부당공제 금액 • 특수관계자 대여금 변칙처리 금액 등 총 10종
양도·상속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산과세대상 양도물건 사전 안내 • 허위계약서 작성,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신고유의사항 •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 등

- 이를 통해 자진납부세수 증대는 물론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에 따른 해명 불편, 사후 세금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대폭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연간 사후검증에 따른 가산세 부담액 : 약 1,400억원

나. 최적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앞으로 납세자가 인터넷 국세서비스를 통해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세무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 기존 8*개 국세서비스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계정인 MY-NTS를 제공할 계획

회임

* (기존 8개 사이트) 홈택스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 국세법령정보, 공익법인공시, 고객만족센터

- 아울러, 정기신고만 가능했던 전자 신고를 수정 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신고 부속서류까지 확대 시행하고,

- 세무에 취약한 영세납세자 및 중소기업을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 service)를 확대함으로써,

- 세무관서 방문 등 세금신고와 관련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함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까지 미리 채워주고, 납세자의 확인을 통해 신고 종료(약 164만명)

2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 최우선 존중

가.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지금까지 사후검증이나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한 이력과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 자료를 수동으로 관리함에 따라,
 - 납세자에게 과다하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거나 중복으로 사후검증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사례)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이미 제출한 서류를 반복 요구, 자료처리 시 요구한 자료를 세무조사나 감사 시 중복 요구 등
- 앞으로 해명절차 전과정을 전산 관리하여 납세자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철저히 차단하겠음

납세자 해명절차 관리체계 변화

	기존	개선
해명자료 요구·이력 관리	수동관리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납세자 제출 해명자료 관리	수동관리 또는 파기	전자서고에 관리
과세자료 처리 시 해명안내	필요 시 선택 실시	고지예상 의무화

- 아울러, '현장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와 같이 착수에서 처리결과까지 전산관리하여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컨트롤타워'를 운영하여 내부업무 효율화는 물론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음

나. 권리보호 및 과세 책임 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하는 등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질적 「준법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 * 변호사 자격소지자 3명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으로 일선관서 배치('15. 1월)
 -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제도' 강화, 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 의견청취' 대상 확대 등 권리보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여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 과세기준자문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금년부터 법률전문가(8명)를 보강한 조사심의팀*을 통해 과세 전 단계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 과세품질평가 결과를 인사에 확대 반영하고 과세과정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높여 과세에 대한 책임을 한층 강화할 것임

* 조사심의팀 실적('14. 3월~11월) : 410건 심의하여 112건에

- 또한,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접수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하여
 - 불복청구와 관련한 납세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의 고충·애로 신속히 해결

- 지난해 10월부터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로 정하고 전국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의 불편,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처리하고 있음
 - * ['14년 실적] 각종 세정간담회 190회, 7,839명의 납세자 맞춤형 상담 실시 등 세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지원하였음
- 올해도 각종 신고창구와의 연계운영,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을 통해 '현장중심·납세자중심의 공식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 납세자의 고충·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가.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시행

- 올해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장려금 지급을 확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 * 최대금액(만원) : (단독)70 (홀벌이)170 (맞벌이)210
 - ** 자녀인당 50
 - *** '14년 근로장려금 지급액(7,745억원)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수급요건은 201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4.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신청기간: '15년 5월 1일~6월 1일)
 -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전자신청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 * 기준금액(만원): (단독)1,300 (홀벌이)2,100 (맞벌이)2,500 (자녀장려금)4,000
- 반면, 국가기관 간 협업을 확보한 다양한 정보와 국세청 소득과약 기반을 활용한 통합 전산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

- 올해에도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임
 - 조사규모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비율을 유지하되, 연간 총조사건수는 납세자수 증가에도 전년 수준(18,000건 이하)으로 운영할 것임.
 - * 총 조사건수: ('10)18,156 → ('11)18,110 → ('12)18,000 → ('13)18,079
 -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중소기업의 조사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 중소기업 조사비율(%): ('10)0.83 → ('11)0.81 → ('12)0.73 → ('13)0.75
 - 대기업 조사비율(%): ('10)15.69 → ('11)18.09 → ('12)15.87 → ('13)17.81
- 아울러, 지난해 9월 29일 발표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등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사후검증 제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조치를 차질 없

이 추진하겠음

4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과세인프라 고도화

- 정상적인 소비와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보강할 계획임
- 그동안 꾸준히 구축해 온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활용체계를 고도화하여 탈세적발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음.

'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 내용

	시행일	바뀌는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15.5.1	자동차 수리, 장례관련 서비스업 등 발급의무 추가
전자계산서 발급	'15.7.1	법인 및 3억원 이상 면세겸업 개인까지 발급 의무화
부가서 매입자 납부제도	'15.7.1	금 스크랩까지 시행
국의 앱(App) 과세	'15.7.1	국외 공급 전자용역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시행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통합분석하는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탈루혐의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 해외금융정보 교환분석시스템 구축과 한·미 금융정보교환(FATCA)의 차질 없는 집행 등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금융정보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3.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

- 이날 회의에서 초청 강연을 한 윤석철 서울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사회의 문제들을 자연철학 측면에서 분석하고,
 -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헌납하는 것처럼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세금'의 소중함과,
 - 현재의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자유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국세청 관리자들의 리더십에 대해 역설함
- 이날 참석한 국세청 관리자들은,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면서 절제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리자가 더욱 솔선수범하고 청렴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 아울러, 조직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세정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각오로,
 - 본·지방청·세무서 간 원활히 소통하며 올해 세수관리와 미래를 대비한 세정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I.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

◆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와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에 매진하여 세입예산을 최대한 확보

1 지난해 주요 성과

- ① 국가재정수입 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
 - (세수확보에 총력)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 성실신

고 유도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입결손 최소화

* '14.10월 현재 세수실적 : 170.1조원

2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 적극 뒷받침

- **(세정지원 강화)** 중소기업인들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 등 능동적 지원 실시('14. 9월, 130만명의 납세자 대상)
- **(납세불편 개선)** 국민의 시각에서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발굴, 납세협력비용 감축 사업과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
*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3,193억원 감축('14. 10월)
- **(서민생활 지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및 회생노력 사업자 적극 지원, 근로장려금(ETTC) 지급 확대(85만명, 7,745억원)

3 비정상적 납세관행의 정상화 역점 추진

- **(탈세 엄정 대응)** FIU정보·탈세제보 등을 활용하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 강력 대처
- **(공공기관 정상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지원을 위해 각종 세무문제에 대한 사전 컨설팅 제공(66개 기관, 73건 상담·지원)

4 납세자가 세정의 주인이 되는 선진 납세풍토 정착

- **(권익보호 기반 확충)**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14.1월), 국선세무대리인제도 도입('14.3월), 납세자 의견청취제도 본격 시행*('14.10월)
* (당초) 조사기간 연장 시 → (확대) '조사범위 확대 시'까지 포함
- **(책임 있는 과세)** 조사국 내 조사심의팀 설치('14. 3월), 부실과세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 적법과세 노력 강화
- **(현장소통 강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

('14.10월),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납세어로 해소

5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정착

- **(청렴문화 조성)** 고위관리자 주도로 외부에 설명되지 않는 만남 정리, 기동감찰반을 통한 서장이상 간부 감찰 강화
- **(활기찬 조직)** 능력과 평판에 의한 탕평인사 실시, 청장의 권한과 책임 최대한 위임, 효율적 세정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

2 시사점

- **(세수확보 대책 시급)**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부족 문제 장기화 우려
☞ 저성장 세입환경에서는 자발적 성실납세와 세원간 차별 해소 등 공평성 문제의 시정을 통한 세수 증진 노력 요구
- **(중단 없는 세정혁신)** 세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요구 수준과 국세행정 현주소와의 갭(gap)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화 절실
☞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공평·준법·청렴의 세정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 필요

II. 2015년 세정여건 진단

1 경제상황 및 세입여건

◆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세수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탈세와 불복의 양상은 더욱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이중고 상황

■ 대내외 경제상황

- **(세계 경제)** 유로존 · 일본의 회복세 미약,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미국의 성장세에 힘입어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전망(IMF, '14. 10월): ('14년) 3.3% → ('15년) 3.8%

- **(국내 경제)**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경기회복 모멘텀 확산이 쉽지 않는 상황*

* (리스크 요인) 가계부채 부담, 주력 제조업 경쟁력 저하,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 세입여건 진단

- **(세수결손 지속)** 세수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제 회복세도 더디게 진행되어 향후에도 세입예산 조달에 어려움 예상

– 납세의식에 의존한 세입예산 조달은 한계가 있어 세정의 정보화 · 과학화를 토대로 한 성실납세 유도가 관건으로 부상

* 국세 세입예산 대비 실적

: ('12년) Δ2.8조 → ('13년) Δ8.5조

- **(세원의 형태 변화)** 지속적인 탈세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영역이 글로벌화 되면서 융 · 복합 · 지능형 탈세 증가

– 특히, 금융 · 국제거래, 합병 등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불복이 발생하고, 세무 · 법무법인의 대형화로 불복건수도 꾸준히 증가

* 행정소송제기: ('09년) 1,258건 1조 1,098억원 → ('14년) 1,957건 5조 5,684억원

2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혁신역량이 요구되는 상황

◆ 개청 50년 준비, 자영업자 EITC · 자녀장려세제 등 새로운 세제 도입, 차세대 시스템 개통 등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자발적 혁신이 절실

■ 개청 50년을 준비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 **(비약적 발전)** '66년 3월 국세청 개청 이래 경제규모의 성장 등에 따른 국세행정의 역할과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

– ‘경제성장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에서 ‘국가재정수요 확보, 재정정책 일조, 사회투명성 기여’라는 확장된 역할 부여

그간의 국세청 변천

	1966년	2014년	
GDP 규모	1.2조원	1,428.3조원	(1,190배)
세수 규모	700조원	190.2조원	(2,717배)
조직 현황	4국/4청/77세무서	12국/6청/115세무서	
국세 공무원	5,500명	19,155명	(3.5배)

* 2014년 세수규모는 2013년 세수실적

☞ 그간의 비약적 발전과 위기극복 사례 등 견고한 세정경험을 토대로 급속한 환경변화에 유효한 세정혁신 필요

■ 새로운 복지세제 도입에 따른 세정의 역할 증대

- **(복지세정확대)** 자영업자 EITC 전면 시행, 자녀장려세제(CTC)도입 등 복지국가를 뒷받침하는 세정의 역할 증대

* '15년 장려금 지급액이 '14년 7,745억원의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 업무 확대에 상응하는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않

은 상황에서 성공적 집행을 위한 조직운영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 필요

-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추진
 - **(세정기반 강화)** 세정운영 방향과 확대되는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체계 재설계

조직개편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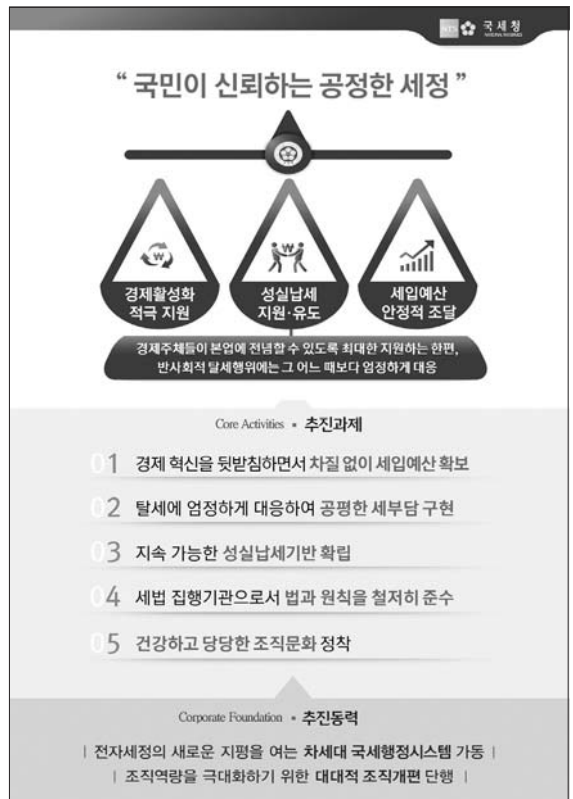
- 본·지방청 슬림화를 통한 현장인력 확대, 세무서 부가·소득세과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부가·소득·EITC 업무 통합 수행)
- 지방청 세원분석국을 '성실납세지원국'으로 개편하여 성실신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송무조직을 대대적으로 혁신
- 기능의 효율화 위해 각종 위원회 통·폐합** 추진
 - ** 기존 세무조사감독·지하경제양성화자문·규제개혁위원회를 '국세행정개혁위원회'로 통합('14. 11월)

☞ 개편된 조직체계를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조직개편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치밀한 운영·관리 필요

-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본격 가동
 - **(기존 인프라의 한계)** '97년 구축한 국세통합시스템(TIS)을 비롯한 각종 전자세정 시스템은 노후화와 유연성 부족으로 환경 변화와 세정수요 대응에 한계 노정
 - **(전자세정의 새로운 지평 구축)** 그간의 세정 노하우와 발전된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시킨 차세대 시스템 개통('15.2월)으로 일하는 방식과 세정

서비스 품질의 획기적 변혁 기대
 ☞ 새로운 세정 기반 시스템에 신속히 적응하여 납세자 만족도, 탈세대응 역량, 세정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변화관리 필요

Ⅲ. 2015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IV. 중점 추진과제

1 경제혁신을 뒷받침하면서 차질없이 세입예산 확보

◆ '사후적 성실신고 검증'에서 '사전적 성실신고 지원'으로 세정패러다임을 확고히 전환하여 국가 재정수요를 원만하게 조달

- 자납세수 확보에 역점을 두고 치밀하게 세수관리
 - (세수관리 방향) 국민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면서 자진납부세수 극대화를 위한 성실신고 유도·지원에 주력
 - 조직 개편과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 등 보강된 세정역량을 기반으로 금년도 세입예산(210.1조원) 달성에 최선을
 - (상시 세수관리) 본청·지방청·세무서별 상시 세수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세수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
- 성실신고 지원·유도에 세정역량 집중
 - (성실납세 지원) 분석기능이 강화된 차세대 시스템, 개편된 성실신고 지원 조직을 통해 신고 전 안내 대폭 강화
 - 과세인프라 분석자료*, 외부기관 수집자료, 조사사례 등 성실신고와 직결되는 통합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
 - * (예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적격증빙 분석, 표준 재무제표 전산분석 자료 등
 - (사전안내와 사후검증 연계) 사전 신고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 혐의자는 신속하게 사후검증
 -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파급력 있는 분야 위

주로 엄선하여 실시

-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
 - (현장의 숨은 세원 발굴) 명의위장, 고액 상가·주택 임대업 등 고질적인 과세인프라 사각지대 양성화에 현장역량 집중
 - 일선 부가·소득분야 통합, 국세지리정보시스템* 등 발전된 기반을 토대로 현장밀착형 세원관리 강화
 - * 전자지도 위에 세원분포, 과세정보 등을 시각적·입체적으로 표시
 - (체납정리 강화) 효과적 체납정리 인프라* 확충과 체납정리 체계 개선으로 현금정리실적 제고
 -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과 소제기·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하여 체납처분 면탈 행위 엄단
 - * FIU정보의 체납정리 활용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근저당권·공탁금 자료 등 체납자 재산 D/B 확대 구축 등
-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납세자 친화적 세정환경 조성
 - (세무부담 최소화) 세무조사 등이 투자·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본연의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운영*
 - 다만, 성실신고 궤도를 이탈하는 고질적 탈세는 단호하게 대응
 - * 금년 말까지 경기침체 애로 업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및 사후검증 제외, 중소기업세무조사 시 간편조사 확대 운영 등
 - (납세불편 해소)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개선·보완하여 현장의 납세애로 해결 및 공식적 소통채널로 활용
 - (기업애로 개선)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환원, 중소기업 가업승계 등 만성적 기업애로를 지속 발굴

하여 전향적으로 개선

2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공평한 세부담 구현

◆ 조사관리·소송대응 체계를 혁신하여 고질적·지능적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

-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편하여 탈세 대응역량 강화
 - (추진체계 정비) 임시조직 성격의 지하경제 양성화 총괄기획T/F를 정규 조직화하여 국정과제 추진의 항구성 담보
 - (조사관리체계 확립) 정확하고 치밀한 사전 분석 시스템 구축과 현장중심·관리자 주도의 조사집행 체계 정립
 - (일선 조사품질 개선) 세무서 조사과에 조사경력 직원을 보강하고 분석기능을 제고하여 일선 조사 기능 활성화
 - (범칙처분 관리 강화) 세법집행 방해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조세포탈에 대한 엄정한 범칙처분으로 조사의 실효성 제고
- 소송대응체계 혁신으로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
 - (조직 확대 개편) 서울청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개편하고, 국장 직위 외부 개방 및 민간 조세소송 전문가 채용 추진
 - (운영방식 혁신) 사무관 중심의 ‘팀제’ 도입, 조사·송무 간 연계 강화, 소송수행 전과정 평가* 등 관리체계 강화
 - * ‘평가팀’을 신설하여 소송수행 과정·결과에 대한 평가 및 엄정한 신상필벌 실시
 - (중요소송 대응 강화) 론스타 국제중재(ISD) 등 파급력이 큰 과세처분은 치밀한 논리개발과 대내

외 협력 등 대응 강화

- 반사회적 지하경제 영역에 지속적 대응 강화
 - (역외탈세) 정보역량 집중 배양,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 활성화, 해외금융정보 과세인프라*등을 토대로 끝까지 추적·과세
 - * 한미 FATCA 협정에 따라 미국 IRS와 금융정보 교환 실시 (’15. 9월 중)
 - (대기업·대재산가) 비자금조성,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는 분석단계부터 FIU정보를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
 - * 정보의 질 제고, 분석대상 확대, 3대 차명재산(주식·부동산·계좌) 관리강화
 - (고소득자영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민생침해 사범 등은 연중 상시 분석·조사체계 가동
- 반면, 경제적 취약계층은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
 -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인력 재배치, 집행체계 효율화로 전면 시행되는 자영업자 EITC와 CTC(자녀장려세제) 차질 없이 집행
 - 다만, 부적격 수급이 없도록 소득과 재산·소비 관련 자료(금융, 신용카드소비, 외환수취 등)를 연계한 심사 강화
 -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두루누리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복지부 등과의 일용근로소득자료 공유도 지속 확대
 - (학자금상환제도 안정적 정착) 고지제 전환, 원천공제 선납 등 변경된 상환절차에 대한 사전 안내로 납부편의 제공
 - 장기미상환자, 체납자는 자율상환을 유도하여 ICL 상환을 제고
 - (영세납세자 지원 확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활에 공헌하는 사회적 경제기업*도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세무지원 확대
 - *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3 지속 가능한 성실납세기반 확충

◆ 과세인프라 고도화, 편안한 성실납세 환경 조성,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등 미래 재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견고한 토대 마련

- 과세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세원양성화 수준 제고
 - (인프라 활용도 제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실물거래 인프라의 이용·변화 실태를 적시 분석하여 탈세적발 가능성 제고
 -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FOCAS)을 구축하여 분석기능을 강화하고, FIU정보 활용범위 확대
 - (인프라 보강) 「미신고 역외소득 자진신고제」를 시행(15년)하여 역외세원의 자진 양성화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
 - 아울러, 현금거래가 많고 상대적으로 세원포착률이 미흡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15년부터 시행되는 제도개선 내용

	시행일	바뀌는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	'15.5.1	자동차 수리, 정례관련 서비스업 등 발급의무 추가
전자계산서 발급	'15.7.1	법인 및 3억원 이상 면세기업 개인까지 발급 의무화
부가서 매입자 납부제도	'15.7.1	금 스크랩까지 시행
국외 앱(App) 과세	'15.7.1	국외 공급 전자용역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 시행

- 성실납세에 불편이 없도록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 (납세자 포털) 8개 국세 인터넷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나의 세무 관련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보여주는 MY-NTS 제공
 - (전자신고 확대)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는 물론 수동 제출하던 신고부속 서류까지 전자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

-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최적의 성실신고 인프라 구축
 - (신고 편의) 세무에 취약한 납세자를 위해 세금신고서를 미리 채워주는 간편신고(Pre-filled)서비스* 확대
 -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세 신고서에 산출세액까지 미리 채워주기 → 납세자의 확인을 통해 신고 종료
 - (맞춤형 지원)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신청대상,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중소기업 성실납세지원제도로 전환
 -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 운영, 세무조사 영문 가이드북 제공 등 차별 없는 지원 실시
- 중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 방안 마련
 - (세정 대응역량 강화) 경제여건 변동, 국가 재정수요 증가 등 향후 직면하게 될 도전요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전략 마련
 -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협력 유도,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차별화된 세입전략 등 중장기 세입기반 확충 과제 발굴

증장기 추진과제 (예시)

- ① **[Tax Gap 측정]** 조세 관련 지하경제 규모를 측정하여 납세순응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세정운영 방향 설정
- ②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 명의위장·폐업 반복으로 탈루가 많은 업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사 대리징수제도 연구
- ③ **[물납제도 개선]** 물납신청세액의 현금납부 유도를 위한 물납제도개선과 물납재산 심사체계 개선
- ④ **[채납정리 인프라]** 채납자 외 재산은닉 혐의 있는 관련인에 대한 효과적인 재산추적 방안 연구

4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

◆ 세무행정 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고, 잘못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 지속적 보강

- 국세행정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개선
 - **(행정이력 전산관리)** 사후검증·과세자료 해명요구 이력, 납세자 제출자료 등을 전산관리하여 과도한 자료요구 및 중복검증 방지
 - **(고지절차 개선)** 과세자료 처리 시 세액고지가 예상되는 경우 해명안내문과 해명자료 검토결과 발송을 의무화

납세자 해명절차 관리체계 변화

	기존	개선
해명자료 요구·이력 관리	수동관리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납세자 제출 해명자료 관리	수동관리 또는 파기	전자서고에 관리
과세자료 처리 시 해명안내	필요 시 선택 실시	고지예상 의무화

- 과세처분에 대한 사전검증 및 사후책임 강화
 - **(사전검증 철저)** 과세기준자문·조사심의팀* 등을 통해 과세 전 단계에서부터 적법과세 여부를 철저히 검증
 - * '15년부터 변호사 등 민간 법률전문가 선발·배치
 - **(사후책임 강화)** 과세품질 평가 결과의 인사 반영*을 확대하고 인용·패소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여 귀책직원 문책
 - * 과세품질 평가 하위자 특별승진 배제 등
 - **(반복교육)** 재발방지를 위해 패소분석사례를 활용한 교육확대
-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 존중
 - **(권익보호 강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장을 민간 전문가로 임용하여 독립성·중립성 강화
 - 개인조사에만 실시하던 조사기간 연장 시 납세자의견청취제도를 법인조사까지 확대 추진
 - **(권리구제 체계 개선)**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의 법제화 추진
 -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 전심절차의 효율화 등 국세불복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강구
 - **(편의성·투명성 제고)** 세무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불복청구 접수·진행상황 조회 등이 가능한 '전자불복청구제도' 도입

- 공정·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대형로펌 등에 소속된 인사는 외부위원 위촉 시 배제

■ 사회적으로 유익한 국세통계를 능동적으로 공개

- **(기획통계 발굴)** 국민의 실생활과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를 개발하여 선제적 공개

* (예시) 장기 계속사업자의 지역별·업종별 신고 현황, 배이비분 세대 퇴직자의 창업 현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사용 내역 분석 등

- **(통계연보 공개 확대)** 국회, 연구기관 등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통계 적극 개발·제공

* 통계연보 공개 항목: ('13년) 325개 → ('14년) 348개 → ('15년 목표) 370개

- **(통계 품질 제고)** 통계조직·인력을 보강하고, 국세통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유익하고 질 높은 통계 지속 생산

5 건강하고 당당한 조직문화 확립

◆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는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 뒷받침

■ 경쟁과 화합이 조화롭게 발휘되는 활기찬 조직 조성

- **(일선기능 활성화)** 승진인사 시 일선 근무자를 배려하고, 비선호 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우대방안 시행
 - 부가·소득분야 통합에 따라 순환보직 기간·순서를 개선하고, 전보제한 요건을 완화하여 필요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
- **(경쟁력 제고)** 민간전문가 채용 확대, 세무사 자격

보유 직원 조기 역량 강화, 전문보직제 확대 등 전문성 향상 노력 강화

- **(근무여건 개선)** 분야별 워크숍 등 건설적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임신·육아 지원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지속 확충

■ 기본에 충실하고 절제된 공직자세 견지

- **(기본 감사 강화)** 기본업무 집행 실태*를 중점 감사하되, 납세자 고충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행정면책 적용

* (예시) 현금징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 체납처분 소홀, 무신고자 고지 누락 등

- **(감찰체계 전환)** 본청에 '정보수집전담팀'과 '기동감찰반'을 가동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선별적 감찰 활동 강화

- 본청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서울·중부청에 본청 지휘 '청렴세정계'를 신설하여 고위관리자 및 조사국 전담 감찰

- **(조사부조리 방지)** 청탁신고, 세무대리인 사적 관계 고지, 조사종결 후 납세자 접촉 금지 등 부조리 방지 대책 강력 실천

■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추진기반 확충

- **(조직 보강)** 성실납세 지원, 복지세정 등 세정운영 방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인력 확충 및 재설계 지속 추진

- **(세정 생산성 향상)**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을 활용, 낭비적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생산적인 일에 주력하는 효율적 업무체계 확립

- 컨트롤타워*를 통해 특정기간 업무중첩, 업무통·폐합·축소 후 업무량 재증가 등을 철저히 통제·관리

*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개인납세국에서 총괄 관리

-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세정환경 변화, 대외 세

정혁신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발전전략* 연구

- 세정의 미래를 책임질 젊고 유능한 사무관을 선정, 선진국 사례연구와 우리 실정에 적합한 중장기 전략과제 모색

* 조직·인력관리 방안, 납세서비스 개선, 새로운 과세정책 대응 방향 등

■ 국정과제와 세정개혁을 선도적으로 추진

- (정부3.0 성과 제고)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세금신고3.0*'을 선도과제로 선정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선

* 연말정산 소득공제신고서 자동 작성 및 영세자영업자 간편 신고 서비스 제공

- (국민·현장중심 규제개혁) 현장에서 느끼는 납세불편 사항과 국민편익 증진 과제를 핵심규제로 삼아 적극 추진
- (세정개혁) 기능이 한층 강화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통해 세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발전과제 발굴·실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

– 사후적 검증에서 사전적 지원으로 전환 –

* 본 자료는 2015년 1월 5일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서 발표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최대한 지원」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96만명으로 개인 사업자는 526만명이고, 법인사업자는 70만명임
 - 간이과세자(신고대상 182만 명)의 신고의무는 연 1회로 축소(13년부터 적용)되어 이번 신고 시 2014년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이번 신고부터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 사후검증에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적극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였음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자료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신고 참고자료로 최대한 제공하였음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음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개요

- 1월은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달(1.26.까지)로서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596만명(개인 526만명, 법인 70만명)임
 -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는 2014.7.1.부터 12.31.

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되어 (13년부터 적용) 이번 신고 시 2014.1.1.부터 12.31.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사업자는 '14. 10. 1부터 '14. 12. 31까지 실적

2 사후검증 등에 활용하는 과세자료 신고 전 제공

- 오류·탈루사항의 사후검증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과세자료, 외부기관 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26개 항목별 자료를 45만여 명에게 신고 전에 제공하였음
 -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 분석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탈루·오류가 자주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매입참고자료로 제공하였으며,
 -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외부기관에서 산재보험가입 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신고 전에 제공하였음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과세정보 사전 제공 유형(사례)

유형 1 과세자료를 활용한 분석정보 사전 안내

◆ 매출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 ① 오픈마켓 실사업자 판매 매출자료 제공
 - G마켓·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전자상거래 실판매자의 매출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제공
-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의 실사업자에게 매출 자료 안내
 -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부당 발행한 실사업자에게 부당발행 매출 금액 안내
- ③ 유흥주점의 주류 매입자료 사전 안내
 -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주류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품목과 수량 등 주류 매입자료 정보를 제공하여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 매입 참고자료로 사전 안내

- ①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불성실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안내
- ②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 매입한 자료
 - 위장가맹점과의 거래는 사실과 다른 거래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안내
- ③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및 사업과 관련없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수취 금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임을 안내

유형 2 사후검증에 활용되는 자료를 사전 안내로 전환

- ①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사례 ⇒ 부가가치세 405억원 추징
 - 외부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산재보험자료 등 건설공사 자료를 사전 수집하여 매출 참고자료로 제공(붙임 사례1)
- ②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46억원 추징
 - 면세·간이과세자와의 거래내역을 사전 제공(붙임 사례2)
- ③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72억원 추징
 - 외부기관으로부터 토지측량 자료 등을 사전 수집하여 매입 참고자료로 제공(붙임 사례 3)
- ④ 실제 거래금액보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공제를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례 ⇒ 부가가치세 43억원 추징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내역을 사전에 분석, 제공(붙임 사례4)

- 또한,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 및 항목 등을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하였음
- 앞으로도 외부기관 수집 자료 등 사전에 제공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실

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 지원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3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엄정 대응

-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는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기업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세율 노출 정도가 낮은 대사업자·고소득 자영업자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 신고누락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신고와 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또한, 환급 신고자 중 성실 계속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신속히 환급하여 사업상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나,
 -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 신고자는 환급금 지급 전에 치밀하게 검증하고 환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할 예정입니다

4 신고편의 적극 제공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

- 간이과세자가 전자신고서를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2014년 1년간의 항목별 입력 자료를 사전 제공하고,

사전 제공 자료

- '14.7월 예정부과·신고세액이 있는 경우 자동 입력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입력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 제공

- 전자신고서 업종별*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 또한, 이번 확정 신고 기간 중 열리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15.1.13.)」에 동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의 신고와 관련된 업종별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 해결해 주고자 함
- 아울러, 재해 또는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

- 국세청은 전자신고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할 것임
 - 사업자가 불성실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과세자료 제공 등 신고 전 최대한 안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 그러나,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 등을 통해 세액 추징은 물론 높은 가산세 부담*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참고자료

1 신고·납부 개요

■ 신고대상 사업자: 596만명

(단위: 만명, %)

구분	14. 2기 확정	13. 2기 확정	증가인원	증감률
합계	596	576	20	3.5
법인	70	65	5	7.7
개인	526	511	15	2.9
(일반)	344	332	12	3.6
(간이)	182	179	3	1.7

■ 신고대상 과세기간: 2014. 7. 1. ~ 12. 31. 사업실적

- 예정 신고한 법인·개인 사업자: '14. 10. 1. ~ '14. 12. 31.
- 간이과세자: '14. 1. 1. ~ '14. 12. 31.

■ 신고·납부기간: 2015. 1. 1. ~ 1. 26.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22:00(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 은행 계좌 납부시간

365일	00:30~22:00	기업, 외환, 수협, 농협, SC,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 산림조합
	07:00~22:0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한,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납부대행수수료 1.0%)
 - 인터넷(www.cardrotax.kr) → 00:30~22:0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09:00~18:00(평일)

-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 받을 곳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www.hometax.go.kr)
 - 세법해석: 국세청고객만족센터(☎126)

2 신고편의 제공 및 세정지원

1.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동영상 활용한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방법 안내
 - 업종별(4개 업종*)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을 쉽게 습득하여 스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자 전자신고 작성요령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세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 소매, 음식·숙박, 부동산 임대,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세분화

-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제공
 - 예정부과세액, 예정신고세액 사전 제공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을 위한 직전 12개월 자료 제공
 -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매입금액 12개월 자료 제공

* 7월 과세유형전환자인 경우 6개월 자료 제공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 자동입력 서비스 제공('15. 1. 15.부터)

- 홈택스에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e세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을 자동으로 표시
 - 납세자가 수정하지 않으면 동 금액으로 자동 입력되는 기능(Prefilled)을 제공하여 합계표 입력 편의 제공

* 제외자: 조기환급 신고자, 폐업자, 신규자, 세무대리인 수입 납세자

e세로(www.esero.go.kr): 전자세금계산서를 무료로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2. 환급금 조기지급 및 납부기한 연장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매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당월 말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 제고(법정 지급기한 보다 약 10일 빨리 지급)
 - **(대상)**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사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
 - **(예외)** 원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당환급혐의가 없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으로서 조기 지급이 필요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환급신청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대금회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신청 방법)**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 홈택스 로그인 ② 세무서류 신고·신청 ③ 일반세무서류 ④ 납부기한 연장 신청 ⑤ 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3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주요 세법 개정사항

- 미용·성형 의료용역 과세범위 확대
 -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 2014. 2. 1. 이후 용역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구분 (반기기준)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 과세자	법인 사업자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공제한도	과세표준의 40%	과세표준의 50%	과세표준의 60%(14년)	제외	과세표준의 30%

※ 201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
 - 재활용폐자원: 6/106 → 5/105(2014·2015년) → 3/103(2016년)
 - 중고차: 종전과 동일(9/109)
 - ※ 2014.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 정기예금 이자율: 3.4% → 2.9%
 - ※ 2014. 3. 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율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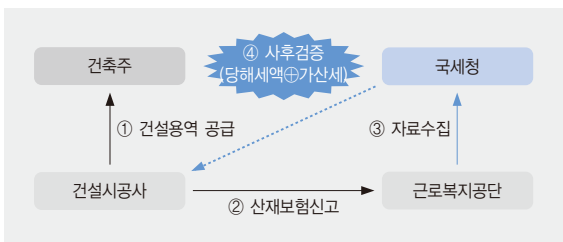
- 세액 경감률: 90% → 95%
 ※ 2014. 12. 2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 사후검증자료를 활용한 신고 전 사전안내

사례(1) 건설업자가 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후 매출신고 누락

- 검증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A법인은
 - 거래상대방이 매입자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비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 과세관청의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누락함

- 조치결과
 - 외부기관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추징
 ※ 유사 유형의 매출신고 누락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05억 원 추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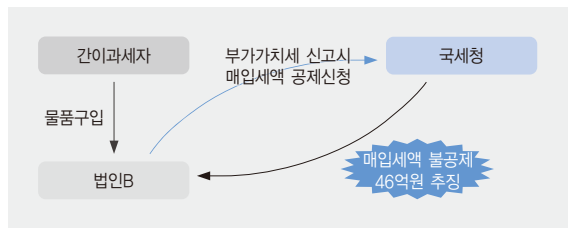


사례(2) 부적격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부당공제

- 검증내용
 - 제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은

- 세금계산서 발행 능력이 없는 면세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함

- 조치결과
 -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과 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검증하여
 -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한 사업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 등 부가가치세 추징
 ※ 동일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46억원 추징



사례(3)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가가치세 추징

- 신고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 토지를 조성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토지측량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대상임

- 조치결과
 - 외부기관으로부터 토지측량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한 결과,
 -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부당하게 신고한 토지 관련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

가가치세 추징

※ 동일·유사 유형의 부당매입세액 공제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72억원 추징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례(4)

실제 거래금액보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공제금액을 과다 기재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

■ 검증내용

- 간이영수증 수취분을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과다기재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대하여 기획점검 실시

[사례]

- ① 운수업을 영위하는 D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에 의한 공제금액을 18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한 실제 거래금액은 130백만원으로 50백만원 과다공제
- ② 식당을 운영하는 E는 현금영수증 수취금액을 50백만원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았으나, 현금영수증시스템에서 확인한 실제 공제대상 금액은 5백만원으로 45백만원 과다신고

■ 조치결과

- 현금영수증 및 화물운전자복지·사업용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의한 실제거래금액을 비교·검증하여

- ‘신고금액 과다·임의기재, 사업무관 지출’ 등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에 대하여 수정신고 권장 등 부가가치세 43억원 추징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

* 본 자료는 2015년 1월 13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2015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1. 13(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I’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하였음
-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6개부처 협업방식으로 보고

① 공공부문 개혁으로 4대 부문 개혁을 선도

- 공공기관은 과잉기능을 재조정하여, 실질적 생산성 제고 추진
-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부정수급액 5배 과징금 등 벌칙강화와 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② 노동시장 4대 원칙*하에 진정성 있는 논의로 노사정 합의 도출

- * ① 능력·성과 중심 인적자원 운용 ②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③ 다시 일하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확충 ④ 상생·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성장
-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③ 입지 등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 규제비용 총량제, 규제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 추진

-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3조원 규모) 추가 조성, 시내면세점(4개), 글로벌 복합리조트 유치, '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 세부내용은 '투자활성화 대책(1.19)'에서 발표

④ 임대산업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하여,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 산업 육성

-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업을 육성
-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산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강화

*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 리츠법인세 면제기간 연장 등

- 특별법 제정,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 육성 등 인프라 조성 등

⑤ 시장감시 등을 강화하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 TV홈쇼핑 등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온라인 익명제보시스템' 도입 등 불공정거래 신고·제보 여건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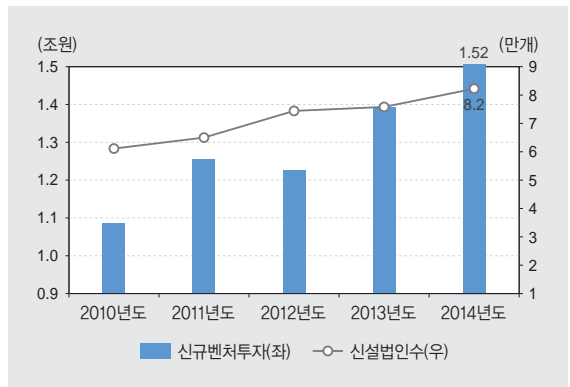
- ⑥ 융복합 촉진, FTA 활용 등으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융복합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농업의 6차 산업을 추진하고, FTA를 활용하여 농식품 수출을 대폭 확대('13: 57억달러 → '15: 77억달러)
 - 크루즈·마리나 등 해양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고, 해상그린벨트(수산자원보호구역)를 일부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
- 주제별 보고 이후에는 '공공부문 개혁방안'과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에 대해 토론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3일(화) 10시,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와 경제혁신의 본격화 계획을 보고하였음

【총괄 보고(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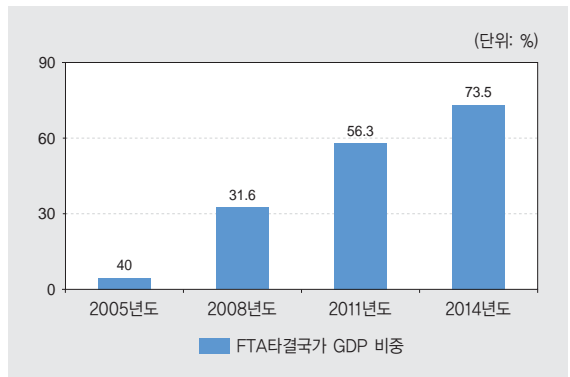
- 기획재정부는 총괄보고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15년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에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구조개혁의 첫 발을 내딛음
 - 세월호 충격으로 혁신의 모멘텀이 다소 주춤하였으나, 2기 경제팀 출범 이후 전 부처 협업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시 강도 높게 실천
- 그 결과 혁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부문별 성과가 가시화되었음
 - **(기초가 튼튼한 경제)**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을 마련

- 주요 공공기관 부채를 총 24조원 감축하는 등 정상화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여야 합의
- '14.12월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의 동력 확보
- **(역동적 혁신경제)** 벤처·창업을 확산시키고 FTA 네트워크를 완성
 - 벤처·창업 분위기 확산으로 신설법인수가 통계가 작성된 '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돌파
 -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 완성으로 GDP 기준 경제영토가 세계 3위(73.5%)로 확대(타결기준)

법인 신설 '00년 이후 최대, 벤처투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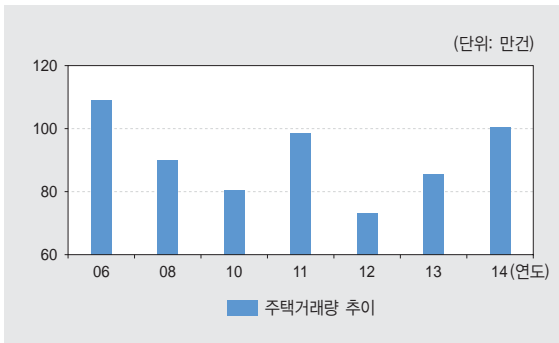


미·EU·중 3대 경제권과 FTA네트워크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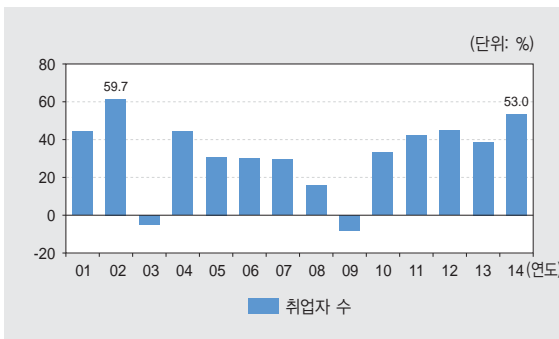


- (내수수출 균형경제) 주택시장, 일자리를 중심으로 내수회복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음
 - 주택가격이 안정된 가운데 주택거래량이 '06년 이후 최대인 100만 5천건을 기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
 - 청년과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입으로 '14년 취업자 수는 '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 증가

주택거래 '06년 이후 최대, 신규분양도 활발



청년과 여성의 활발한 사회참여로 취업자 수 '02년 이후 최대



- 2015년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
 - 세계경제 회복, 유가하락 등 우리경제 여건은 나아지고 있으나, 인력·금융부문 등의 구조적 문제가

경제활력 회복을 저해

- 경제활력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의 공감대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중국 등 주변국*들도 경쟁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 (중국) '한번 쓴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며 2015년 개혁에 역점 (일본) 2015년에는 더욱 대담하고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

☞ 경제혁신은 '우리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

- 2015년은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본격화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전략(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상 '15년 세부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음

①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분야 개혁과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구현

〈핵심분야 구조개혁〉

- (노동)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
 -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 우리사주 활성화방안 마련** 등 노사 상생문화도 확산
 - * 세제지원: 원청(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시 세액공제(200만원)
 - **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확대 및 장기보유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 예술인·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

는 등 사회안전망 확충

- **(금융)** 금융·IT 융합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금융부문의 역동성 제고
 -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를 카드·PG사에서 은행·증권 분야로 확대하고 전자금융업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 방안 마련
 - 기술금융 공급을 작년 8.9조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2단계 금융개혁방안도 상반기중 마련
 - **(공공)**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고 재정개혁을 가속화
 - 공사채 총량제 확대(현재 16개 기관 실시중) 검토 등을 통해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
 -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공공기관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선도
- * 예) 2급 이상 간부직 → 7년 이상 근속 근로자
- 600여 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조기달성(17 → '16년)하고 비과세·감면 심층평가 및 예타(20건 내외)추진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에 총력
- *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신설 및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부정수금액 5배 과징금 부과 등
- **(교육)** 정원조정 선도대학 권역별 선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확대 등 현장중심 교육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 양성
 -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14년 52개 → '17년 70개 학과)
 - 고등전문대 시범도입(16개교), 한국형 도제식 직업학교 도입(9개교) 등 기업-학교 병행모델

확산

〈시장경제 질서 확립〉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4대 핵심과제 추진
 - * (시장감시 강화) TV 홈쇼핑 하도급 대금지급조사 강화, 1~2차 협력업체 선 조사 후 혐의 발견시 상위업체 조사 도입(윗물꼬르기 조사)(중기 보호) 중소기업 차별관행조사를 모바일·플랫폼, 지방공기업으로 확대(제보·적발시스템) 보복우려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 도입(상생협력) 하도급 대금지급 위반 자진시정시 벌점 미부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

② 투자여건 확충, 소비기반 확대,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통해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

* 투자활성화 대책(혁신 입지환경 조성, 관광인프라 확충 등) 1.19일 발표 예정

〈투자여건 확충〉

-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
- 기업 수요 발굴 등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1/4분기 중 가동
 - * 지분투자 방식 지원으로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 유도
-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9개 → 2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 추가 조성(3조원 수준), 도시재생을 통한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 개발(공공+민간)로 혁신 입지환경 조성
-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적극 육성
 - 국내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여 시내면세점(4개) 개설,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 '17년까지 호텔(5천실) 추가공급*, 크루즈 전용부두(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 대폭 확충

- * 호텔리츠 규제 완화, 기존건물의 호텔 전환 촉진 등
- 외국인 자본제한 완화 등을 통해 항공정비산업 육성 등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 지원 강화
-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활성화와 연계하여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 수립
- 수출·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촉진
- 농수산업 고부가가치화(6차 산업화), 농수산물 판로-수출지원 확대 등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본격 추진

〈소비기반 확대〉

-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등 모니터링 강화
- * 기존 주택담보대출(40조원 대상)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방안 마련(1/4분기)
-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산을 육성
-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
- * (택지조성)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완화, 택지할인 공급, 용적률 완화
(건설·매입) 주택기금 출자·대출조건 완화(대출 최저금리 2.7 → 2%, 85㎡ 이하 대출 신설 등), 장기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25 → 50%)
(운영·출구) 리츠 법인세 면제기간(5 → 8년), 소득세 감면(8년 임대 50 → 75%) 확대
- 특별법 제정, 임대주택관리업 육성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

〈청년·여성고용 활성화〉

- (청년) 일-학습 병행제 확대(14년 2,079개 → '15년 3,000개 이상), 대학 진로지도 및 강소기업 매칭 강화 등 추진
- (여성)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 이어서 5개 부처별로 경제혁신을 위한 2015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하였음

【노동시장 구조개선(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지난 '14.12.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방향에 관한 노사정 기본합의와 '14.12.29. 노사정위에 보고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이뤄나가야 할 네가지 룰을 담고 있음

- Rule 1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 Rule 2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 Rule 3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 Rule 4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 앞으로 고용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제를 노사정간 진정성 있게 논의하여 합의 도출을 추진할 계획
 - 합의문에 담겼던 우선과제는 3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보육·능력중심 등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노사

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간다는 계획임

- 노사정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청회·토론회 등과 함께 고용부 주관의 관계부처TF도 본격 가동됨
- 고용부는 그밖에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직무스트레스 예방 조치 도입과 연계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 경비직 등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
 - * 그밖에 산업안전보건 정책,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정책, 일학습병행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 고용복지 서비스 통합전달체계 등 고용부의 주요 과제들은 뒤이은 정부합동업무보고 시 보고될 예정임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시정하고 자율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 확산을 통해
 -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강조
- 첫째, 하도급·유통 등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 우선,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빈발 업종을 중심으로 1~2차 협력업체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한 범정부적 협업 체계를 구축(정부합동 T/F 운영)할 계획임
 - * (중기청) 피해사례 수집 → (공정위) 불공정행위 조사·시정 → (미래부) 재승인 시 불이익 부과
- 둘째,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독립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및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시 강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행위를 시정할 계획

- 셋째, 피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임
 - 제보단계에서 온·오프라인 익명 제보채널을 확대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
 - 조사단계에서 조사내용을 제보된 특정 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 조사하여 제보자 신원 유출 방지
 - 후속단계에서는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 넷째, 불공정 관행의 자율개선 유도 및 상생협력을 확산할 것임
 - 하도급대금 관련 범위반 행위 자진시정 시 경고조치는 하도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시정 활성화 유도
 -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대기업·정부 공동 R&D 자금·판로 지원(15년 지원규모 7천억원 목표) 등 상생협력 강화
 - * 2~3차 협력사가 대기업 발행 결제채권을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시스템(10개 대기업 및 7개 은행 참여 예정)

【기업형 주택 임대사업 육성(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15년에는 1만호를 추가하여 총 12만호 공급
 -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부진했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택지, 세제, 자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 임대주택 틀을 전면 개편하여 규제를 최소화
 - 기존 6개의 규제 중 2개(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폐지
 -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
 - 할인가매각, 무이자 할부 등 공급방식 개선으로 실질적인 공급가격 인하효과도 유도
 - 취득세 등 세제지원도 늘리고, 주택자금 융자지원 대상도 85㎡ 초과주택으로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
 -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
 - 특별법 제정 전에도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택지, 자금 등을 즉시 지원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공
 - 분양주택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임대주택에서,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임대료도 적정수준에서 관리되며 비자발적인 퇴거위험 없이 장기간 거주 가능

- 기업형 임대 활성화는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 효과
 -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전세수요 압력을 줄여서 전월세 시장 안정이 가능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대도약을 위해 농업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 실천계획 발표

- ① 농업의 6차산업화, ②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 ③ 행복한 농촌 만들기과 삶의 질 향상에 역량 집중

- **(6차산업화)** 개별 자원 융복합 체계 마련 및 관련 규제개선으로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확충(30개) 및 도별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경영체에 대한 현장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6차산업 융복합 지구를 지역클러스터로 육성(9개)
 - 포스몰(Pos-Mall) 활성화, 농수산·중기 전용 홈쇼핑 개국(6월)등 ICT 활용 직거래 촉진
- **(경쟁력강화·수출확대)** 농업의 첨단화·규모화·고품질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FTA를 활용하여 수출 77억달러 달성
 - 창조마을(세종시) 중심으로 가공·유통·에너지·문화 등이 ICT와 융합된 다양한 창조마을 모델 개발
 - 쌀 들녘경영체 200개소(40천ha) 육성 및 주산지(241개) 중심 밭 기반 정비·밭 기계화 등 추진
 - 상생협력 경영자문단 운영(1월)을 통한 기업의 유통망·노하우 활용 및 상생협력 인센티브 제도화
 - 농고농대의 현장인력 육성 기능 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 **(행복농촌 만들기)**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쌀 직불금 및 농업정책자금(비닐하우스 등) 지원조건 완화
 - 주거취약지구 개선 프로젝트(1,200가구), 고령자 공동이용시설(71개소), 농촌형 교통모델(19개)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전통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전통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해양서비스업 육성, 해양 이용 관련 규제개선, 수산업의 수출산업화·구조개혁 방안을 중점 보고
- 해양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크루즈(법사위)·마리나법(14.12)이 통과됨에 따라
 - 국적 크루즈선사 육성과 함께 국내항만을 母港으로 하는 해외선사 유치(단순기항 대비 경제효과 약 2배)와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크루즈산업을 육성
 - 요트 대여·계류업 창업과 선박·선석 회원권제 도입 등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함께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등 마리나산업 도약기반 마련
- 항만배후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민간 개발·분양 허용, 도심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일부 해제(육지부 30%)하여 생계형 식당·숙박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공유수면 이용절차도 간소화할 예정
- 연안운송업은 면허제 개편 등 개방과 경쟁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향로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 선박 공동투자제도 도입(검토) 등을 통해 선박의 건조를 촉진하는 등 해상교통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계획
- 수산식품의 고급 디자인화, 글로벌 브랜드화 지원, 국내외 현지 유통·가공 인프라 구축, 앵커숍 확대 등 FTA를 활용한 중국과 신규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 기술·자본집약형 양식산업 육성을 위해 참여기준

원화 등 50년 만에 면허제도를 개편하고,

- 창업자금 지원대상 확대 등 어촌의 청년창업 활성화, 성공사례 확산을 통한 지역별 명품어촌 육성 등 어촌경제 구조를 개혁

【토론 과제】

- 부처 보고에 이어 ‘공공부문 개혁’ 토론에서는 2가지 측면에서 집중 토론이 있었음
 - 먼저, 공공기관 부채감축, 방만경영 제도개선을 제도적으로 철저한 관리 및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을 중점 추진하고
 -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데 만전
- 또한, KDI가 발제한 「서민생활 안정과 체감경기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
 - 경제혁신의 성과가 국민들에게 체감되기 위해서는 ① 일자리 창출, ② 생활물가 안정, ③ 주거 안정 등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
- 향후 정부는 업무보고 시 보도된 핵심과제를 포함,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 각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에 총력을 다 할 계획 임

별첨 공공부문 개혁방안 주요내용

- ◆ 유사중복·민간경합사업 정리, 문어발식 사업 확장 제동 등 공공기관 과잉기능을 핵심위주로 슬림화

* 금년 3대분야(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우선 기능 점검

- ◆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확실하게 근절

1. 공공부문 개혁의 중요성과 의의

-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국민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 개혁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

* 각종 언론사에서 '15년 추진과제로 공공부문 개혁을 우선순위로 제시

- 예: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구조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43%가 공공부문, 30%가 노동부문, 13%가 금융부문 개혁을 지목(문화일보, '15.1.6)

- 특히,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적은 부담으로 질 좋은 서비스 (Better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 공공기관이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의 재정개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재정운용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

2.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로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역점 추진하여 주목

할 만한 성과를 달성

- 18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은 자산매각,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24.4조원을 감축하여 당초 계획 20.1조원 대비 4.3조원 초과 달성(121.3%)하였고,
 - Moody's는 정부의 이러한 부채감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8개 공공기관*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음

* NH,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도로공사, 지역난방공사

- 38개 중점관리 대상기관 모두가 방만경영 개선 이행을 완료하여 전체 공공기관 기준으로 96.0%가 이행(290/302)한 결과,
 - 연간 약 2,000억원, 5년간 약 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앞으로는 부채감축, 방만경영 개선을 넘어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

- 먼저, 부채감축 이행 실적과 방만경영 개선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과거로의 회귀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

- 민간영역 침범, 문어발식 출자 등 언론에서 반복 지적한 공공기관 과잉기능 조정을 통해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는 방안도 강구

- 이를 위해 공공기관 기능개편 계획을 수립하여 '15년에는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기타 분야는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기관 내 기능효율화 방안 마련도 병행

* SOC 분야, 문화·예술 분야, 농림·수산 분야

- 또한, 상시적 기능조정 수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

* 공공기관 신설·출자회사 설립 타당성 심사 강화, 시장성테스트 실시 등

- 아울러,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고용부문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성과연봉제 강화, 임금피크제 확대, 근속승진제

폐지 등 성과주의 임금체제로 개편하고, 능력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3.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정부는 '15년 예산편성 시 유사·중복사업을 300개 이상 통폐합하는 등 지속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 여전히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재정누수가 심각하여 국민의 재정운용에 대한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 충북 제천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영유아 7명을 허위로 등록해 1년간 보육료 4,800만원을 부당 수령
- 부산의 B광고대행업체는 기존 근로자를 인턴으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속여 청년인턴지원금을 부당 수령

-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은 그간 보조사업 선정심사, 보조사업자 감시·감독장치 등 관리체계 미흡,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 미약 등 보조금 관리가 전반적으로 취약했기 때문
- 이에 정부는 작년 12.4.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한 바 있음
 - 향후 정부는 각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국민 혈세가 더 이상 '눈먼 돈'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
 - 부처 합동의 보조금 개혁 TF(팀장: 기재부 재정관리관)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지침 마련 등 후속조

치를 조속히 추진

- 공공부문 개혁은 국민에 대한 기본 의무이자,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로서, 앞으로 정부는 공공부문을 지속적으로 효율화하여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14.12.4.) 주요내용〉

- i)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 구축
 - 부처 간 협력기구로서 보조금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기재부 2차관) 신설
 - 보조금 정보의 관리·공개를 위해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ii) (사전) 보조사업 심사·평가 강화
 -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도입
 - 3년마다 보조사업의 지속 여부를 심사하는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 iii) (집행) 보조사업자 감시·감독 및 벌칙 강화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1회라도 보조금 부정수급 시 보조사업 참여 및 지원을 영구 금지하는 One-Strike Out 제도 도입
 - 보조금 부정수급 시 부정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보조금 수급 이력정보 등을 기초로 사업자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자 정보(이력, 재무상태 등) 공시 의무화
- iv) (사후) 점검강화 등 사후관리 개선
 - 대형사업별(100억원 이상) 집행점검단 구성·운영
 -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등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제도(2년마다 실시) 도입

- 보조시설 매매·담보제공 등 임의처분 방지를 위해 등기서류에 보조시설임을 부기하고, 승인없는 무단거래에 대한 처벌 신설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올바른 방향”

“비과세·감면 축소로 저소득층 지원·세수확보 필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축소는 이성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대해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미세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천대 교수 출신인 옥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했고, 2013년 5월부터 조세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옥 원장은 “현행 제도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라며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확보한 세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자녀장려세제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전체 소득에서 비과세·감면되는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을 공제해서 계산한다. 재작년부터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쪽으로 조세정책 방향이 변한데다 세액공제 도입으로 감면 폭이 줄어들면서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옥 원장은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고 세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율을 올려야 하지만, 직접적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세금체계를 단순화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올려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옥 원장은 “의료비·교육비 등은 세금 이외에도 복지 지출, 무상교육 등을 통해 정부 재정으로도 지원되고 있다”며 “세금체계를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에 대해 그는 “우리나라의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주변국인 중국·일본·대만보다 높아 인상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인상보다는 기업이 내부유보금을 배당·임금으로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 원장은 고소득층과 법인이 받는 비과세·감면을 먼저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정부 재정으로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감면을 통한 세금 혜택 축소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15-01-21)

국제저축을 떨어지고 국부유출...피게티는 '부유세 함정' 못봤다

프랑스가 지난 1일 연소득 100만유로(약 13억 4,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75%의 세율로 부과하던 부유세를 폐지했다. 비록 자산에 대한 부유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유럽에서 지난해 토마 피게티 파리경제대 교수의 '21세기 자본'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불평등 해소의 해법으로 부유세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이미 유럽 국가들은 앞다퉈 부유세 폐지에 나서고 있다. 부유세를 도입한 유럽 국가는 한때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 12개국에 달했지만 현재 명맥을 유지하는 국가는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 등 3개국뿐이다.

복지 확대와 불평등 해소 위해 도입

부유세는 20세기 초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유럽을 중심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10년 스웨덴에서 상위 1% 부자들은 전체 자산의 60%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불만에 당시 유행하던 공산주의 운동이 결합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유세 시행이 설득력을 얻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발호와 68혁명(1968년 전후에 일어난 좌파 학생운동) 등을 통해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럽 내에서 커지면서 부유세 시행 국가는 1980년대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이들 국가는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 자산에 대해 1~2%의 부유세를 부과했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비슷하지만 현금과 귀금속, 저축까지 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 넓다.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만 부과하는 종부세와 달리 대출분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다르다. 소득에까지 과세한 프랑스의 부유세는 부유세 중에서도 급진적인 형태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2013년부터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 5,000만원) 이상인 직원들 둔 프랑스 기업에 100만유로 이상 급여의 약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가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부유세 제도를 도입했다.

저축 감소, 자본 유출, 조세 저항 부작용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유럽에서는 부유세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미국 예일대 교수가 작년 6월 출간한 저서 '새로운 금융질서, 21세기의 리스크'에서 부유세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는 "부유세는 저축을 징벌하는 제도"라며 "근검절약해 모은 재산에 세금을 걷어 저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타인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유세는 징세과정에서도 비용 발생

부유세는 조세 저항이 다른 세금보다 심해 징세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프랑스는 부유세 등 세금 징수 과정에 총 조세 수입의 1.6%를 징세 비용으로 쓰고 있다. 미국에서 해당 비율은 0.49%에 불과하다. 1910년부터 한 국가가 부유세를 시행한 스웨덴에서도 부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은 심했다. 부유세 폐지 1년 전인 2006년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부유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일상적으로 속임수를 쓴다고 답했다. 프랑스에서는 탈세로 2004년 부유세로 걷을 것으로 예상한 돈의 28%가 새나갔다.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피게티의 말처럼 부유세를 세계 모든 국가가 시행하려면 과세 대상인 금융 및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밝혀진 부유세의 맹점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불평등을 줄이고 싶다면 소득세를 정밀하게 부과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15-01-16)

재정포럼

2015년 1월호 통권 제223호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행인 /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노영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혜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담당연구위원 / 최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윤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신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장은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홍유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15년 1월 15일 발행 / 제19권 제호(통권 제22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 414-2131~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TEL: (02) 2269-2234

■ 인쇄 / 상일인쇄 TEL: (02) 2269-6770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 414-2114
- FAX: (044) 414-2179
- E-mail: pub@kipf.re.kr
- 주소: 339-00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441-05-000011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